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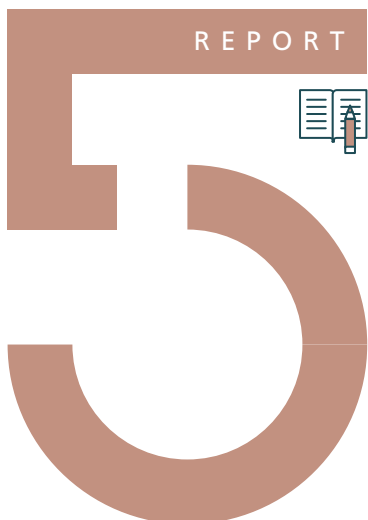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Study on the Revision of Deliberation Standards
related to Corrective Recommendation Standards



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REPORT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심미선 · 윤성욱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발행인 | 이춘발

편집인 | 김윤정

발행일 | 2025년 1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043

www.pac.or.kr

디자인·인쇄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제 출 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발 주 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기관 | (사)한국언론학회

책임연구원 |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구원 |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김지연 고려대 언론학 석사

목 차

| | |
|-----|----|
| 요 약 | 10 |
|-----|----|

1

문제제기

| | |
|----------------|----|
| 가. 문제제기 | 21 |
| 나.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5 |

2

시정권고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 |
|-------------------------------|----|
| 가.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28 |
| 1) 시정권고제도의 현황과 특징 | 28 |
| 2) 시정권고제도의 문제점 | 30 |
| 나. 시정권고 심의 현황 분석 | 32 |
| 1) 개요 | 32 |
| 2) 시정권고 심의현황 분석결과 | 34 |
| 가) 시정권고 추이 : 2016~2025년까지 | 34 |
| 나) 연도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 37 |
| 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 38 |
| 라)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 40 |
| 마)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 42 |
| 3)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결과 분석 | 45 |
| 가) 연도별 매체유형별 동일법익 침해 반복 건수 추이 | 45 |
| 나) 연도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 46 |
| 다) 매체사별 연도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 48 |
| 4) 소결 | 49 |
| 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심층인터뷰 | 52 |
| 1) 심층인터뷰 개요 | 52 |
| 2) 심층인터뷰 결과 | 54 |
| 가) 시정권고 심의기준(1~23조)에 대한 평가 | 54 |
| 나)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집단별 심층인터뷰 결과 | 60 |

언론 관련 기구들의 심의규정 현황 및 비교분석

| | |
|-------------------------------|-----|
| 가. 언론 관련 심의규정 현황과 특징 | 95 |
| 1) 개요 | 95 |
| 2) 언론관련 기구 | 96 |
| 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규정 | 96 |
| 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96 |
|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97 |
| 라)기자협회의 관련 규정들 | 98 |
| 마) 인터넷자율정책기구 | 98 |
| 3) 언론기구별 심의규정 현황 | 98 |
| 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98 |
| 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101 |
|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04 |
| 라)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규정들 | 105 |
| 마)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규정들 | 117 |
| 4) 소결 | 117 |
| 나. 언론관련 심의규정 비교분석 | 119 |
| 1) 개요 | 119 |
| 2) 심의기준 비교분석 : 개인적 법익 | 120 |
| 가) 사생활 조항 | 120 |
| 나) 범죄사건 보도: 피의자, 피해자 신원공개 | 122 |
|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 124 |
| 라) 아동·청소년의 보호 | 125 |
| 마) 아동학대 사건 보도 | 127 |
| 3) 심의기준 비교분석 : 사회적 법익 | 129 |
| 가) 차별금지 | 129 |
| 나)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와 폭력묘사/충격·혐오감 | 131 |
| 다) 성관련 보도 | 132 |
| 라) 자살보도 | 134 |
| 마) 마약 및 약물보도 | 136 |
| 바) 여론조사 보도 | 138 |
| 4) 심의기준 비교분석 : 국가적 법익 | 139 |
| 가) 국가적 법익 :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누설금지 | 139 |
| 5) 소결 | 141 |

상위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 정합성

| | |
|-------------------------------|-----|
| 가. 개인적 법익 | 143 |
| 1) 사생활보호와 명예훼손 | 143 |
| 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피해자 신원공개 | 145 |
|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 147 |
| 4) 아동·청소년의 보호 | 148 |
| 5) 아동학대 사건 보도 | 150 |
| 6) 가정폭력사건 보도 | 151 |
| 7) 신고자 등 보호 | 152 |
| 나. 사회적 법익 | 153 |
| 1) 기사와 광고의 구분 | 153 |
| 2) 성관련 보도 | 154 |
| 3)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 154 |
| 다. 국가적 법익 | 156 |
|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침해 금지 | 156 |
| 2) 국가기밀 보도 금지 | 156 |
| 라. 소결 | 159 |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방향

| | |
|--------------------|-----|
| 가. 주요 정책적 함의 | 162 |
| 나.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 | 164 |

| | |
|---------------|-----|
| 참고문헌 | 166 |
| 별첨1 심층인터뷰 질문지 | 168 |

표 목차

| | |
|---|-----|
| [표 1]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매체사 (2024년 하반기 기준) | 34 |
| [표 2] 2022~2024년 매체유형별 1회이상 시정권고 받은 매체사수 | 37 |
| [표 3] 연도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2016~2024년까지 (단위: 건수) | 38 |
| [표 4] 개인적 법익 침해 vs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비교 (단위: 건수) | 39 |
| [표 5] 연도별 개인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추이(2016~2025년 상반기) | 42 |
| [표 6] 연도별 사회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추이(2016~2025년 상반기) | 44 |
| [표 7] 연도별 동일법익 침해 시정권고 개수 및 매체사 | 45 |
| [표 8] 연도별 동일법익 침해 반복 사례 시정권고 건수 | 46 |
| [표 9] 연도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 46 |
| [표 10] 2020~2024 동일법익 침해유형 추이 :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 47 |
| [표 11] 2020~2024 동일법익 침해유형 추이 :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 48 |
| [표 12] 연도별 매체사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 건수 추이 | 49 |
| [표 13] 심층인터뷰 대상자 | 53 |
| [표 14] 심층인터뷰 질문내용 | 54 |
| [표 15]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56 |
| [표 16]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일반인 및 언론학자들의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58 |
| [표 17] 개인적 법익 vs 사회적 법익 vs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60 |
| [표 18] 신문윤리 실천요강 | 99 |
| [표 19]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 100 |
| [표 20]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 101 |
| [표 21]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 103 |
| [표 22]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 104 |
| [표 23]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칙 | 105 |
| [표 24] 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106 |
| [표 25] 기자협회·국가인권위 인권보도준칙의 구성 | 107 |
| [표 26] 자살보도 윤리강령/실천요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108 |
| [표 27]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내용 | 109 |
| [표 28]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 110 |
| [표 29]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 112 |
| [표 30]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실천수칙 | 113 |

| | |
|---|-----|
| [표 31] 재난보도준칙 | 113 |
| [표 32] 감염병보도준칙 : 주의해야할 표현 | 114 |
| [표 33]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 115 |
| [표 34]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 116 |
| [표 35] 주요 언론기구의 심의규정 | 120 |
| [표 36] 사생활 관련 조항 | 121 |
| [표 37] 범죄사건 보도 조항 | 124 |
| [표 38]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 | 125 |
| [표 39]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 127 |
| [표 40] 아동학대 사건 보도 조항 | 128 |
| [표 41]기자협회의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 128 |
| [표 42] 차별금지 조항 | 130 |
| [표 43] 기자협회와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 정의 | 130 |
| [표 44]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조항 | 132 |
| [표 45] 성관련 보도조항 | 133 |
| [표 46] 자살보도 조항 | 135 |
| [표 47] 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실천요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136 |
| [표 48] 마약 및 약물보도 조항 | 137 |
| [표 49] 기자협회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 137 |
| [표 50] 여론조사 보도 조항 | 139 |
| [표 51] 국가적 법익 :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누설금지 | 140 |
| [표 52] 사생활과 통신비밀 | 144 |
| [표 53] 명예훼손 | 145 |
| [표 54] 제3조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 피해자 신상공개 | 147 |
| [표 55] 성폭력 피해자 보호 | 148 |
| [표 56] 소년 보호사건 당사자 보도금지 | 149 |
| [표 57] 아동학대 사건보도(제6조의2) | 150 |
| [표 58] 가정폭력사건 보도 | 151 |
| [표 59] 신고자 등 보호 | 152 |
| [표 60] 기사와 광고의 구분 | 153 |
| [표 61] 성관련 보도 | 154 |
| [표 62]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 155 |
| [표 63] 법률별 국가기밀 대상 | 158 |
| [표 64] 국가안전보장 | 159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매체별 뉴스이용률 추이 (2013~2023년)..... | 33 |
| [그림 2] 연도별 시정권고 추이 : 2016~2024년까지 (단위 : 건수) | 35 |
| [그림 3] 2020~2024년 시정권고, 동일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 36 |
| [그림 4] 개인적 법익 침해 vs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비교 | 39 |
| [그림 5] 개인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2016~2025년 상반기) | 40 |
| [그림 6] 사회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2016~2025년 상반기) | 44 |

요 약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가 공고화되면서, 인터넷신문,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이 주요 뉴스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뉴스이용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3’에 의하면, 한국인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8%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2023.06.15).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2024 언론수용자조사〉에서도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한국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는 3점을 넘지 못했다. 두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언론 보도의 문제는 무엇일까?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보도의 객관성 문제이다. 한국언론 보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단편적인 정보나 미확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는 속보 경쟁과 클릭 중심의 언론 보도가 생활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정적인 언론 보도는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제목을 사용하고, 종종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자극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나 이미지 역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가 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주로 언론 보도나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언론 보도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언론이 추구해 나

가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런 시정권고 기능을 대체할 기구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인쇄매체나 인터넷매체의 권익 침해적 보도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손영준, 2019)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 보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심의기준은 구체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어떤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국내의 다양한 심의규정 및 윤리규정과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2장은 기존 연구를 통해 시정권고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후 3장에서는 언론관련 기구들의 심의규정 현황 및 주요 규정들을 비교 분석하고, 4장에서는 상위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해 시정권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 후 실제 시정권고 심의현황을 분석하고,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심의현황 분석은 연도별 시정권고 유형을 분석하고, 시정권고 유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뉴스매체들이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얼마나 반복해서 받고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분석기간은 시정권고 현황 분석은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보았고,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사례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살펴보면, 우선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2024년을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 2,716개 중에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398개로 10개 매체 중 1~2개 매체만이 1년에 한 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 유형별로 보면, 뉴스통신사는 2곳 중 1곳이 최소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았다. 뉴스

통신사 다음으로 일간지는 31.4%가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전체 건수로 볼 때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인터넷신문사인데, 인터넷신문사 중에서 2024년 1년 동안 1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비율은 13.7%로 평균에 못 미쳤다. 인터넷신문의 86.3%는 2024년 1년 동안 한 번도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반면 일간지는 68.6%만이 시정권고를 받은 이력이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간지가 인터넷신문에 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잘 지킨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연도별 매체유형별로 시정권고 추이를 보면, 매년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정권고 누적 건수는 총 6,355건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5,491건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인터넷신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사, 일간지(지역), 일간지(중앙)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으며, 이런 추이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나타났다.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63건으로 같은 기간 중앙일간지의 12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시정권고 추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보다 많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추이로 보면, 시정권고가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관련 조항 위반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범죄사건 보도'(18.2%), '성폭력 피해자 보호'(11.3%), '고소고발 보도'(5.2%)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로 일관되게 나왔다. 한편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기사형 광고'와 '자살보도' 조항 위반이 각각 25.3%, 2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차별금지'(13.2%), '충격·혐오감'(7.9%), '성관련 보도'(6.8%), '범죄묘사'(6.0%), '기사제목'(4.7%), '여론조사'(4.3%)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았다.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기사형 광고'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자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 '자살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8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226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차별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202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 4건에서 2023년 286건, 2024년 2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셋째, '여론조사 관련' 시정권고는 주로 선거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여론조사 관련' 시정권고가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시정권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선거기

간 중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제재가 내려진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는 ‘여론조사관련’ 권고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동일법의 침해 반복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언론사에 보내진 시정권고 결정문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가령 특정 언론사에서 동일법의 침해가 반복된다면,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제도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법의 침해 반복사례 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일법의 침해 반복사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으로 81개 매체사가 동일법익을 반복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4년에는 27개 사로 줄어들었다. 2024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이 된 매체사가 약 2,700여 개라 할 때 동일법의 침해를 사유로 반복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사의 비중은 약 1% 미만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동일법익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중에서 동일법익을 반복해 침해하는 유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전체 건수에서는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보다 6:4 또는 7:3의 비율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법익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유형은 사회적 법익보다는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가 79.2%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자살보도’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근 들어 ‘차별금지’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층인터뷰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언론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시정권고의 수용 주체인 언론기자(12명), 언론학자(4명), 일반시민(11명)과 시정권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 관계자(4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질문 내용은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네 집단 공통으로 의견을 물었고, 이외에는 집단별로 차등화했다. 즉 공통 질문인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를 통해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집단별 공통된 인식 및 차이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시정권고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언론기자에게는 심의기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또 해당 심의기준을 취재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우선 언론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꼽은 것은 제10조(보도윤리)와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였다. 제10조(보도윤리)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보도가 어떤 보도인지를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제10조(보도윤리)로 시정권고를 결정한 사례가 없어 예시를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는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언론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제10조와 제18조 이외에도 언론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힌 규정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1조(재난보도)로 5점 만점에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 제12조(범죄모사)와 제10조의2(차별금지) 규정도 3.0~3.1점으로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언급한 심의규정은 제5조(유괴사건 보도), 제6조(아동·청소년 보호),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제22조(국가안전 보장 등), 제23조(국가 기밀 누설금지)로 이 4개 조항만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한편 시정권고 각각의 심의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규정별로 중요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반인과 언론학자의 의견을 보면, 일반인의 평가가 언론인, 언론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인들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심의기준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10조(보도윤리), 제12조(범죄보도),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제21조(기사제목)로 5점 만점에 2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다. 언론학자들이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심의기준은 제20조로 5점 만점에 1.5점을 주었다. 그 다음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0조(보도윤리), 제10조의2(차별금지), 제14조(자살보도), 제15조(마약 및 약물 보도), 제16조(폭력모사), 제17조(충격·혐오감),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1조(기사제목)로 5점 만점에 2점대의 점수를 주었다.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심의규정은 제1조(사생활 보호)와 제10조(보도윤리),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금지), 제21조(기사제목)였다.

한편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심의규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영역별 인식의 차이를 보

면, 우선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언론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언론인과 일반인은 개인적 법의 침해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5점 만점에 2.7~2.8점)고 본 반면, 언론학자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5점 만점에 3.4점)고 보았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3.0점을 주었다. 사회적 법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 관계자를 제외한 세 집단 모두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언론인(2.4점)이 일반인과 언론학자(2.7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했다. 국가적 법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인, 일반인, 언론학자 모두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국가적 법의 침해와 관련한 시정권고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시정권고 건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 심의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링 단계에서 국가적 법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정권고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 관계자 인터뷰를 근거로 보면,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서만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 법의 침해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요도 평가에서는 개인적 법의 침해 관련 심의기준의 중요도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사회적 법의 침해 관련 심의규정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네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인들은 5점 만점에 4.8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고, 언론인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의 제도라 하더라도 일단 시정권고를 받으면 기사를 작성할 때 주의하게 되므로 권고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없다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라도 지키려는 기자나 언론사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특히 성폭력이나 범죄 관련 보도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신생 언론사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다만 시정권고제도가 최악의 보도를 막거나 시정하는 데는 일부 기여하더라도 권고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차악의 보도가 무차별 양상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학자도 오히려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제도가 언론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유용하며,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보편적 법의 침해를 피해 당사자의 제소 없이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일반인, 언론인, 언론학자 모두 시정권고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라는 성격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제도적 장점인 동시에 한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심의규정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의견과 규제가 너무 많고 나열식이

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현실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물론 심의규정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언론인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취재 현장에서 참고하기에는 다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나머지는 합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좀 더 세부적이고 다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아울러 심의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예외 조항으로 제시되는 ‘공익성’의 개념 또한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례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3장에서는 언론 관련 기구들의 심의규정 현황 및 주요 규정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 기자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별로 언론 관련 심의규정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구들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지향점이 같지만 기구의 성격이나 매체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심의규정에 차이를 보였다. 신문윤리위나 인터넷신문윤리위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요강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선언적이고 최소한의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타율규제 형식이자 법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는 강제력을 지닌 만큼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도록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경우에 따라 매우 상세하고 조항별로 금지되는 표현을 열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매체별로 심의규정에 차이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방송 매체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은 다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범위도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 역시 모든 조항에서 완벽하게 명확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 추상적 조항이 혼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심의규정은 법에서 제한하는 불법콘텐츠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하되 유해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에 비하면 훨씬 단순한 구조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신문윤리위)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인터넷신문윤리위)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으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이 상대적으로 최근의 쟁점들을 잘 반영해 정비되었다.

한편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법정기구이지만 강제력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규제대상은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매체뿐 아니라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구로서 법적 금지사항 위주로 최소한의 제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윤리적 실천사항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개정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 언론중재위의 언론 관련 심의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언론인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반대로 타율규제는 법적 명확성이 높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권고 기준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규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의한다”는 선언적 문구 대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형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규범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는 개인적 법익 보호 영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사생활, 초상권, 피해자 보호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하되, 각 조항의 세부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개정할 경우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 범죄, 가족, 제보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셋째,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차별금지, 폭력 및 성적 묘사와 같은 영역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나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기준처럼 성별, 성적지향,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 ‘특정 속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 성적 표현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도윤리와 실무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의 현행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적용성이 떨어진다. 자살보도, 마약류 사건보도, 아동학대 보도 와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서는 사례 중심의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기준’을 부속서 형태로 마련해, 각 항목을 ‘금지-예외-권고’의 3단계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과 언론사 모두가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판단기준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단순한 윤리적 지침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론 규범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원칙 중심의 명확성과 실무 중심의 구체성을 동시에 갖춘 기준으로 개정될 때,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실효적 심의제도가 완성될 것이다.

4장에서는 상위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시정권고 심의매체의 범위의 문제이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매체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1항은 “언론 등”이라고 하여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인 언론중재법과 일관되게 시정권고 심의대상 매체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명예훼손 조항을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관련 법률과 체계가 맞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모호하다. 또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진실성과 공익성)는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제310조)하고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의 명예훼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법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강력범죄처벌법 제8조, 소년법 제68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령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광범위한 정의가 실무에서 활용하기에는 모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상위법을 고려할 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도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사자, 피해자, 관련인’등의 용어도 적절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죄사건 피의자와 피고인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있더라도 미성년자는 예외인

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제3조). 또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에서는 신상 공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고발자)도 보호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서는 피해자만 금지하고 있고, 신고자(고발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제3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대상 청소년’ ‘피해 청소년’이라고 하여 아동을 제외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서 미성년자는 예외이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법률에서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심의기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중대범죄처벌법에서 이미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없다.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의 경우는 국내 법원이 판례로 제시하는 공적 인물이나 국민의 관심 사안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형사사법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일곱째, 상위법에서 존재하나 실제 심의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신문, 잡지, 그밖에 출판물과 방송에서 특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7조 제2항에서 가사소송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통해 연예인들의 열애설 결혼설 등을 국민의 정당한 관심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 실제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유명인의 이혼이나 상속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법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근거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에서 고소 고발된 사건 및 구체적 내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언론에 확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덟째, 국가적 법익 관련 심의기준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 심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원리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은 형식적 기밀을 의미하고 형법과 국가보안법 상 군사기밀,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시정권고제도는 도입 당시만 해도 논란도 많았고 위헌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제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단서들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언론 관련 심의규정 및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향후 언론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방향을 제안했다. 개선의 방향은 첫째, 시정권고 심의제도가 안정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걸맞는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준 개선에 있어 언론중재법, 형법, 개별 특별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 특정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 관련 법, 재난·감염병 법제 등)과의 체계 정합성을 전면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 심의기준에서 취약집단, 인권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사건 관련자, 혐오표현 대상자, 취약집단 등의 인권권 보호 조항들이 미비한데, 이런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문제제기

가. 문제제기

대형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가 공고화되면서, 인터넷신문,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이 주요 뉴스매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온라인 공간에는 매일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2023년 언론수용자가 뉴스나 시사·정보(프로그램)를 접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는 텔레비전이었으며(76.2%), 다음은 인터넷 포털(69.6%),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5.1%), 메신저 서비스(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나연, 2024). 이렇게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언론사 간 경쟁도 치열한데, 언론사의 속보 경쟁은 보도의 정확성 저하, 보도의 선정성, 인권 침해, 자극적인 제목, 혐오와 편견 조장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정제되지 않은 뉴스가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유통되다 보니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뉴스가 생산되고, 이는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며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2024 언론수용자 조사>¹⁾에 의하면, 5점 만점에 '뉴스 공정성' 3.08점, '정확성' 3.11점, '뉴스 및 시사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 3.36점, '실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정보 신뢰도' 3.35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변' 2.90점,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 2.99점으로 뉴스 및 시사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3.3점대, 공정성은 3.1점대,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는 2.99점으로 한국언론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

1) <언론수용자 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통계청 승인조사로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은 조사라 할 수 있음. 2024년에는 전국 만 19세이상의 성인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조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서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인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8%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2023.06. 15.). <언론수용자 조사>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두 조사 시점은 다르지만 두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도의 객관성 문제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단편적인 정보나 미확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발표나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사건의 피의자를 마치 ‘확정된 범죄자’처럼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관련’ 언론 보도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9일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공론화되었는데, 수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보도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지 2개월이 지난 12월 27일 이선균씨 본인의 자살로 마무리되었다²⁾.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도이다. 사실 보도는 언론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속보 경쟁과 클릭 중심의 보도 환경 속에서 그 원칙이 쉽게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속보 경쟁과 클릭 중심의 언론 보도가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속보 경쟁으로 인해 피해자, 피의자, 일반 시민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은 사건 관련자의 실명,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등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언론 보도로 인해 원치 않는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한데, 미성년자나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 보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³⁾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배우 김새론씨 보도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18일부터 사망 이후인 2025년 2월 19일까지 약 1,000일 동안 5,082건의 관련 보도⁴⁾가 쏟아졌다. 연예전문매체를 중심으로 김씨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추적·비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엮어 제목 장사로 조회수를 유도하는 황색언론의 모습을

2) 나무위키 참조

3) 한겨레(2025. 03. 23.), 김새론 비극 뒤엔 ‘알 권리’ 갈출 추며 인격권 말살하는 언론.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83778.html>

4)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200만 이상 언론사, ‘뉴스스탠드 스포츠·연예’ 카테고리 기준

보였다는 것이 민언련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⁵⁾’ 운영자인 이진호씨의 발언을 따옴표로 보도한 기사가 256건이고, 다수 언론은 김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까지 찾아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관중’, ‘에스엔에스(SNS)병’, ‘어그로’ 같은 표현으로 ‘자숙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비난 여론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언론의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인 선정적인 언론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언론 보도의 문제로는 선정적인 보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정적인 언론 보도는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보도로 제목을 사용하고, 기사제목은 종종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자극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나 이미지 역시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언론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상업적 목적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반영하는데, 이런 언론 보도의 대상은 주로 연예인이나 공인이 된다.

이승선(2004)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밀한 사적 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언론이 범하는 또 다른 위법행위”라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연예인의 내밀한 사적 행위는 공익성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일반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연예인 관련 보도는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가 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주로 언론 보도나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언론 보도의 여러 문제들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손영준(2019, 90쪽)은 “시정권고제도는 이미 보도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개인적, 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보도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권고의 법익 침해 예방 효과에 주목했다. 조소영(2021, 54~55쪽)도 “시

5)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주로 알려지지 않은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룬다. 2025년 9월말 기준 62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정권고 대상이 된 보도는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익 침해가 분명한 보도에 한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운영한다면 제도의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창숙(2021, 36~37쪽)도 "언론중재위원회가 교육과 시정권고 등을 통해 언론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처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다"고 전제한 후 "시정권고제도 역시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정권고제도는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언론현장에서는 언론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언론현장에서는 시정권고를 준수하는 언론이 클릭 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의 시정권고 기능을 대체할 기구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인쇄매체나 인터넷매체의 권익 침해적 보도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손영준, 2019)을 고려한다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심의기준은 사회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왔다. 2004년 자살보도의 사회적 문제화 이후 상세 묘사를 제한하고 신원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있었고, 2005년에는 언론중재법 제32조를 근거로 '개인·사회·국가' 법익 침해의 3분류 체계를 정립하며 폭력묘사와 국가안보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2014년에는 기사형 광고 금지와 단순 고소·고발 보도의 제한, 흠어져 있던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양성평등 조항을 도입해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확대했다. 2018년 7월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선정적 보도를 금지하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미확인 사실 보도를 제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양 단정 짓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9년 3월에는 차별금지 항목에 국적·지역·나이를 포함하고, 세부사항에도 보도를 통한 편견 조장을 금지했으며, 8월에는 공익·부패·특정범죄 신고자 등 신고자 보호 조항과 자극적·왜곡된 제목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2021년 1월에는 여론조사 인용 보도의 필수 고지 항목을 10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정비가 있었고, 12월에는 아동학대 보도의 신원 비공개와 과도한 묘사 금지, 사생활 침해 방지를 강화했다. 2022년 6월에는 아동관련 범죄와 가정폭력 보도에서 관련자 신원 비공개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심의기준의 방향성이 사회적 감수성과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화 작업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도 이런 맥락 속에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 보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심의기준은 구체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손영준, 2019, 김창숙, 2021)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현재 어떤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등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국내외 다양한 심의규정 및 윤리규정과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기존 연구를 통해 시정권고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시정권고 관련 논의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시정권고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시정권고 현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나,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시정권고 현황 및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다.

연구문제2) 시정권고 심의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심의현황과 특징 분석은 기존 심의기준이 어떤 보도 유형에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기준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침해 양상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준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의 우선순위와 새롭게 신설해야 할 심의기준에 대한 판단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시정권고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시정권고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살펴본다.

연구문제3) 시정권고제도 및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 보도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심의기준은 구체성과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현재 어떤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시정권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을 비롯하여 언론학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제도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은 시정권고 기준 개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시정권고제도 및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연구문제4) 언론관련 기구들의 심의규정 현황 및 주요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언론 및 콘텐츠 심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다층화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기준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표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타 규범들과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다양한 언론유관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심의규정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에도 다양한 보도준칙을 제정해 언론 보도시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윤리현장, 인권보도준칙, 자살보도 윤리강령,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 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도 이런 준칙들과 유사한 언론 보도 권고기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비교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기준이 어떤 점에서 모호하거나 한계가 있는지, 해당 기준이 법·제도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수자 보호나 성인지 감수성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가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문제5) 상위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살펴본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법익 침해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통해 권고하는 내용도 많은 부분이

기존의 법체계에 포함되어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법적 체계성이 있음에도 권고형식의 심의기준을 제정해 사용하는 이유는 법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론 보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즉 법을 적용해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반복되는 언론 보도의 문제를 내버려 두기 애매한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 강제성 없는, 가벼운 권고형식으로 언론 보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정권고 심의기준과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⁶⁾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문제6)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 및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개선 방향 및 개선(안)을 제안한다.

6) 체계적합성(체계정합성, Systemgemäßheit) 또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이란 입법원칙의 하나로서, 법규범 간에 구조·내용이나 원칙이 상치(相馳)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2 시정권고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1) 시정권고제도의 현황과 특징

시정권고 심의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시정권고 관련 기존 연구 및 사례집⁷⁾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의대상 매체 중 15% 가량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58건의 시정권고가 결정되었다. 심의대상 매체는 2,716개였으며, 이 중 409개 매체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에는 1,291건, 2022년에는 1,239건, 그리고 2023년에는 1,158건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감소 수치를 보인 것은 시정권고 결정 건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매체 간 경쟁이 더 심해지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 자극적인 뉴스로 수용자의 주목을 받으려는 언론계의 행태로 인해 시정권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이민규, 2023). 따라서 최근 3년간 시정권고 결정 건수의 감소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시정권고 결정 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언론 보도 개선에 의한 것인지, 심의과정 상의 원인인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적 법익 침해는 줄어들고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가한 것도 최근 특징 중에 하나이다. 2023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침해유형별로는 사회적 법익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개인적 법익 침해였다.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는 나타나지

7) <2023년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법익 침해가 789건(68.1%)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적 법익 침해는 369건(31.9%)이었다. 참고로 언론중재위 출범 초기인 1980년부터 1991년 10년 시정권고 건수는 264건(48.9%)으로 가장 높았고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는 1건(0.2%)뿐이었다.⁸⁾ 개인적 법익 침해가 줄어들고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가한 데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의 경우 그동안 언론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시정권고 뿐 아니라 언론 중재나 조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가한 것은 재난 보도, 범죄 보도, 자살 보도에서 특정된 개인보다는 집단적 문제나 차별 혐오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개별 침해유형은 차별금지나 사생활 침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개별 침해유형 중에서 차별금지 관련 심의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금지 관련 시정권고 결정은 전년 대비 236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론중재위도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해 심의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생활 침해 등이 270건(23.3%)으로 많았다. 여기에는 공인의 가족 초상 공표, 사건·사고 보도시 당사자 동의 없는 사적 통신 내용 공표 등이 포함되었다. 자살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으로 그 뒤를 이었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 54건(4.7%), 범죄사건 보도 45건(3.9%)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자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208건(18.0%)도 전년(2022년 108건)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넷째, 매체 유형별 특징으로는 인터넷신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신문의 비중은 2021년 1,172건(90.8%)에서 2022년 1,083건(87.4%), 2023년 1,007건(87.0%)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2009년부터 인터넷매체가 시정권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와도 일치한다. 2023년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고 뉴스 통신이 63건(5.4%), 지역일간지 54건(4.7%), 중앙일간지 29건(2.5%) 순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시정권고 건수가 일간지 507건(93.9%)인 것을 감안하면 언론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인터넷신문의 증

8) 그 외에는 미성년자 피의자 신원공표 264건(48.9%),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경시 11건(2.0%)이었다.

가, 매체 간 경쟁 심화, 열악한 취재 환경 및 법적 지원 부족 등이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신문에는 일간지의 인터넷매체도 포함하므로 인터넷신문의 압도적 비율을 일간지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 외형적으로 ‘인터넷신문’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전통언론과 관련 없는 ‘순수’ 인터넷신문은 56%에 해당하는 695건이 시정권고를 받았고,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닷컴계열도 전체의 37%에 해당한다(이민규, 2023).

반면 방송은 상대적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적다. 방송 보도의 경우 시정권고 건수가 전체의 0.5%에 불과한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심의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제도 운영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언론의 시정권고 수용률은 수치상으로는 65%가량 나타났다. 2023년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1,070건 중 657건의 기사가 수정 또는 삭제되어 65.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수치는 표면상 특징으로 실질적으로 시정권고제도가 언론 보도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2) 시정권고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제기된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구속력의 부재의 문제점이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에 그치며, 언론사가 권고를 불이행해도 제재가 없다. 이러한 비강제성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시정권고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강제성은 반대로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 효과의 한계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시정권고를 공표하거나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지표로 시정권고 건수 반영을 시작해(2022년 시범, 2023년 본격 적용) 일부 제재 효과가 있기는 하나 시정권고제도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은 약화된다.

둘째, 언론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에 대한 우려이다. 시정권고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는 하지만, 시정권고 내용이 공표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정부광고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언론에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개별 언론사별 시정권고 현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언론과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스

스로 규율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규제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강제력이 없더라도 공적 기구의 개입은 언론의 자유 침해나 위축 효과 문제를 항상 수반하게 된다.

셋째, 언론인의 인식과 소극적 참여 문제이다. 일부 언론인들은 현행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준이 언론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언론인들의 인식은 제도의 수용성을 낮추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예방적 효과를 지니는 제도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자율적 수용과 실질적 보도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양재규, 2023 등). 그러나 언론사가 시정권고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율적 노력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른 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이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기능이 다양한 자율, 타율 규제기구의 제도와 유사하여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통해 다양한 내용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들에게 시정권고와 같은 행정지도부터 법정 제재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기자협회 등 다양한 언론기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율규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가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매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권고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는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어 유튜브, 팟캐스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 환경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의 뉴스 이용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시정권고의 대상과 매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섯째, 특정 침해 유형의 반복성 문제이다. 일부 언론사는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반복해서 받는 경향이 있다. 언론중재위가 매년 시정권고를 통해 지적하는 사례들 가운데는 유형이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조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살보도'와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등은 이러한 반복 빈도가 높은 유형이다.

일곱째, 시정권고 심의기준 적용 조항의 편중성이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시정권고는 특정 유형(예: 자살보도, 마약보도, 피의자 신원공개 등)에만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재난보도, 성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살, 폭력, 충격·혐오감 보도의 경우에도 시정권고 강도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손영준, 2019).

여덟째, 모호성 등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심의기준은 원칙 중심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일관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양재규, 2023). 이에 언론사들은 심의기준의 세부 내용이나 적용 사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보도를 반복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시정권고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모호하거나 추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관성 없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민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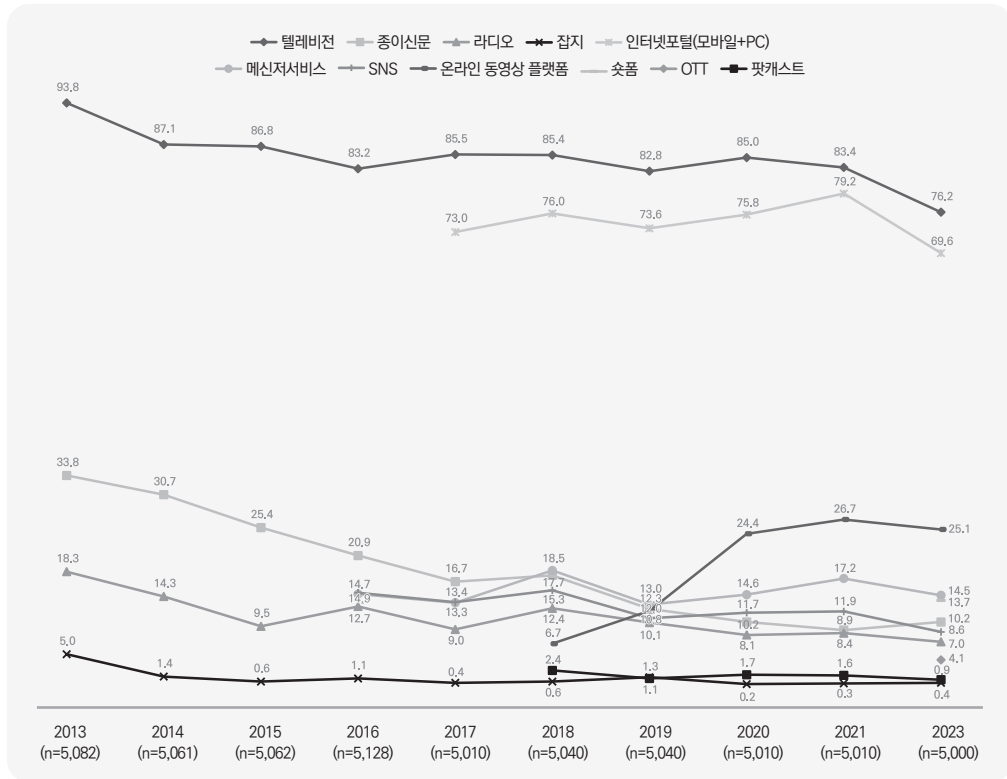
나. 시정권고 심의 현황 분석

1) 개요

1981년 시정권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1989년까지는 관련 시정권고 기준, 대상 및 절차의 미비로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지 않았다. 이후 1989년에 시정권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이후 2015년까지는 시정권고 건수가 연 평균 300건 내외로 안정된 수치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시정권고 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매년 평균 1천건 이상의 시정권고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뉴스 이용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16년 이후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73%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이용이 급증하는 특성을 보였다. 2023년 들어서는 텔레비전 및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이용이 소폭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이용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뉴스 이용행태의 변화는 향후 뉴스이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언론사도 더욱 자극적인 뉴스로 수용자의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시정권고 건수는 늘어나고 그 범위도 다양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1] 매체별 뉴스이용률 추이 (2013~2023년)



출처: 언론진흥재단(2023), <언론수용자 조사 2023> 참조

따라서 시정권고 현황 분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시정권고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매체들이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얼마나 반복해서 받고 있는지도 파악한다. 시정권고 현황분석은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동일법칙 침해 반복 시정권고 사례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정권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연간보고서」에 수록된 기존 통계와 내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통계분석은 별도의 분석틀을 만들어 데이터화했으며, 침해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 개의 기사에 시정권고 결과⁹⁾가 다수의 침해유형에 해당될 경우 각각을 나누어 별도의 사례로 처리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치 자료를 데이터화했다.

9)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제공.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표 기준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현황분석도 언론중재위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사례는 언론중재위에서 제공받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 시정권고 현황분석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분석틀을 만들어 데이터화해 매체사 및 매체유형별로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를 분석했다.

참고로 시정권고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매체 중에서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상되는 피해의 범위, 정기적 발행 여부, 사무처 예산 및 가용 인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 매체를 선정한다. 2024년 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2,716¹⁰⁾개로 그 수에서는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다. 2024년에는 일간신문 169종, 주간지 79종, 월간지 27종, 뉴스통신 24종, 인터넷신문 2,417종이 선정되었는데, 모니터링 대상이 된 언론매체의 89%가 인터넷신문이다. 이들 매체를 서울과 지역소재 전문 모니터원 11명과 언론중재위 전문위원 4명이 모니터링 하는데, 개인당 모니터하는 매체 수는 200여 개 내외이다.

[표 1]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매체사 (2024년 하반기 기준)

| | 일간신문 | 주간지 | 월간지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 합계 |
|---------------|---------------|--------------|--------------|--------------|------------------|-------------------|
| 상시 모니터링 매체사 수 | 169 (6.2%) | 79 (2.9%) | 27 (1.0%) | 24 (0.9%) | 2,417 (89.0%) | 2,716 (100.0%) |

* ()은 100분 비율임

2) 시정권고 심의현황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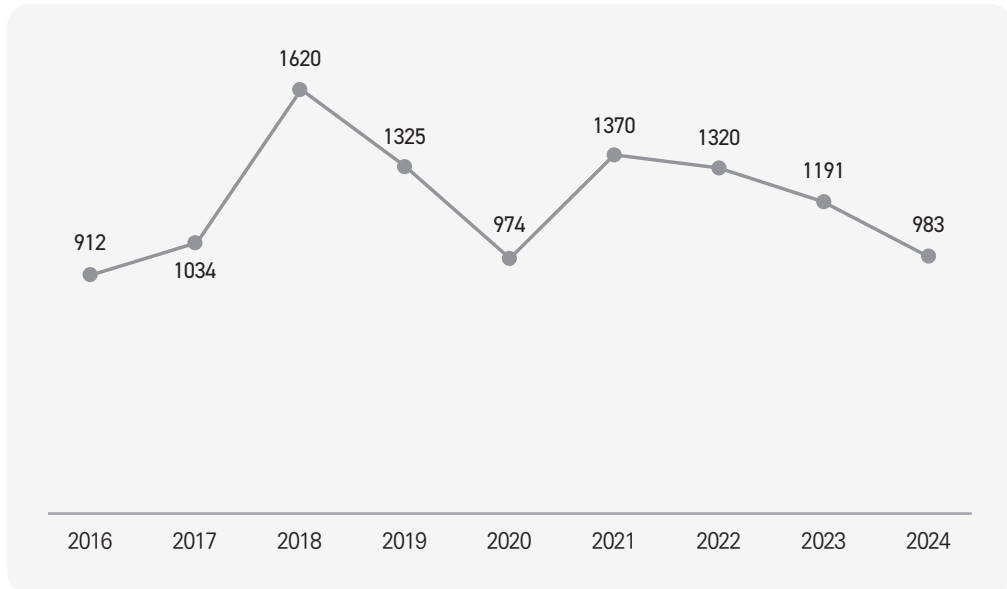
가) 시정권고 추이 : 2016~2025년까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시정권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912건에서 2024년 983건, 그리고 2025년 상반기 517건으로 1,000건 내외의 뉴스기사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1,620건의 시정권고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2021년(1,370건), 2019년(1,325건), 2022년(1,320건)으로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다가 2024년 들어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10) 2024년 하반기 상시모니터링 매체수

[그림 2] 연도별 시정권고 추이 : 2016~2024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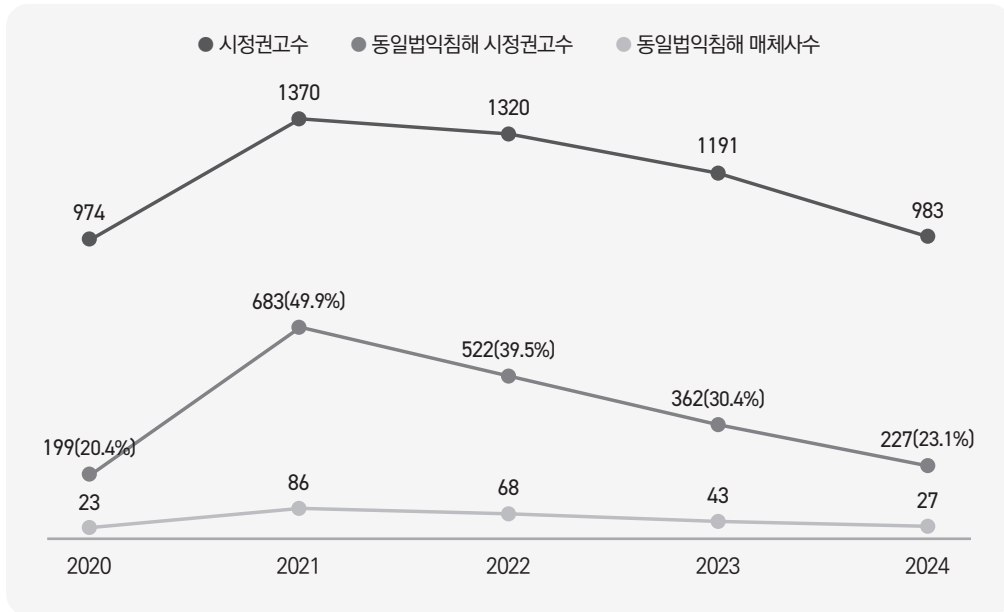
(단위 : 건수)



* 중복건수 포함 (시정권고 결과표에 2조항 이상 권고시 별건으로 집계)

동일법의 침해 건수는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권고받은 사례를 말하는데, 연도별로 눈에 띄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전체 시정권고 건수에서 동일법의 침해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전체 시정권고 건수 중에서 동일법의 침해 건수가 거의 50%에 육박했고, 2020년과 2024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동일법의 침해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시정권고의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시정권고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였다. 가령 2023년에 연예인 ‘배우 이선균씨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동일법의 침해 감소가 반드시 시정권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3] 2020~2024년 시정권고, 동일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 ()은 시정권고 개수대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의 비율임

한편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가 모니터링 대상이 된 전체 언론사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만 살펴보았다. 아래 [표 2]와 같이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모니터링 대상이 된 매체는 2,716개인데 이 중에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398개로 10개 매체 중 1~2개 정도의 매체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뉴스통신사의 경우 2곳 중 1곳은 최소한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왔고, 뉴스통신사 다음으로 일간지는 31.4%가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시정권고 전체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신문사 중에서는 2024년 1년 동안 1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비율이 13.7%로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뉴스통신사 및 일간지에서 인터넷신문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시정권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간지 중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인터넷신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신문의 86.3%는 2024년 1년 동안 한 번도 시정권고를 받지 않았다. 반면 일간지는 68.6%의 매체사만이 시정권고를 받은 이력이 없다. 이런 추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매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간지의 경우 2022년 이후 1번 이

상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수는 소폭 상승하고, 인터넷신문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및 2024년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상승폭 및 하락폭이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일간지가 인터넷신문에 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잘 지킨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표 2] 2022~2024년 매체유형별 1회이상 시정권고 받은 매체사수

| | | 일간신문 | 주간지 | 월간지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 | 합계 |
|-------|--------------------|---------------|--------------|---------------|--------------|-----------------|-----------------|
| 2022년 | 시정권고 대상매체 | 171 | 81 | 27 | 24 | 2,379 | 2,682 |
| | 1번이상 시정권고 받은 매체사 수 | 46 (26.9) | 3 (3.7) | 1 (3.7) | 14 (58.3) | 326 (13.7) | 390 (14.5) |
| | 시정권고 받지 않은 매체사 수 | 125 (73.1) | 78 (96.3) | 26 (96.3) | 10 (41.7) | 2,053 (86.3) | 2,292 (85.5) |
| 2023년 | 시정권고 대상매체 | 171 | 83 | 28 | 23 | 2,411 | 2,716 |
| | 1번이상 시정권고 받은 매체사 수 | 52 (30.4) | 4 (4.8) | 1 (3.6) | 14 (60.9) | 343 (14.2) | 414 (15.2) |
| | 시정권고 받지 않은 매체사 수 | 119 (69.6) | 79 (95.2) | 27 (96.4) | 9 (39.1) | 2,068 (85.8) | 2,540 (84.8) |
| 2024년 | 시정권고 대상매체 | 169 | 79 | 27 | 24 | 2,417 | 2,716 |
| | 1번이상 시정권고 받은 매체사 수 | 53 (31.4) | 2 (2.5) | 0 (-) | 12 (50.0) | 331 (13.7) | 398 (14.7) |
| | 시정권고 받지 않은 매체사 수 | 116 (68.6) | 77 (97.5) | 27 (100.0) | 12 (50.0) | 2,086 (86.3) | 2,318 (85.3) |

* ()은 100분 비율임.

* 시정권고 대상매체수는 해당년도 하반기 매체수를 기준으로 함.

나) 연도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연도별 매체유형별로 시정권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사, 일간지(지역), 일간지(중앙)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으며, 이런 추이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나타났다. 문화부에 등록된 뉴스통신사는 24개로 2024년 문화부에 등록된 전체 매체수의 1% 미만인데, 시정권고 건수는 6%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뉴스통신사가 시정권고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흥미로운 점은 중앙 및 지역일간지들의 시정권고 건수가 202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뉴스통신사나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건수는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정권고 누적 건수는 총 6,355건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5,491건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가 많았는데, 380건으로 전체의 6%에 해당한다.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63건으로 같은 기간 중앙일간지의 125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일간지는 2019년부터 중앙일간지에 비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2016~2024년까지

(단위: 건수)

| 매체 유형 | 2020~202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1~6월) | 총계 |
|--------|--------------|------------|-------------|--------------|--------------|------------|--------------|--------------|--------------|------------|-------------|--------------|
| 인터넷 신문 | 5,491 (86.4) | 629 (69.0) | 792 (76.6) | 1,360 (84.0) | 10,92 (82.4) | 805 (82.6) | 1,233 (90.0) | 1,136 (86.1) | 1,037 (87.1) | 828 (84.2) | 452 (87.4) | 9,364 (83.3) |
| 뉴스 통신 | 380 (6.0) | 69 (7.6) | 49 (4.7) | 89 (5.5) | 86 (6.5) | 60 (6.2) | 78 (5.7) | 86 (6.5) | 64 (5.4) | 68 (6.9) | 24 (4.6) | 673 (6.0) |
| 지역 일간지 | 263 (4.1) | 63 (6.9) | 39 (3.8) | 54 (3.3) | 63 (4.8) | 59 (6.1) | 34 (2.5) | 45 (3.4) | 53 (4.5) | 52 (5.3) | 20 (3.9) | 482 (4.3) |
| 중앙 일간지 | 125 (2.0) | 56 (6.1) | 49 (4.7) | 64 (4.0) | 41 (3.1) | 22 (2.3) | 7 (0.5) | 25 (1.9) | 29 (2.4) | 32 (3.3) | 10 (1.9) | 335 (3.0) |
| 기타 | 72 (1.1) | 82 (9.0) | 91 (8.8) | 48 (3.0) | 33 (2.5) | 22 (2.3) | 15 (1.1) | 24 (1.8) | 2 (0.2) | 1 (0.1) | 8 (1.5) | 326 (2.9) |
| 주간지 | 17 (0.3) | 9 (1.0) | 12 (1.2) | 2 (0.1) | 6 (0.5) | 3 (0.3) | 2 (0.1) | 4 (0.3) | 5 (0.4) | 2 (0.2) | 1 (0.2) | 46 (0.4) |
| 월간지 | 7 (0.1) | 4 (0.4) | 2 (0.2) | 3 (0.2) | 4 (0.3) | 3 (0.3) | 1 (0.1) | 0 (0.0) | 1 (0.1) | 0 (0.0) | 2 (0.4) | 20 (0.2) |
| 합계 | 6,355 (100) | 912 (100) | 1,034 (100) | 1,620 (100) | 1,325 (100) | 974 (100) | 1,370 (100) | 1,320 (100) | 1,191 (100) | 983 (100) | 517 (100) | 11,246 (100) |

* ()은 100분 비율임. 중복건수 포함(시정권고 결과표에 2조항 이상 권고시 별건으로 집계)

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시정권고 추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보다 많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와 사회적 법익 침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개인적 법익 침해와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시정권고가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은 분명

해 보인다. 2024년의 경우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전체 시정권고 건수의 26.7%에 불과했는데,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는 73.3%로 3배 가까이 많았다. 2016년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60%에 근접하고 사회적 법익 침해는 4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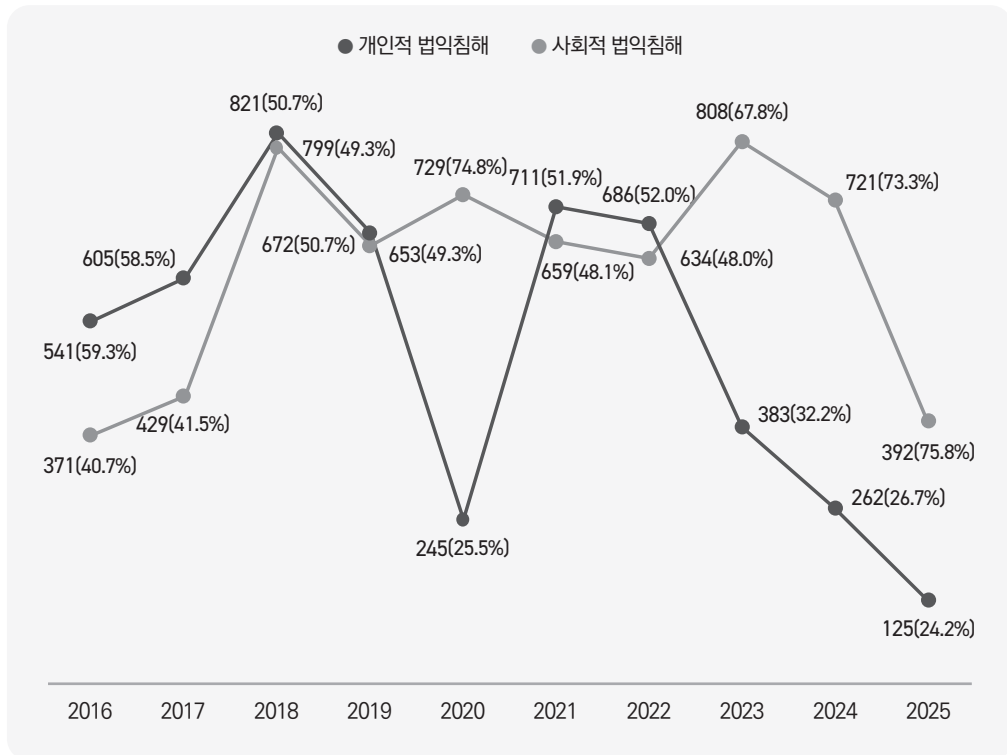
[표 4] 개인적 법익 침해 vs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비교

(단위: 건수)

| 침해유형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1~6월) | 총계 |
|----------|---------------|----------------|----------------|----------------|---------------|----------------|----------------|----------------|---------------|----------------|-----------------|
| 개인적 법익침해 | 541 (59.3) | 605 (58.5) | 821 (50.7) | 672 (50.7) | 245 (25.2) | 711 (51.9) | 686 (52.0) | 383 (32.2) | 262 (26.7) | 125 (24.2) | 5,051 (44.9) |
| 사회적 법익침해 | 371 (40.7) | 429 (41.5) | 799 (49.3) | 653 (49.3) | 729 (74.8) | 659 (48.1) | 634 (48.0) | 808 (67.8) | 721 (73.3) | 392 (75.8) | 6,195 (55.1) |
| 총계 | 912 (100) | 1,034 (100) | 1,620 (100) | 1,325 (100) | 974 (100) | 1,370 (100) | 1,320 (100) | 1,191 (100) | 983 (100) | 517 (100) | 11,246 (100) |

* ()은 연도별 100분 비율임. 중복건수 포함(시정권고 결과표에 2조항 이상 권고시 별건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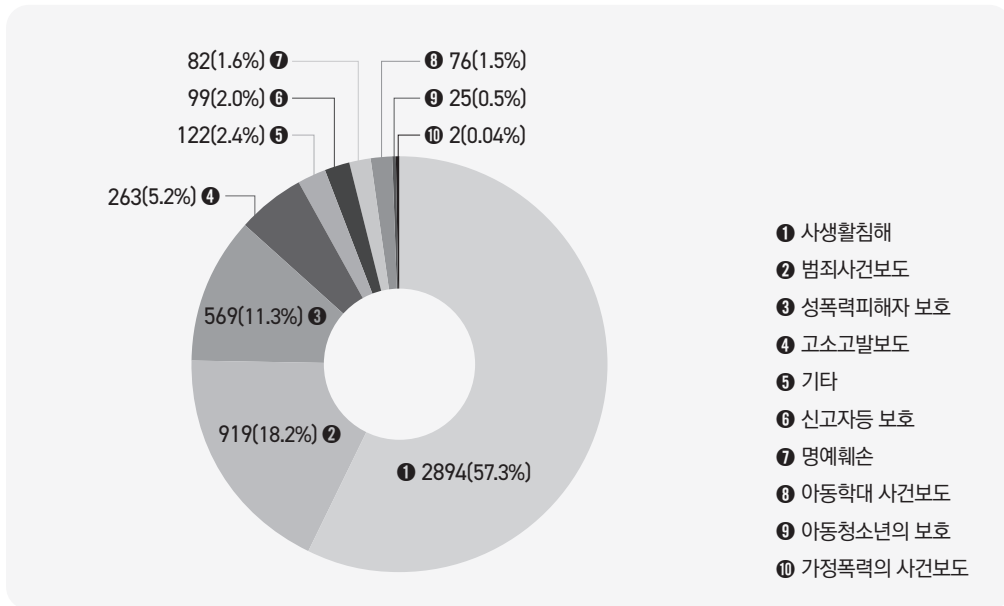
[그림 4] 개인적 법익 침해 vs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 비교



라)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근 10년 동안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는 5,051건으로 집계되었다.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관련 조항 위반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범죄사건 보도’(18.2%), ‘성폭력 피해자 보호’(11.3%), ‘고소고발 보도’(5.2%)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다.

[그림 5] 개인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2016~2025년 상반기)



이를 연도별로 살펴봐도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생활 침해’ 건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범죄사건 보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다. 다만 연도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연예계 및 피팅모델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미투 사건이 발생해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연예인 조민기, 김기덕 감독에 대한 미투를 비롯해 개그맨 미투, 여기에 더해 피팅모델 성추행사건¹¹⁾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투사건은 2020

11) 미투사건 중 스튜디오 피팅모델 양예원 사건은 양예원의 폭로로 억울함을 호소한 스튜디오 실장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이어졌고, 실제 성추행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접화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추가피해자들의 등장으로 스튜디오 피팅모델의 사진촬영 사기 행각 및 성추행이 확인된 사건으로 남아있다.

년과 2021년 사이에 발생했고, 이외는 별도로 2021년에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범죄사건 보도’는 2017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350건으로 2024년의 62건과 비교해 5배 이상 많다. 당시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왜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2017년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어금니아빠 이영학 살인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연예인 대마초사건’이 있었고, ‘칠레외교관 성추행사건’, ‘대한항공 오너 기내난동 사건’ 등이 발생했던 해였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정권고 건수는 2018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는 1건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8년에 339건이나 되었던 데에는 당시 연예계 미투 폭로 사태와 피팅모델 성추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언론 보도가 많았고, 동시에 상당수 언론들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무시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고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시정권고 건수가 2022년과 2024년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해에는 ‘신고자 등 보호’와 관련해 시정권고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2022년에 관련해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니 ‘8살 딸 학대 살해, 유력 증언자 9세 오빠’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자신의 8살 딸을 오랫동안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 진실을 9살 오빠가 밝힌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보도’ 관련 시정권고를 많이 받았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의붓아버지를 어린 딸이 신고하는 사건 등 어린이와 관련된 선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도 20대가 초등생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보도 관련 시정권고도 2024년에 많아졌는데, 당시 의붓아들을 캐리어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가 된 언론 보도는 제목부터 자극적, 선정적이었다. 가령 “초3 아들 13시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점심약속 나가기도”,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 “초3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넣고... 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등으로 보도가 나갔다.

[표 5] 연도별 개인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추이(2016~2025년 상반기)

| 개인적법익침해 상세유형 | 전체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1~6월) |
|--------------|------|------|------|------|------|------|------|------|------|------|----------------|
| 사생활침해 | 2894 | 130 | 217 | 326 | 461 | 193 | 535 | 522 | 273 | 143 | 94 |
| 범죄사건보도 | 919 | 50 | 350 | 113 | 101 | 28 | 100 | 56 | 55 | 62 | 4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569 | 20 | 27 | 339 | 67 | 24 | 70 | 21 | 0 | 1 | 0 |
| 고소고발보도 | 263 | 26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122 | 78 | 7 | 20 | 12 | 0 | 4 | 0 | 1 | 0 | 0 |
| 신고자 등 보호 | 99 | 0 | 0 | 0 | 0 | 0 | 0 | 52 | 0 | 47 | 0 |
| 명예훼손 | 82 | 0 | 4 | 0 | 28 | 0 | 1 | 21 | 0 | 1 | 27 |
| 아동학대 사건보도 | 76 | 0 | 0 | 0 | 0 | 0 | 0 | 14 | 54 | 8 | 0 |
| 아동·청소년의 보호 | 25 | 0 | 0 | 23 | 1 | 0 | 1 | 0 | 0 | 0 | 0 |
| 가정폭력 사건보도 | 2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 총계 | 5051 | 541 | 605 | 821 | 672 | 245 | 711 | 686 | 383 | 262 | 125 |

마)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추이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근 10년 동안 사회적 법익 침해로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6,195건으로 집계되었다.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기사형 광고’와 ‘자살관련 보도’ 심의규정 위반이 각각 25.3%, 2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차별금지’(13.2%), ‘충격·혐오감’(7.9%), ‘성관련 보도’(6.8%), ‘범죄묘사’(6.0%), ‘기사제목’(4.7%), ‘여론조사’(4.3%)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았다.

연도별로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사형 광고’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209건에서 2023년 129건으로 40% 정도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16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만 아니라 다른 광고자율심의 위원회 등 여타 자율심의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지만, 언론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권고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살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자살 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8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226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차별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202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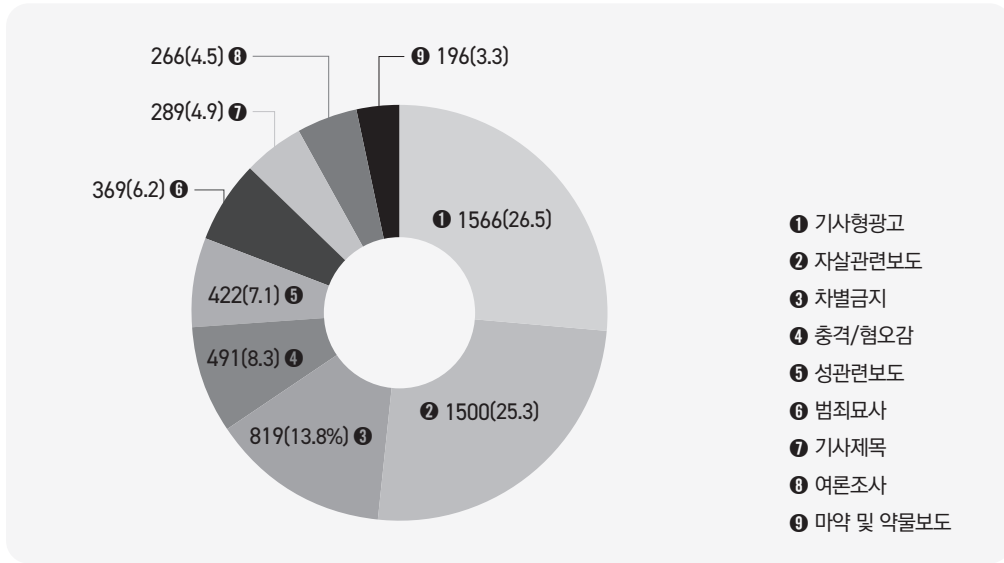
별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2021년 4건에서 2023년 286건, 2024년 242건으로 급증했는데, '차별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소수자를 나타내는 차별적인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최근 미디어오늘(2025.08.10.)에 따르면 한국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 등 12개 언론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을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을 제목에 넣어 신문윤리위로부터 무더기 주의 제재를 받았는데¹²⁾, 제목에 연령, 인종, 지역 등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된 '틀딱'은 노인에 대한 비하표현으로 제목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충격·혐오감'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9년 105건, 2023년 75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2024년에는 21건으로 감소했고, '성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도 2018년 23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이후 두 자리 숫자로 감소, 2024년에는 13건으로 줄었다. '범죄묘사'와 관련해서도 2019년 시정권고 건수가 1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는데, 당시 '어금니아빠 이영학'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한다. 2024년 '범죄묘사'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기사제목'과 관련한 시정권고도 2019년부터 차츰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해 2021년에 99건으로 늘었으나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기준 '기사제목'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38건이었다. 한편 평상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시정권고 건수가 123건, 101건으로 100건을 넘었다. 그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로 이 기간을 전후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총선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가 많다 보니 시정권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 상반기까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2) 미디어오늘(2025.08.10.). "국힘 XX 유튜브 의존"홍준표 노인비하 표현 강조한 언론 무더기주의'

[그림 6] 사회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2016~2025년 상반기)



[표 6] 연도별 사회적 법익 침해 상세유형 추이(2016~2025년 상반기)

| 사회적법익침해 상세유형 | 전체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1~6월) |
|--------------|-------|------|------|------|------|------|------|------|------|------|-------------|
| 기사형광고 | 1,566 | 172 | 198 | 136 | 132 | 158 | 182 | 209 | 129 | 161 | 89 |
| 자살관련보도 | 1,500 | 125 | 85 | 288 | 83 | 112 | 164 | 108 | 208 | 226 | 101 |
| 차별금지 | 819 | 0 | 0 | 0 | 12 | 110 | 4 | 50 | 286 | 242 | 115 |
| 충격/혐오감 | 491 | 14 | 70 | 61 | 105 | 67 | 31 | 33 | 75 | 21 | 14 |
| 성관련보도 | 422 | 5 | 1 | 231 | 26 | 55 | 34 | 37 | 20 | 13 | 0 |
| 범죄묘사 | 369 | 26 | 59 | 52 | 112 | 3 | 29 | 43 | 27 | 16 | 2 |
| 기사제목 | 289 | 0 | 0 | 0 | 8 | 20 | 99 | 68 | 22 | 38 | 34 |
| 여론조사 | 266 | 0 | 0 | 0 | 123 | 101 | 42 | 0 | 0 | 0 | 0 |
| 마약 및 약물보도 | 196 | 29 | 12 | 0 | 40 | 30 | 38 | 8 | 35 | 4 | 0 |
| 폭력묘사 | 146 | 0 | 1 | 24 | 10 | 38 | 33 | 18 | 6 | 0 | 16 |
| 보도윤리 | 89 | 0 | 3 | 7 | 2 | 35 | 3 | 37 | 0 | 0 | 2 |
| 재난보도 | 42 | 0 | 0 | 0 | 0 | 0 | 0 | 23 | 0 | 0 | 19 |
| 총계 | 6,195 | 371 | 429 | 799 | 653 | 729 | 659 | 634 | 808 | 721 | 392 |

3)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결과 분석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주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가령 특정 언론사에서 동일법익 침해가 반복된다면,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제도는 제도적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어느 매체가 어떤 동일법익 침해를 반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 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동일법익 침해 반복 건수는 1993건으로 나타났다. 동일법익 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으로 총 683건 조사되었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227건으로 동일법익 침해 반복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 동일법익을 침해한 매체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가 가장 많았던 2021년에는 81개 매체사가 동일법익을 반복 침해했는데, 매체사 수도 감소해 2024년에는 27개 매체사만이 동일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이 된 매체사가 약 2,700여 개라 할 때 동일법익을 침해한 사유로 반복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사의 비중은 약 1% 내외이다. 2021년에는 86개의 매체사가 동일법익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시정권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동일법익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연도별 동일법익 침해 시정권고 개수 및 매체사

| 연도 | 동일법익침해 매체건수 | 동일법익침해 시정권고개수 |
|-------|-------------|---------------|
| 2024년 | 27 | 227 |
| 2023년 | 43 | 362 |
| 2022년 | 68 | 522 |
| 2021년 | 86 | 683 |
| 2020년 | 23 | 199 |
| 총계 | 247 | 1,993 |

가) 연도별 매체유형별 동일법익 침해 반복 건수 추이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 시정권고 건수를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55]와 같다.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 10건 중 9건은 인터넷신문에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다음으로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가 많았던 매체유형은 뉴스통신사였다. 다행히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신사 모두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과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표 8] 연도별 동일법익 침해 반복 사례 시정권고 건수

| 매체유형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총계 |
|-------|------|------|------|------|------|-------|
| 인터넷신문 | 188 | 626 | 459 | 343 | 185 | 1,801 |
| 뉴스통신 | 11 | 48 | 57 | 15 | 35 | 166 |
| 지역일간지 | 0 | 4 | 3 | 4 | 3 | 14 |
| 기타 | 0 | 5 | 3 | 0 | 0 | 8 |
| 중앙일간지 | 0 | 0 | 0 | 0 | 4 | 4 |
| 주간지 | 0 | 0 | 0 | 0 | 0 | 0 |
| 월간지 | 0 | 0 | 0 | 0 | 0 | 0 |
| 총계 | 199 | 683 | 522 | 362 | 227 | 1,993 |

나) 연도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중에서 동일법익을 반복해 침해하는 유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만 보면 동일법익을 반복하는 침해유형은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물론 2021년과 2022년에는 개인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가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2023년과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개인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와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시정권고 건수에서는 사회적 법익 침해와 개인적 침해 건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6:4 또는 7:3의 비율을 보인다. 즉 개인적 법익 침해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사례가 더 많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총계에서 개인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가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보다 더 많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개인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와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동일법익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유형은 사회적 법익보다는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이 더 많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9] 연도별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 침해유형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총계 |
|----------|------|------|------|------|------|-------|
| 개인적 법익침해 | 53 | 426 | 344 | 183 | 112 | 1,118 |
| 사회적 법익침해 | 146 | 257 | 178 | 179 | 115 | 875 |
| 총계 | 199 | 683 | 522 | 362 | 227 | 1,993 |

이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동일 개인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는 총 1,118건인데, 이중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는 886건으로 79.2%를 차지했다. 그 다음 ‘범죄사건 보도’는 11.3%로 ‘사생활 침해’와 ‘범죄사건 보도’가 개인적 법익 동일 침해 건수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사생활 침해’ 반복 건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한 반복 침해 건수는 2022, 2023년에 비해 2024년 소폭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동일법익 침해 사례는 2021년에만 33건으로 급증했고, ‘신고자 등 보호’ 관련 동일법익 침해 건수는 2022년에만 22건, ‘아동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한 침해 건수는 2023년에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 반복되는 동일 개인적 법익 침해사례는 주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사건 보도’에 집중되고 있고, 그 외의 경우는 해당 연도에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표 10] 2020~2024 동일법익 침해유형 추이 :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 개인적법익침해 상세유형 | 전체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사생활침해 | 886 | 42 | 347 | 284 | 146 | 67 |
| 범죄사건보도 | 126 | 5 | 42 | 24 | 22 | 33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44 | 6 | 33 | 4 | 0 | 1 |
| 신고자 등 보호 | 31 | 0 | 0 | 22 | 0 | 9 |
| 아동학대 사건보도 | 25 | 0 | 0 | 8 | 15 | 2 |
| 명예훼손 | 5 | 0 | 3 | 2 | 0 | 0 |
| 아동·청소년의 보호 | 1 | 0 | 1 | 0 | 0 | 0 |
| 가정폭력 사건보도 | 0 | 0 | 0 | 0 | 0 | 0 |
| 총계 | 1,118 | 53 | 426 | 344 | 183 | 112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 건수는 총 875건으로 이중 ‘자살 보도’가 225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기사제목’, ‘기사형 광고’, ‘충격·혐오감’, ‘차별금지’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사회적 법익 침해 세부 유형에서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유형은 ‘자살보도’였는데,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에서도 ‘자살보도’가 가장 많이 나왔다. 다만 기존의 사회적 법익 침해 세부 유형과 동일법익 반복 침해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기사제목’ 및 ‘기사형 광고’가 많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기사형 광고’는 사회적 법익 침해 세부 유형에서도 빈번하게 지적되었지만 ‘차별금지’나 ‘범죄모사’ 관련 침해사례보다 많지는 않았다. 다행히 ‘기사제목’ 및 ‘기사형 광고’ 관련 동일법익 침해사례도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반복 침해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 차별금지 관련 동일법의 침해 건수가 47건으로 늘어나고, 2024년에도 31건으로 2020년 11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차별금지’ 시정권고는 단어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언론인의 인식개선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한편 ‘성관련 보도’나 ‘폭력묘사’, ‘범죄묘사’ 관련 동일법의 침해사례는 2024년 1건, 0건,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 11] 2020~2024 동일법의 침해유형 추이 : 사회적 법의 침해유형

| 사회적법익침해 상세유형 | 전체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자살보도 | 225 | 19 | 75 | 31 | 52 | 48 |
| 기사제목 | 111 | 15 | 37 | 32 | 13 | 14 |
| 기사형광고 | 110 | 18 | 36 | 32 | 10 | 14 |
| 충격/혐오감 | 102 | 33 | 24 | 16 | 24 | 5 |
| 차별금지 | 101 | 11 | 3 | 9 | 47 | 31 |
| 성관련보도 | 64 | 14 | 23 | 21 | 5 | 1 |
| 폭력묘사 | 55 | 23 | 21 | 11 | 0 | 0 |
| 범죄묘사 | 52 | 0 | 13 | 19 | 18 | 2 |
| 마약 및 약물보도 | 28 | 1 | 15 | 2 | 10 | 0 |
| 여론조사 | 18 | 8 | 10 | 0 | 0 | 0 |
| 재난보도 | 5 | 0 | 0 | 5 | 0 | 0 |
| 보도윤리 | 4 | 4 | 0 | 0 | 0 | 0 |
| 총계 | 875 | 146 | 257 | 178 | 179 | 115 |

다) 매체사별 연도별 동일법의 반복 침해유형별 추이

매체사별로 동일법의 반복 침해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동일법의 반복 침해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사는 인터넷신문A(129건)로 나왔다. 그 다음은 인터넷신문B(126건), 뉴스통신A(98건), 인터넷신문C(84건), 인터넷신문D(73건), 일간지인터넷A(71건)의 순으로 나왔다. 동일법의 반복 침해 상위권에는 주류 언론계열사보다는 독립 인터넷언론 매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위권에 포진한 언론사 대부분이 2020년 대비 2024년 동일법의 침해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인터넷신문A는 반대로 동일법의 반복 침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뉴스통신A는 2022년(29건) 이후 2023년 1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24건으로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동일법의

반복 침해사례가 적어 하위권에 있던 언론사들이 2023년 이후 동일법의 반복 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표 12] 연도별 매체사별 동일법의 반복 침해 건수 추이

| 매체사명* | 전체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인터넷신문A | 129 | 0 | 15 | 32 | 39 | 43 |
| 인터넷신문B | 126 | 43 | 32 | 40 | 11 | 0 |
| 뉴스통신A | 98 | 11 | 19 | 29 | 15 | 24 |
| 인터넷신문C | 84 | 16 | 26 | 35 | 7 | 0 |
| 인터넷신문D | 73 | 25 | 28 | 20 | 0 | 0 |
| 일간지인터넷A | 71 | 10 | 29 | 12 | 8 | 12 |
| 인터넷신문E | 68 | 0 | 18 | 30 | 14 | 6 |
| 일간지인터넷B | 58 | 9 | 24 | 18 | 0 | 7 |
| 일간지인터넷C | 53 | 11 | 19 | 13 | 10 | 0 |
| 일간지인터넷D | 46 | 0 | 24 | 9 | 6 | 7 |

* 매체사명은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 목록 기준

* 일간지인터넷은 일간지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매체사로 인터넷신문과 구분

4) 소결

시정권고 심의현황 분석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시정권고 유형을 분석하고, 시정권고 유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뉴스매체들이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얼마나 반복해서 받고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분석기간은 시정권고 현황분석은 2016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보았고, 동일법의 침해 반복 시정권고 사례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 중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2,716개인데 이 중에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398개로 10개 매체 중 1~2개 정도의 매체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뉴스통신사의 경우 2곳 중 1곳은 최소한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왔고, 뉴스통신사 다음으로 일간지는 31.4%가 1번 이상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시정권고 전체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신문사 중에서는 2024년 1년 동안 1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비율이 13.7%로 평균에 못 미쳤다. 이는 뉴스통신사 및 일간지는 매체 수에서 인터넷신문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시정권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간지 중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인터넷신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신문의 86.3%는 2024년 1년 동안 한 번도 시정권고를 받지 않았다. 반면 일간지는 68.6%의 매체사만이 시정권고를 받은 이력이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일간지가 인터넷신문에 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잘 지킨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연도별 매체유형별로 시정권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정권고 누적건수는 총 6,355건인데, 이 중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5,491건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사, 일간지(지역), 일간지(중앙)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으며, 이런 추이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나타났다. 시정권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는 뉴스통신사는 24개로 2024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 전체 매체수의 1% 미만인데, 시정권고 건수는 6%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뉴스통신사가 시정권고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63건으로 같은 기간 중앙일간지의 125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시정권고 추이를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가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보다 많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추이로 보면, 시정권고가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관련 조항 위반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범죄사건 보도'(18.2%), '성폭력 피해자 보호'(11.3%), '고소고발 보도'(5.2%)의 순으로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기사형 광고'와 '자살관련 보도' 심의규정 위반이 각각 25.3%, 2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차별금지'(13.2%), '충격·혐오감'(7.9%), '성관련 보도'(6.8%), '범죄묘사'(6.0%), '기사제목'(4.7%), '여론조사'(4.3%)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았다.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기사형 광고'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자살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는 8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226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차별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202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 4건에서 2023년 286건, 2024년 2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셋째, ‘여론조사관련’ 시정권고는 주로 선거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여론조사관련’ 시정권고가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시정권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2025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시정권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여론조사관련’ 시정권고는 주로 선거기간에만 집중되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이 시정권고 규정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론조사 보도로 인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폐해가 발생하면 법적 규제가 진행된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다른 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는 ‘여론조사관련’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언론사에 보내진 시정권고 결정문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가령 특정 언론사에서 동일법익 침해가 반복된다면,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제도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 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일법익 침해 반복사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으로 81개 매체사가 동일법익을 반복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4년에는 27개 사로 줄어들었다. 2024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대상이 된 매체사가 약 2,700여 개라 할 때 동일법익을 침해한 사유로 반복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사의 비중은 약 1%미만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동일법익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중에서 동일법익을 반복해 침해하는 유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반복 침해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전체 건수에서는 사회적 법익 침해 건수가 개인적 법익 침해 건수보다 6:4 또는 7:3의 비율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법익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유형은 사회적 법익보다는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가 79.2%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법익 침해유형 중에서는 자살관련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근 들어 차별금지 시정권고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일법익 반복 침해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사는 인터넷신문A로 나왔고, 인터넷신문B, 뉴스통신A, 인터넷신문C, 인터넷신문D가 그 뒤를 이었다. 동일법익을 반복 침해해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사 중에는 독립 인터넷언론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언론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기준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 대상을 확대했는데, 시정권고의 수용 주체인 언론기자 그리고 시정권고 심의제도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언론학자, 실제 시정권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모니터 요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언론기자에게는 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수용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낀 불만,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언론법 및 미디어 윤리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는 현재 시정권고 기준의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국내외 관련 규범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기준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정권고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심의기준을 적용하면서 겪는 해석상의 어려움, 사례 판단 간의 일관성 문제 등 심의 기준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과 운영 매뉴얼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 시민 심층인터뷰에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권고 기준이 어느 정도 현실 적합성을 갖는지를 물어보았고, 현재의 심의기준 외에 더 추가해야 할 기준은 없는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심층인터뷰 대상을 넓히다 보니 한 집단의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타당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인터뷰 질문내용은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네 집단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했고, 이외에는 집단별로 질문을 차등화했다. 공통 질문인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를 통해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집단별 공통된 인식 및 차이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시정권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언론기자들에게는 심의기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또 해당 심의기준이 현장에서 준수하기 적절한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즉 일반 시민에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전체적인 평가를 묻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언론기자들에게는 심의기준의 적합성 및 준수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심층인터뷰 결과는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 가능할지를 파악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일반시민 11명, 시정권고 수용주체 및 실무자 4명, 언론학자 4명, 언론기자 12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20일 까지 집단별로 실시되었으며,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되 인터뷰대상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아래 [표 14]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한 후, 각 질문 밑에 주요하게 답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입하여 인터뷰어 간 질문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서면 인터뷰 대상자가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심의기준별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집단별 심층인터뷰 대상 및 심층인터뷰 질문내용은 아래 [표 13], [표 14]과 같다.

[표 13] 심층인터뷰 대상자

| | | | | |
|----------------------|------------|--------|---------|--------|
| 일반시민 (11명) | 일반시민1 | 여자 | 60대 | |
| | 일반시민2 | 여자 | 40대 | |
| | 일반시민3 | 여자 | 50대 | |
| | 일반시민4 | 여자 | 60대 | |
| | 일반시민5 | 남자 | 40대 | |
| | 일반시민6 | 남자 | 50대 | |
| | 일반시민7 | 남자 | 50대 | |
| | 일반시민8 | 남자 | 50대 | |
| | 일반시민9 | 여자 | 50대 | |
| | 일반시민10 | 여자 | 50대 | |
| | 일반시민11 | 남자 | 50대 | |
| 언론학자 (4명) | 언론학자1 | 여자 | 50대 | |
| | 언론학자2 | 남자 | 60대 | |
| | 언론학자3 | 남자 | 50대 | |
| | 언론학자4 | 남자 | 60대 | |
| | | 언론사유형 | 언론사 규모 | 근무기간 |
| 언론인 (12명) | 언론인1 | 인터넷언론사 | 10명 미만 | 10~19년 |
| | 언론인2 | 중앙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3 | 중앙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4 | 중앙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5 | 뉴스통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6 | 인터넷언론사 | 10~29명 | 10~19년 |
| | 언론인7 | 인터넷언론사 | 10~29명 | 10~19년 |
| | 언론인8 | 지역언론사 | 51~99명 | 20년이상 |
| | 언론인9 | 중앙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10 | 지역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11 | 인터넷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 언론인12 | 중앙언론사 | 100명 이상 | 10~19년 |
| 언론중재위 관계자 (4명) | 언론중재위 관계자1 | 남자 | 차장급 | |
| | 언론중재위 관계자2 | 여자 | 차장급 | |
| | 언론중재위 관계자3 | 여자 | 차장급 | |
| | 언론중재위 관계자4 | 남자 | 위원 | |

[표 14] 심층인터뷰 질문내용

| 질문내용 | 내부 직원 | 일반인 | 언론 학자 | 언론인 |
|---|-------|-----|-------|-----|
| 시정권고심의기준(1~23조)에 대한 평가(5점 척도) | | | | ○ |
| ▶ 심의기준을 이해하기 쉽다 | | | | ○ |
| ▶ 심의기준을 준수하기 쉽다 | | | | ○ |
| ▶ 이 심의기준은 언론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 ○ | ○ | ○ | ○ |
| ▶ 이 심의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 ○ | ○ | ○ | ○ |
|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유용성 평가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적합성 평가 | ○ | ○ | ○ | ○ |
| 시정권고를 통보 받았을 때 언론의 반응 | | | | ○ |
| 시정권고 처리절차 | | | | ○ |
|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모호한 조항 및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평가 | ○ | ○ | ○ | ○ |
| 시정권고 심의기준과 관련한 실무자 애로사항은? | | | | ○ |

2) 심층인터뷰 결과

가) 시정권고 심의기준(1~23조)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는 각 심의규정 조항별로 심층인터뷰 대상자 집단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 집단 모두에 공통된 질문은 해당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언론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평가 및 해당 심의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언론인에게는 이 두 질문 외에 해당 조항이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언론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지는 않은지'를 추가로 물어보았다. 따라서 질문항목별로 전체 사례수에서는 차이가 있다.

(1) 시정권고 심의기준(1~23조)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

우선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심의규정 조항은 제10조의1 '보도윤리' 조항으로 나왔다. 이 조항에 대한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나왔다. 이 조항은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인데, 기자들은 선량한 풍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그 다음으로 이해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조항은 제18조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조항을 꼽았다. 이 조항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은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절차상 취

득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언론 기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재판 중인 사안을 보도하지 않으면 언론에서 보도할만한 내용이 없으며, 다른 언론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을 보도하는데, 나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또 심의 기준으로만 보아도 해당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시정권고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를 평가하게 했다. 23개 시정권고 심의규정 중에서 언론인들이 준수하기 상대적으로 쉽다고 응답한 조항은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받은 조항은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5조(유괴사건 보도), 제6조의1(아동·청소년의 보호), 제6조의2(아동학대 사건 보도), 제8조(신고자 등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제14조(자살보도),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제23조(국기기밀 누설금지)로 나왔다. 언론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워하는 시정권고 조항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1조(재난보도),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로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또 제12조(범죄 묘사)와 제10조의2(차별금지)규정도 3.0~3.1점으로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언급한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제5조(유괴사건 보도), 제6조의1(아동·청소년의 보호),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제22조(국가안전 보장 등), 제23조(국기기밀 누설금지)로 나왔다. 이 4개 조항만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3.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제3조(범죄사건 보도)와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1조(기사제목)는 언론인들이 보기에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으로 나왔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23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언론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심의규정은 제5조(유괴사건 보도)로 5점 만점을 받았다. 이어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제6조의1(아동·청소년의 보호)는 4.9점을 받았고, 제6조의2(아동학대 사건 보도)와 제10조의2(차별금지)는 4.8점을 받았다. 이 기준들은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시정권고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조항들이다. 반면 중요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시정권고 규정들이 4.0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4.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본 심의 규정은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와 제21조(기사제목)로 나왔다. 이 중에서도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가 5점 만점에 3.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15]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 이해하기 쉽다 | 준수하기 쉽다 | 잘 지켜진다 | 중요하다 |
|--------------------------|------------|------------|--------|------|
| 제1조: 사생활보호 | 4.3 | 2.9 | 2.8 | 4.3 |
| 제2조: 명예훼손 금지 | 4.3 | 2.8 | 2.7 | 4.3 |
| 제3조: 범죄사건 보도 | 4.3 | 2.4 | 2.0 | 3.9 |
|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4.8 | 3.9 | 3.1 | 4.9 |
| 제5조: 유괴사건 보도 | 4.3 | 4.4 | 4.3 | 5.0 |
| 제6조의1: 아동 청소년의 보호 | 4.8 | 4.3 | 3.6 | 4.9 |
| 제6조의2: 아동학대 사건 보도 | 4.6 | 3.7 | 2.8 | 4.8 |
| 제7조: 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 4.7 | 3.4 | 3.2 | 4.3 |
| 제8조: 신고자 등 보호 | 4.3 | 3.7 | 3.0 | 4.7 |
|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4.3 | 3.6 | 3.3 | 4.3 |
| 제10조의1: 보도윤리 | 3.0 | 2.5 | 2.3 | 3.9 |
| 제10조의2: 차별금지 | 4.6 | 3.1 | 2.5 | 4.8 |
| 제11조: 재난보도 | 4.3 | 2.5 | 2.6 | 4.0 |
| 제12조: 범죄묘사 | 4.5 | 3.0 | 2.5 | 4.4 |
| 제13조: 성관련 보도 | 4.2 | 4.0 | 2.8 | 4.1 |
| 제14조: 자살보도 | 4.7 | 3.7 | 2.9 | 4.6 |
|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 4.6 | 3.6 | 3.2 | 4.5 |
| 제16조: 폭력묘사 등 | 4.3 | 3.3 | 2.6 | 4.2 |
| 제17조: 충격 혐오감 | 4.3 | 3.3 | 2.6 | 4.1 |
| 제18조: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 3.4 | 2.3 | 1.8 | 3.5 |
|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4.5 | 4.2 | 4.0 | 4.3 |
|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4.5 | 3.3 | 2.3 | 4.3 |
| 제21조: 기사제목 | 4.2 | 3.3 | 2.1 | 3.8 |
| 제22조: 국가안전보장 등 | 3.8 | 3.3 | 3.5 | 4.3 |
| 제23조: 국가기밀 누설금지 | 4.5 | 3.8 | 3.7 | 4.2 |
| 평균 | 4.3 | 3.4 | 2.9 | 4.3 |

(2) 시정권고 심의기준(1~23조)에 대한 일반인 및 언론학자의 평가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일반인 및 언론학자의 평가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우선 시정권고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평가에서 일반인들의 평가는 언론인, 언론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언론인의 경우 각각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5점 만점에 2.7점을 주어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2.4점으로 언론인보다도 더 낮게 평가했다. 언론학자는 평균 3.1점을 주어 세 집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중요성 평가에서는 언론인 4.3점, 일반인 4.3점, 언론학자 4.8점으로 언론인과 일반인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평균가 4.3점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각 조항별로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심의규정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2조(범죄모사),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제21조(기사제목)로 2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다. 일반인들은 제5조(유괴 사건 보도), 제6조의1(아동·청소년의 보도), 제8조(신고자 등 보호),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제19조(여론조사 보도)를 제외하고는 2점대의 점수를 주어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언론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언론학자들이 언론현장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심의규정으로 든 것은 제20조로 5점 만점에 1.5점을 주었다. 제20조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분명히 표기하라는 것인데,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 언론학자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조항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3조(범죄 사건 보도),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0조의2(차별금지), 제14조(자살보도), 제15조(마약 및 약물 보도), 제16조(폭력모사), 제17조(충격·혐오감),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1조(기사제목)로 3점 미만의 2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심의규정 조항은 제1조(사생활 보호)와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1조(기사제목)로 나왔다.

중요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인과 언론학자 모두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학자는 23개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평균 4.7점을 주었고, 일반인은 4.6점을 주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일반인과 언론인은 현재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언론학자들이 다른 심의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한 조항은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와 제13조(성관련 보도), 제15조(마약 및 약물 보도), 제16조(폭력모사)로 제18조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0점을,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는 5점 만점에 4.3점을 주었다. 한편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중요성을 4.3~5점 사이로 주었는데, 일반인이 4.5점 미만의 점수를 준 조항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와 제13조(성관련 보도),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이다.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에서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일반인, 언론학자와 마찬가지로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일반인이나 언론인의 인식보다는 낮게 나왔다. 반면 심의규정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조사에 응한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언론인의 시정권고 심의규정 중요도 평가는 4.3점, 일반인은 4.6점, 언론학자는 4.7점으로 모두 4.3점 이상을 주었는데, 시정권고 심의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시정권고 심의규정 중요도 평가는 3.9점으로 4점을 넘지 않았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조항은 제5조(유

괴사건 보도), 제8조(신고자 등 보호), 제11조(재난보도), 제17조(충격·혐오감), 제19조(여론조사 보도)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조항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10조의1(보도윤리), 제12조(범죄묘사),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였다. 또 언론중재위 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조항은 제11조(재난보도), 제16조(폭력묘사 등), 제17조(충격·혐오감),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제21조(기사제목)인데, 이 조항들은 5점 만점에 3.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표 16]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일반인 및 언론학자들의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 일반인 | | 언론학자 | | 언중위 관계자 | |
|--------------------------|------|------|------|------|---------|------|
| | 지켜진다 | 중요하다 | 지켜진다 | 중요하다 | 지켜진다 | 중요하다 |
| 제1조: 사생활보호 | 1.9 | 4.6 | 2.5 | 4.5 | 2.0 | 4.3 |
| 제2조: 명예훼손 금지 | 2.1 | 4.5 | 3.5 | 4.5 | 2.5 | 4.0 |
| 제3조: 범죄사건 보도 | 2.2 | 4.5 | 2.8 | 4.8 | 3.0 | 4.5 |
|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2.5 | 4.7 | 3.5 | 5.0 | 3.0 | 4.8 |
| 제5조: 유괴사건 보도 | 3.6 | 4.9 | 4.0 | 5.0 | 4.0 | 3.8 |
| 제6조의1: 아동 청소년의 보호 | 3.3 | 5.0 | 3.8 | 4.8 | 3.0 | 4.0 |
| 제6조의2: 아동학대 사건 보도 | 2.6 | 4.8 | 3.5 | 4.5 | 2.8 | 4.3 |
| 제7조: 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 2.7 | 4.5 | 3.5 | 4.8 | 3.0 | 3.8 |
| 제8조: 신고자 등 보호 | 3.1 | 4.7 | 4.0 | 4.8 | 3.8 | 4.5 |
|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3.0 | 4.3 | 3.3 | 5.0 | 3.3 | 3.8 |
| 제10조의1: 보도윤리 | 1.8 | 4.6 | 2.5 | 4.8 | 2.3 | 4.0 |
| 제10조의2: 차별금지 | 2.1 | 4.6 | 2.8 | 5.0 | 3.0 | 3.8 |
| 제11조: 재난보도 | 2.5 | 4.5 | 3.8 | 4.8 | 3.5 | 3.3 |
| 제12조: 범죄묘사 | 1.9 | 4.5 | 3.5 | 4.8 | 2.5 | 4.0 |
| 제13조: 성관련 보도 | 2.5 | 4.4 | 3.3 | 4.3 | 3.3 | 3.8 |
| 제14조: 자살보도 | 2.3 | 4.6 | 2.8 | 5.0 | 2.8 | 3.5 |
|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 2.1 | 4.7 | 2.8 | 4.3 | 3.0 | 4.3 |
| 제16조: 폭력묘사 등 | 2.1 | 4.5 | 2.5 | 4.3 | 3.3 | 3.3 |
| 제17조: 충격 혐오감 | 2.8 | 4.5 | 2.3 | 4.5 | 3.8 | 3.3 |
| 제18조: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 1.7 | 4.5 | 2.0 | 4.0 | 3.3 | 3.3 |
|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 3.2 | 4.6 | 3.0 | 4.5 | 3.5 | 3.0 |
|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 1.6 | 4.5 | 1.5 | 4.8 | 1.8 | 3.3 |
| 제21조: 기사제목 | 1.4 | 4.7 | 2.0 | 4.8 | 3.3 | 3.3 |
| 제22조: 국가안전보장 등 | 2.7 | 4.5 | 3.5 | 4.5 | 4.0 | 4.3 |
| 제23조: 국가기밀 누설 금지 | 2.9 | 4.3 | 3.8 | 4.8 | 4.0 | 4.3 |
| 평균 | 2.4 | 4.6 | 3.1 | 4.7 | 3.1 | 3.9 |

(3) 개인적 법익 vs 사회적 법익 vs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평가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심의규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영역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 언론인의 경우 전체적인 심의규정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개인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4.5점으로 가장 높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이해도는 4.2점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에 비해 이해도 측면에서 다소 낮게 나왔다. 이외에 해당 심의규정이 현장에서 준수하기 쉬운지를 언론인들에게만 물어보았는데, 모두 3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의 준수 정도는 3.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다.

한편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언론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집단 공통으로 질문했는데,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이 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언론인(3.1점), 언론학자(3.4점) 순으로 높게 나왔다. 또 언론중재위 관계자도 이런 심의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3.0점을 주어 언론인과 비슷하게 나왔다.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 관계자를 제외한 세 집단 모두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언론인의 평가점수가 2.6점으로 제일 낮았다. 일반인과 언론학자는 2.7점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보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된 시정권고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언론인, 언론학자, 언론중재위 관계자들은 국가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진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적 법익 침해 관련 시정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는 언론중재위 관계자가 5점 만점에 4점을 주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언론학자(3.7점), 언론인(3.6점) 순으로 나왔다. 일반인의 평가는 2.8점으로 이 역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중요성 평가에서는 네 집단 모두 개인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에 대한 중요성 평가에서 언론학자는 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 다음이 일반인(4.7점), 언론인(4.5점) 순으로 나왔다.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개인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보다는 중요성을 다소 낮게 평가했지만, 언론인, 일반인, 언론학자들은 모두 4.2~4.6점대로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고,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3.6점으로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조항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국가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에 대해서는 네 집단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네 집단의 공통점은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 침해 관련 심의규정의 중요성을 사회적 법익 침해 심의규정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7] 개인적 법익 vs 사회적 법익 vs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평가

(단위: 5점만점 평균)

| 평가항목 | 심의규정 유형 | 언론인 | 일반인 | 언론학자 | 언론중재위 관계자 |
|-----------|---------|-----|-----|------|-----------|
| 이해하기 쉽다 | 개인법익 침해 | 4.5 | - | - | - |
| | 사회법익 침해 | 4.2 | - | - | - |
| | 국가법익 침해 | 4.2 | - | - | - |
| 준수하기 쉽다 | 개인법익 침해 | 3.5 | - | - | - |
| | 사회법익 침해 | 3.2 | - | - | - |
| | 국가법익 침해 | 3.6 | - | - | - |
| 잘 지켜지고 있다 | 개인법익 침해 | 3.1 | 2.7 | 3.4 | 3.0 |
| | 사회법익 침해 | 2.6 | 2.7 | 2.7 | 3.0 |
| | 국가법익 침해 | 3.6 | 2.8 | 3.7 | 4.0 |
| 중요한 조항이다 | 개인법익 침해 | 4.5 | 4.7 | 4.8 | 4.2 |
| | 사회법익 침해 | 4.2 | 4.5 | 4.6 | 3.6 |
| | 국가법익 침해 | 4.3 | 4.4 | 4.7 | 4.3 |

나)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집단별 심층인터뷰 결과

(1) 시정권고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네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정권고제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의 제도라 하더라도 일단 시정권고를 받으면 기사를 작성할 때 주의하게 되므로 권고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언론학자들도 오히려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제도가 언론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불고불리(不告不理)¹³⁾’의 원칙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언론 보도로 인한 보편적 법익 침해를 피해 당사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이런 제도가 갖는 의미는 가령 다채널 환경에서 가짜뉴스, 혐오, 차별 표현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강제가 아닌 서면 권고로 부드럽게 개입하여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견제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이 시정권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라는 성격은 동시에 제도의 한계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13) ‘불고불리(不告不理)’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 검사가 제기한 사건이 아니면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출처: 나무위키)

언론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는데, 언론인 역시도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권고적 수준에서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정권고제도는 개인 및 법의 침해를 줄이는데 유용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언론현장에서 언론사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판단으로 윤리 및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온 기사는 어디까지나 기자와 편집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실수나 오판의 가능성도 있는데, 회사와 기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들을 추후 시정권고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정권고제도가 갖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동의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 강제력보다는 자율규제방식의 이런 권고적 제도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순히 권고적 조치에 그치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아도 해당 기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시정권고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정권고를 받으면, 기사작성 단계에서 “시정권고 대상이 될만한 표현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문화를 자리잡게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시정권고제도가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일부 심의기준이 취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언론인은 시정권고제도가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없으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라도 지키려는 기자나 언론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성폭력이나 범죄관련 보도, 아동관련 보도에 있어 이런 시정권고제도가 없다면 선정적인 보도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신생 언론사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시정권고제도가 최악의 보도를 막거나 시정하는데 일부 기여하더라도 권고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차악의 보도가 무차별 양상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은 5점 만점에 4.8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다만 시정권고제도가 말 그대로 권고 형식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실제 언론 보도에서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 일반인은 시정권고위원회의 활동은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즉 현재 시정권고 현황을 PDF 파일로 공개하는 것 외에 강력한 사회적 강제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정권고제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없다면 미디어 생태계는 지금보다 더 혼탁해질 수 있으므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정권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신생 언론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보도를 막는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고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심의기준이 취재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가 의심되는 보도를 심의해 시정을 권고하는 이 제도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 예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피해 당사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공문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혐오·차별 표현이 빈발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하면, 강제가 아닌 서면 권고로 부드럽게 개입하면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라는 성격은 동시에 제도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언론학자2)

시정권고는 부드러운 권고에 그치며,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나름 예방효과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에서 내리는 권고는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예방적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학자3)

법적 강제력보다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2)

개인 및 법익 침해를 줄이는 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윤리 및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사는 어디까지나 기자와 편집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실수나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처 회사와 기자가 고려하지 못

한 점들을 추후 시정권고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이며, 강제성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정 권고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정권고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포괄적이고 고정돼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무궁무진하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가치 판단 역시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인6)

시정권고가 개인 등의 법익 침해 줄이는데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사들이 최근 클릭수 등을 신경 쓰다 보니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벗어나는 내용이나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권고이다 보니 언론사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인5)

시정권고제도 자체가 예방 효과를 가져와, 기사 작성 단계에서 “시정권고 대상이 될 표현이나 구성은 없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문화를 자리 잡게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일부 매체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현실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인8)

현직 기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인 데다 일부 심의기준은 취재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어 실효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론인4)

실효성은 크지 않으나 제도 자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없으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라도 지키려는 기자나 언론사가 대폭 줄어들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범죄 관련 보도, 아동 관련 보도에 있어 이런 시정권고제도가 없다면 선정적인 보도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신생 언론이 난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제도의 유용성을 떠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정권고제도가 최악의 보도를 막거나 시정하는데 일부 기여하더라도 차악의 보도가 무차별 양산되는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인9)

권고자체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

울을 따지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조금이라도 시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정권고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인10)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가 있지만 최소한의 법 제도를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언론중재법에 규율되고 있는 시정권고제도는 그 의의와 필요성은 충분함에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25,000여 개가 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언론중재법상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준수 의지, 실제 업무에의 반영 의지를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처벌 등 불이익이 없는 명시적 조문에 의한 제도라는 것이 시정권고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언론인11)

언론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심의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정권고제도가 보도 관행에 ‘예방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정권고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시정권고 건수는 줄고 수용률이 높아지는 방향이 되어야 할 텐데,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은 크게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인1)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회의 활동은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권고 조치를 받은 언론사에게 법적 구속력 외에도 사회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합니다. 시정권고 현황을 PDF 파일로 공개하는 것 외에 강력한 사회적 강제력을 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일반시민5)

(2)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심의규정별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심의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언론학자와 언론인의 의견이 나뉘었다.

(가) 심의기준 전반에 평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의견과 규제가 너무 많고

나열식이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현실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물론 심의기준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언론인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취재 현장에서 참고하기에 다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취재윤리강령 등 다른 강령이나 준칙의 수준을 넘어선 기준들도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또 시정권고 기준이 너무 많고 나열식여서 다른 법적 체계와 중복되기도 하고, 언론유관기관의 자율규제 규정과도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 많아 중복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필요한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나머지는 합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좀 더 세부적이고 다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의기준은 전반적으로 당위적인 내용이라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재 현장에서 참고하기에 다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취재윤리강령 등 다른 강령이나 준칙의 수준을 넘어선 기준들도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4)

대부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인11)

전체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고 나열식입니다. 필요한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나머지는 합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 심의기준에선 폭력과 성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데 OTT와 유튜브에서 범람하는 폭력과 성적 묘사는 예외입니다. 규제는 시대와 환경에 걸맞게 좀 더 세부적이고 다층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2)

일반인과 언론인이 겹으로 보여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과는 달리 언론학자들은 시정권고 심의제도가 다른 법체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해 일반인 및 언론인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시정권고제도 전반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언론중재법’, ‘형법’ 등의 법률과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심의규정 제1조는 ‘사생활의 보호 등’을, 제2조는 ‘명예훼손 금지’를 다루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이 ‘언론중재법’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규정도 이에 부응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현 시정권고 규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제2조 명예훼손 규정의 경우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형법 제307조부터 312조까지의 규정에 부응하지 못하며, 언론중재법 제5조, 제5조의 2와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사실의 과장, 사실의 왜곡, 사실의 공표 등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명예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면책되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이 정한 바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자협회 등이 각 분야의 전문기구와 더불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등 여러 분야의 보도 기준들을 거의 수용하지 못하며,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의 자율적인 기사심의규정과 비교해도 명확성, 타당성, 수용가능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가령 ‘인권보도준칙’에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각 부문별로 언론의 취재 보도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사회·국가적 법의 침해’라는 큰 틀의 기준은 현실의 세부적 상황을 가늠하기에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권고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춘 기준 업데이트와 체계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언론학자2)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사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언론자유 침해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학자3)

국가기관의 심의규정이므로 다소 보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언론 현장에서 꾸준히 개정해 온 자율적 심의규정이나 보도준칙 등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기자협회 등이 각 분야의 전문기구와 더불어 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등 여러 분야의 보도 기준들을 거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의 경우 장애인, 노인, 성 소수자 등 각 부문별로 언론의 취재 보도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언

론중재위원회 규정은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의 자율적인 기사심의규정의 명확성, 타당성, 수용가능성과 비교해보더라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못합니다. (언론학자4)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기준은 '언론중재법', '형법' 등의 법률과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의규정 제1조는 '사생활의 보호 등'을, 제2조는 '명예훼손 금지'를 다루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규정도 이에 부응해 개정되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정권고 규정은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2조 명예훼손 규정의 경우 형법 제307조부터 312조까지의 규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언론중재법 제5조, 제5조의 2와도 부응하지 못합니다. 허위사실, 사실의 과장, 사실의 왜곡, 사실의 공표 등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면책되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이 정한 바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학자4)

한편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문제로 여러 집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 언론학자는 '개인·사회·국가적 법의 침해'라는 큰 틀의 기준은 현실의 세부적 상황을 기늠하기엔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권고의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인들은 대부분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에서 예외인 경우로 '공익성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외가 되는 공익 혹은 공익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언론사나 기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령 제14조 '자살보도'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준수하기 쉬운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규정이 모호할수록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의 범위가 넓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석의 범위가 넓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14조 자살보도'의 경우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은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언론인10)

장애 등의 차별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과도한 적용이라는 의견이 편집국 내에 다수 의견인데, 가령 ‘눈먼 돈’ 같은 표현을 차별적인 표현으로 권고하는데 이를 대체할 표현이 적절치 않아 좀 과도한 기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인11)

시정권고제도의 일부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떤 식으로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려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 많아요. (언론인8)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그에 맞는 사례를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시민7)

(나) 시정권고 심의규정별 평가

시정권고 심의규정별 평가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언론인들은 대부분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혼란스럽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또 언론인들 대부분은 시정권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즉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은 언론사든 시정권고를 잘 받지 않는 언론사든 언론사의 자율규제방식과는 달리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정권고제도가 있는 것이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빠른 시간내에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선정적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시정권고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언론사들에게 시정권고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게 되면 이를 계기로 자사 언론 보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비슷한 보도를 할 경우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그러면서도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그런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자사 보도의 문제를 직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시정권고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인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다만 시정권고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심의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전반적으로 당위적인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그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의규정별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① 심의기준 제1조 : 사생활 보호 등

심의기준 제1조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는 규정이기도 하다. 사생활 보호 등의 규정인 1조는 “①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과 “②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두 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규정에 대한 보완설명으로 일반인이든 공인이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초상, 성명, 사생활, 개인 간 통신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보아 시정권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인들의 의견은 시정권고 심의기준 1조에서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자칫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임에도 ‘대중의 관심이 많다’ 등으로 합리화될 여지가 많은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선량한 사회 풍속’ 등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모호하기에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마땅히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임에도 ‘대중의 관심이 많다’ 등으로 합리화 할 여지가 많습니다. (언론인1)

제1조(사생활 보호 등)의 예외규정을 보면,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언론인6)

② 심의기준 제2조 : 명예훼손 금지

심의기준 제2조는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다. 제2조는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③까지는 명예훼손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④는 예외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금지를 담은 제2조 규정의 문제에 대해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한 언론학자는 내

용 자체가 모호하고 형법 제307조부터 312조까지의 규정에 부응하지 못하며, 언론중재법 제5조, 제5조의 2와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형법에 명예훼손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조항들과의 연계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시정권고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규정의 내용 중 허위사실, 사실의 과장, 사실의 왜곡, 사실의 공표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이와 함께 명예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면책되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이 정한 바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언론인도 언론학자의 이런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은 언론의 감시 대상인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명예훼손의 정의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례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제2조 명예훼손 규정의 경우,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형법 제307조부터 312조까지의 규정에 부응하지 못하며, 언론중재법 제5조, 제5조의 2와도 부응하지 못합니다. 허위사실, 사실의 과장, 사실의 왜곡, 사실의 공표 등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면책되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이 정한 바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학자4)

가장 민감하고 모호한 부분은 ‘명예훼손’ 관련 조항입니다.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은 언론의 감시 대상인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좀 더 유연하게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됐으면 합니다. (언론인7)

명예훼손 금지 관련 심의기준은 명예훼손의 정의부터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인4)

③ 심의기준 제3조 : 범죄사건 보도 등

심의기준 제3조는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것으로 “①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

런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②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③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보도는 ‘익명 보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초상이나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경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심의기준 제3조에 대한 의견은 우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준수할 경우 한국 언론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보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는 바로 시의성인데,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확정판결되는 그 시기에 과거의 범죄사건이 무슨 뉴스가치가 있겠냐는 것이다. 물론 3조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이 예외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범죄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 예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와 공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헛갈리는 부분은 바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가 막연하다는 것이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 규정만 보면 범죄사건 보도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은 심의기준 중 범죄사건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준수할 경우 아마 한국 언론은 보도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보도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헛갈리게 하고, 또 ‘상당한 이유’라는 말

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만약 언론사에서 유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확정 판결이라는 건 게다가 대법원인데)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지킨다면 그 언론사는 당장 망하거나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확정 판결이 난 내용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시의성 면에서 뉴스 가치가 떨어집니다. (언론인9)

④ 심의기준 제10조 : 보도윤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는 “①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심의규정에 대해 언론인들은 이 규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의 부분은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인데, 이 규정이 의도하는 바는 알지만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야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언론의 세부 보도지침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제10조 제2항인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모호하다는 입장인데, 가령 독자를 혼동하게 하는 보도가 어떤 것인지 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의기준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법익 침해 금지 부분의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이 지향하는 바는 알겠지만 ‘선량한 풍속’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되겠지만 언론의 세부 보도에 있어 지침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언론인9)

제10조(보도윤리)는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조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6)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준 역시 모호합니다. (언론인4)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있는 ‘선량한 사회 풍속’이라는 표현은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언론인1)

⑤ 심의기준 제10조의2 : 차별금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①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 제10조의2 규정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는 상반되게 나왔는데,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는 것과 차별과 관련된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차별과 관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았다는 한 언론사 기자는 ‘눈먼 돈’과 같은 표현을 차별적인 표현으로 권고하는데 이를 대체할 표현이 적절치 않아 좀 과도한 기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언론사에서는 이런 차별적인 장애 표현이나 자살보도의 경우 재발되는 사례가 많아 기사작성에 사용되는 CMS¹⁴⁾상의 금지어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차별 표현 금지가 과도하다는 언론인도 있었지만, 차별금지 표현을 더 확대해 운영할 필요성을 제안한 언론인도 있었다. 언론 보도에서 차별금지 표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 규정을 더 강화해 언론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 등의 차별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과도한 적용이라는 의견이 편집국 내에 다수 의견인데, 가령 ‘눈먼 돈’ 같은 표현을 차별적인 표현으로 권고하는데 이를 대체할 표현이 적절치 않아 좀 과도한 기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인11)

아동, 장애 등 차별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한 규제가 실제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차별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이 너무 낮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7)

14)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란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웹사이트, 앱 등 디지털 콘텐츠를 쉽고 효율적으로 생성, 관리, 저장,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임.

⑥ 심의기준 제11조 : 재난보도

제11조 재난보도는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 심의규정과 관련해 언론인들이 지적한 문제는 재난의 참상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보도할 경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의 취재 경쟁이 시작되고, 회사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취재하라고 지시하는데, 기자가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취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져 이 시정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자의 무능력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력 없는 권고수준에서의 이런 심의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과 관련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재해 및 참사 보도를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공익과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시정권고 규정에서처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라는 주장에 언론인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마다 재난 보도를 보고 느끼는 불안감 혐오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혐오감 및 불안감을 주어야 권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11조(재난보도)는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도는 이해하나 재난의 참상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보도할 경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회사 상부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취재해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이 취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려고 해도 회사 차원에서 더 상세한 취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강제력 없이 권고수준에서의 이런 심의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인9)

제11조(재난보도) 규정의 경우 취재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해 및 참사 보도를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공익과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 역시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감과 혐오감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난을 더 잘 알려주는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6)

⑦ 심의기준 제12조 범죄묘사와 제16조 폭력묘사 등

심의기준 제12조는 언론이 범죄를 묘사할 때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고, 제16조는 언론의 폭력묘사에 대한 규정이다. 제12조 규정은 “①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언론은 모방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언론은 가학적·피화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연하여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 규정에 대한 언론인의 의견은 이 규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나 유튜브 등을 통해 온갖 폭력이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이 이를 지킨다고 폭력 행위에 대한 모방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가령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고등학생이 고대기로 동급생의 몸을 지지는 끔찍한 폭력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더 글로리’는 허구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언론이 이를 기사로 쓰면 제6조 규정에 의거해 시정권고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고대기로 지진 이 폭력묘사는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학폭 사건¹⁵⁾을 모티브한 것이다. 텍스트보다는 영상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에서 영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폭력묘사가 텍스트화된 뉴스에서 문제가 되

15) MBC뉴스데스크(2006.05.29.). 한 여중생이 동급생 친구들에게 20일동안 폭행당해 운몸에 피멍. <https://www.youtube.com/watch?v=pYCOBZhNdi8>

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언론인은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서 ‘필요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어느 정도의 폭력이어야 ‘필요 이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련 사례를 통해 필요 이상의 폭력묘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야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16조(폭력묘사 등)는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맞지만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 온갖 폭력이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지킨다고 폭력 행위에 대한 모방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만 해도 고데기로 친구의 몸을 지지는 등 끔찍한 폭력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허구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 대한 취재를 통한 묘사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언론인9)

제16조(폭력묘사 등)는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필요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언론인6)

‘필요 이상으로’ 등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인1)

⑧ 심의기준 제15조 : 마약 및 약물보도

심의기준 제15조는 마약 및 약물보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5조는 2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①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②언론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연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할 경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은 ‘누가 마약을 했다’만 가지고는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뉴스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사라는 것이 단순한 사건 발생만

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도 어려울 수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 제15조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마약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심의규정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누가 마약을 했다’를 가지고는 너무 짧고 기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라는 것이 단순한 사건 발생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인2)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죄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인6)

폭력이나 마약 등 사건 보도와 관련해 심의규정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례 공유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5)

⑨ 심의기준 제17조 : 충격·혐오감

심의기준 제17조는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이 조항 역시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즉 어느 정도가 지나친 보도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람마다 지나친 보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친 보도인지 자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심의위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인6)

⑩ 심의기준 제18조 :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심의기준 제18조는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로 “①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언론은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절차상 취득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한 언론인의 의견은 언론이 이 규정을 준수할 경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판 수사에 관한 보도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8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과서적인 문구의 나열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라는 것 역시도 논쟁적인 표현인데, 재판의 결과는 오로지 판사의 논리로 결정되는데, 보도로 인해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언론인들의 생각이었다.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준 역시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지키기 어려운 기준으로 보입니다. (언론인4)

제18조는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인데, 언론이 문구 그대로 이 조항을 준수할 경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판 수사에 관한 보도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과서적인 문구의 나열이라는 생각입니다. (언론인9)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라는 것 역시 논쟁적인 표현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오로지 판사의 논리로 결정되는데, 보도로 인해 ‘부당한’, ‘영향’이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인 개개인을 향한 악의적인 보도는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언론인3)

㉑ 심의기준 제20조 : 기사와 광고의 구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는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특히 의료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즉 의료법 시행령에 준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해 보도할 때 특정 의료기관의 연락처·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학자는 기사형 광고는 전방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의료 관련 기사형 광고만 심의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심의규정만으로는 광고성 기사인지, 기사형 광고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어 어떤 것이 '기사형 광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익한 권고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언론학자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정은 기사형 광고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보고 기사형 광고를 통해 네이버에서 언론사를 퇴출하기도 했는데, 굳이 언론중재위에서까지 이런 규정을 두어 시정권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현재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광고자율심의기구,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등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기사형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포함해 5개 기관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동일한 지적을 받으면 언론사가 과연 수긍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결국 너무 여러 기관에서 기사형 광고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언론인은 '광고는 언론사의 생명줄과 같은 거라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해도 개의치 않아 다른 심의규정에 비해 효과가 없는데, 굳이 '기사형 광고' 조항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넣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규정의 모호성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는데, 가령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보도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심의규정의 하나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입니다. '심의규정'만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이 쟁점과 관련해 유익한 권고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기사형 광고는 전방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의료 관련 기사형 광고만 심의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행 심의규정만으로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정의나 구분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광고성 기사인지, 기사형 광고인지에 대한 구분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학자4)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사형 광고가 시정권고에 들어갔던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기사형 광고를 굉장히 엄하게 보잖아요. 기사형 광고를 통해 퇴출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규정이 굳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기사형 광고는 개인의 어떤 권익 침해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형 광고 관련해 광고자율심의기구도 걸리고 신문윤리위도 걸리고 또 어떤 언론사들은 인터넷신문윤리위

에서도 제재를 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깐 이게 항목이 과연 적절한지 그 효과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거를 굳이 다섯 군데서 동일한 지적을 받으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언론학자1)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의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도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인10)

기사형 광고의 정의와 관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뜨거운 감자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항목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광고는 언론사의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조치를 해도 개의치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인4)

⑫ 심의기준 제22조, 제23조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기밀 누설금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2조와 제23조는 국가적 법익 침해 관련 조항이다.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는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는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과 관련해 한 언론인은 군사기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군사기밀의 경우 군에서 지정하는 공식 기밀이 있지만 대부분 군이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익에 반하는 보도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적용해 해당 기사를 재단하는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22조는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인데 국가안전보장이란 단어의 구체성이 떨어져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보도를 지양하게 할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까지의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시정권고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조항의 심의규정이 모호한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언론인은 국가기밀 누설금지,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언론현장에서는 국가 안보는 다소 침해할 수 있지만 공적인 보도 가치가 큰 사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정권고제도의 일부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려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을 명시해 놓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법 이름을 써놓았으니 내 역할 다했다”는 면피로 보입니다. 군사기밀이 어떤 걸 말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고요. 실제로 군사기밀의 경우 군에서 지정하는 공식 기밀이 있지만 대부분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군이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보도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적용해 해당 기사를 재단하는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정권고 침해금지 조항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어를 두루뭉술하게 명시한 건 정부 당국이 악용할 여지도 있고 동시에 구체성이 떨어져 기자들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보도를 지양하게 할 명확한 지침이 되지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인9)

‘국가안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업에서는 국가안보는 다소 침해할 수 있지만 공적인 보도 가치가 큰 사안도 있습니다. (언론인3)

(3) 언론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정권고 심의제도의 문제

언론인들이 언론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정권고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규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권고 결정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규정의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심의규정과 관련이 있다. 주로 사례로 제시되는 예가 제18조인데, 제18조는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권고 규정이다. 언론인들은 재판으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보도하라는 건 너무 교과서적이고, 언론현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입장이다. 물론 예외조항도 남겨두어 재판 중인 사건을 보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자들은 레저시 미디어가 아무리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심의기준을 준수해도 이름 모를 수많은 신생 매체가 조회수 확보를 위한 보도를 이어나갈 경우 결국은 심의규정을 잘 지키는 언론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시정권고 결정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이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비슷하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사는 시정권고를 받는데 반해 다른 언론사는 시정권고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 시정권고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보도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선정적, 폭력적 보도

와 같은 추상적인 시정권고 규정으로 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수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기사가 많이 송출된 상황에서 '이 모든 매체에 결정문이 다 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 경우 아는 기자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 비슷한 내용의 기사인데 결정문이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이럴 경우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비록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비슷한 많은 언론 보도 중에서 내 보도만 시정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재판으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보도하라는 건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문구는 오히려 기자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리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심의기준을 준수해도 이름 모를 수많은 신생 매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매체들의 경우 시정권고에 신경쓰지 않고 조회수 확보를 위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며, 결국 시정권고를 잘 준수한 언론사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인9)

일부 시정권고의 경우 다소 수공할 수 없는 판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사에서 도 비슷한 표현을 썼던 사안인데, 동일한 판단 잣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론인5)

선거보도라던지 비교적 명확한 비교 기준이 있는 사안은 공감할 수 있지만 선정적, 폭력적 보도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비슷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송출된 상황에서 '이 모든 매체에 결정문이 다 갔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아는 기자를 통해 물어봤을 때 비슷한 구성의 기사인데 결정문이 안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인2)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보통 시정권고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수가 늘어나는데,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시정권고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데, 시정권고 결정이 관련 보도를 한 모든 매체에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비밀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중재위 직원들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릴 때 주목하는 부분은 공익성을 고려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정권고 결정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과 직원이 모두 함께 토론을 통해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미투보도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모니터링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죠. 또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보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심의기준에 해당되지 어쩔 수 없이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긴 있더라구요. (언론중재위 관계자3)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심해서 어렵게 기준을 잡아서 시정권고를 결정합니다. 가령 폭력묘사나 충격·혐오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회의를 해서 혹시 유사한 기사 중에서 빠진 기사는 없는지 찾아보고, 재검토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3)

어떤 사항을 동일하게 노출을 했더라도 기사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 기준에 의거해서 다 모니터링해 잡아야 하니까 모두 시정권고가 나가긴 했거든요. (언론중재위 관계자2)

(4) 언론사 내에서의 시정권고 처리절차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제도화된 시정권고 처리절차가 있었다. 특히 시정권고를 상대적으로 자주 받는 언론사들이 시정권고 처리절차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회사에 시정권고 결정문이 오면 편집국장과 데스크, 해당 기자 순으로 공유되는 절차에는 언론사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편집국장과 데스크 이외에 일반 기자단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자에게만 시정권고 결정문이 공유되는데, 시정권고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온 중앙의 주류 언론사의 경우에는 시정결정문을 해당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자에게까지 공유하여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 시정권고 결

정문을 받으면 최대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시정권고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편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차별적인 장애 표현이나 자살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 언론사는 재발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 내 기사작성에 사용되는 CMS상의 관련 표현들을 금칙어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시정권고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언론사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권고 결정문을 공유한다던가 또 시정권고를 많이 받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회사에 권고 결정문이 오면 편집국장과 데스크, 해당 기자 순으로 공유됩니다. 기자, 데스크, 편집국장 역순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편집국장이 하게 되며, 수용 여부는 언론사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인2)

저희 회사의 경우, 시정 권고가 내려오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편집국에 곧바로 공유되며, 수용 가능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느낀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언론인6)

시정권고를 개별 부서와 편집국장 차원에서 통보를 받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 중대한 사항의 경우 편집국 회의 때 편집국장이 공유를 하기도 하지만 시정권고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인5)

개인적 의견이지만 저희 회사를 포함, 종합일간지나 종합경제지, 방송사들은 시정권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시정권고 결정문 등이 편집지원팀을 통해 편집국 해당 부장(데스크)에게 전달됩니다. 부장은 편집국장과 국장단에 이를 보고하고, 담당 팀장과 해당 기자에게도 이를 전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에서 시정권고문을 받고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했던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벼운 질책과 함께 온라인 기사를 고쳐주는 지시 등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탓에 ‘귀찮은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4)

우리 회사의 경우 자체적인 ‘법무업무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는 경우 사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시정권고 사항을 반영,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결재 등의 처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장애 표현이나 자살보도는 재발사례가 많아 기사작성에 사용되는 CMS상의 금칙어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경우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실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없으며, 시정권고의 근거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인11)

제가 소속한 언론사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면 게이트키퍼 라인을 중심으로 회람하는데, 시정권고를 받게 한 콘텐츠 담당자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이 해당 내용을 읽어보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 덕분에 시정권고의 취지와 해당 기준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게 되고 일선 콘텐츠 제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긍정의 순환고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12)

(5) 제도 개선 방안

한 언론인은 언론사는 법적 등 강제력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타율적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정권고제도와 시정권고 기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직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정권고제도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자율적으로 시정권고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언론 보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었던 것은 언론사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언론의 존재 이유 및 추구해야 할 가치에 맞는 제도라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작동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어 2023년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국내 신문산업 사업체 수는 6,218개이고, 매체수는 7,775개로 상당히 많다. 앞서 한 언론 기자가 언급했듯이 매일 매일 신생 매체가 쏟아져 나오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지키는 언론사는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정권고 기준이라도 없다면 언론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언론인 및 언론학자 그리고 일반인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정권고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양한 집단에서 제시한 시정권고제도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시정권고 심의대상의 확대

우선 시정권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로 언론학자들이 심의대상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언론의 법적 테두리 주변에 존재하는 ‘유사 언론’, 즉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일부라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언론중재법을 통해 유튜브를 포섭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논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도 심의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요지는 현재의 시정권고 심의제도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논란은 유튜브 등 유사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유튜브 등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사 언론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정권고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언론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언론들도 수익을 위해 유사 언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언론인은 “시정권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인터넷매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취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이나 여타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보도를 하는 군소매체 때문에 규모 있는 매체들까지 이들의 보도행태를 따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실제로 언론기능을 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심의기준에 유사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인 듯 보도인 듯 경계가 사라지고, 가짜뉴스도 횡횡하고 있는데, 이용자, 독자들이 이런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그 진위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정권고제도가 미디어 이용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제에 대한 유사 보도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심의대상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 테두리 주변에 존재하는 ‘유사 언론’의 영역에 대한 시정권고도 향후에는 기관의 성격과 법적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일부라도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는 현재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유튜브를 포섭하고자 하는 개정 논의에서 제시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3)

시정권고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취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이나 여타 취재윤리강령,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보도를 하는 군소매체 때문에 규모 있는 매체들까지 해당 보도를 따라가는 일도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정권고 대상을 언론사뿐만 아니라 보도 기능을 하는 SN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4)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감안할 때 위의 심의기준은 레거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대상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하거나, 현재의 이 심의기준에 대상을 뉴미디어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4)

정보인 듯 보도인 듯 경계가 없어지고, 가짜뉴스도 횡횡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외에 시청자, 독자들은 매우 많은 맥락에 노출되어 있어 그 진위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유사 보도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시민9)

(나)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재의 시정권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그야말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제도이다.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에도 시정권고 공표 현황은 참고하지 않는다. 물론 한 언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사가 법적 강제성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제도라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에서는 시정권고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언론 보도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제도만으로는 시정권고가 도입될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 현재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총량이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시정권고 총량이 소폭 늘어나는 것은 시정권고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시정권고제도의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 시정권고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한 목소리로 동의한다.

시정권고제도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제도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시정권고제도를 바라보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공간에는 이름도 생소한 언론들이 매일 클릭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정된 규모의 이용자를 놓고 벌이는 매체 간 클릭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알아서 시정권고 규정을 준수해 주길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심층인터뷰에서는 시정권고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품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언론자유와 가치와 기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폭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를 집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정권고 심의규정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공표(언론중재법에서 허용하는 내용)결과를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참고, 반영하는 방식의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의 매체광고는 해당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품질 낮은 기사를 지속,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대상 기사로 공표되었다면, 해당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직접적인 법적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를 넘어 평가, 지원, 사업 참여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인도 상당했다. 한 언론인은 법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어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언론환경을 고려하면 ‘포털과의 제휴/심사규정 등’에 해당 요소를 반영하여 언론사들의 시정권고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시정권고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내비친 집단은 일반인이었다. 언론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위반에 대한 제재도 확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클릭 장사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나 시정권고제도에는 반대 급부가 미비하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 시정권고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권고와 더불어 불이익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시정권고를 잘 준수하는 언론사들이 클릭 수를 쫓는 언론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언론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언론인, 언론학자, 일반인 모두 동의했다. 다만 한 언론학자는 시정권고제도를 언론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데, 가령 심의과정과 판단근거를 더 촘촘하게 공개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올려야 하고 개별 매체 차원을 넘어 미디어 그룹 단위에서 자율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만 시정권고는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과 결합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사항을 더 확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 논란만 키울 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품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언론자유와 가치를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폭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횟수를 집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기준"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공표(언론중재법에서 허용하는 내용) 결과를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참고, 반영하는 방식의 접근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매체 광고는 해당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품질이 낮은 기사를 지속,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 기사로 공표가 되었다면, 해당 매체는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언론학자4)

제도 개선의 방향은 세 갈래로 모아집니다. 첫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를 넘어 평가·지원·사업 참여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심의과정과 판단 근거를 더 촘촘하게 공개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제도 신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셋째, 개별 매체 차원을 넘어 미디어 그룹 단위의 환류와 자율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언론학자2)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언론환경을 고려하여 '포털과의 제휴/심사규정 등'에 해당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언론사의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론인11)

반복적 불수용 매체에 대한 정보공개, 공공·광고 집행에서 시정권고 수용 이력의 지표화를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8)

시정권고는 언론의 자율규제 노력과 결합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사항을 더 확대, 구체화하는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 논란만 키울 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1)

시정권고와 더불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장사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나 시정권고제도에는 반대급부가 미비합니다. (일반시민4, 일반시민7)

심의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언론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도 확실해야 한다. (일반시민6)

(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명확성, 타당성, 수용가능성 제고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명확성, 타당성, 수용가능성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의규정의 추상성 및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 미흡에 대한 지적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언론학자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의견은 언론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실제 사례 판단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심의규정, 시정권고가 되는 영역의 제한, 시정권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언론인들도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상적이라도 이런 큰 틀마저 없으면 언론윤리가 근간부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처럼 당위성만 언급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조금 더 세밀해지고, 현실에 맞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상당수는 명확성, 타당성, 수용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 판단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심의규정, 시정권고가 되는 영역의 제한, 시정권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4)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조금 더 세밀해지고, 현실에 맞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언론인4)

분명한 건 시정권고 심의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라도 이런 큰 틀마저 없으면 언론윤리가 근간부터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재처럼 당위성만 언급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인9)

한편 시정권고 심의규정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출고를 결정하는 데스크 이상급 기자에 대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잘 준수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언론기자 특히 데스크 이상 집단에 대한 교육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관련해서는 심의규정별 침해사례·판례집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설명하고, 온라인 사례 DB를 구축해 시정권고 규정에 대한 언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1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소규모 매체를 위한 맞춤 가이드, 제목·썸네일 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신입 및 현직 기자 교육에 실제 시정권고 사례를 필수로 포함하여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수 있으며, 또 자살·차별·마약 등 핵심 침해유형에 대한 심화 교육과 데스크용 사전 조정·사후 복구 매뉴얼을 정리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결국 기사를 고치고 매만지고 최종 출고를 결정하는 데스크 이상급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심의 기준 관련 교육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데스크킹하는 데스크 차원에서 심의기준을 제대로 인지해야 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기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9)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유형별 사례·판례집의 정기 발간, 가이드 설명회, 온라인 사례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1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소규모 매체를 위한 맞춤 가이드, 제목·썸네일 운영 원칙, 24시간 업데이트 환경에 적합한 단계적 검증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입·현직 기자 교육에는 실제 시정권고 사례를 필수로 포함하고, 자살·차별·마약 등 핵심 침해유형에 대한 심화 교육과 데스크용 사전 조정·사후 복구 매뉴얼을 정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인8)

(6) 소결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언론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기준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시정권고의 수용 주체인 언론기자(13명), 언론학자(4명), 일반시민(11명)과 시정권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 직원(3명)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심층인터뷰 대상을 넓히다 보니 한 집단의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타당성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내용은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네 집단 공통으로 질문하였고, 이외에는 집단별로 질문을 차등화했다. 가령 공통 질문인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를 통해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집단별 공통된 인식 및 차이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시정권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언론기자들에게는 심의기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은지 또 해당 심의기준이 현장에서 준수하기 적절한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우선 언론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제시한 것은 제10조(보도윤리)와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였다. 제10조(보도윤리)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보도가 어떤 보도인지를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이제까지 제10조(보도윤리)로 시정권고를 결정한 사례가 없어 예시를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는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언론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뉴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시의성인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1,2년 후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하면 그 언론 보도는 시의성이 떨어져 뉴스로서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시정권고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10조와 제18조 이외에도 언론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워하는 시정권고 조항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1조(재난보도)로 5점 만점에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 제12조(범죄묘사)와 제10조의2(차별금지) 규정도 3.0~3.1점으로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언급한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제5조(유괴사건 보도), 제6조(아동·청소년 보호),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제22조(국가안전 보장 등),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로 이 4개 조항만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한편 시정권고 각각의 심의규정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규정별로 중요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일반인과 언론학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평가가 언론인, 언론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인들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심의규정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10조(보도윤리), 제12조(범죄보도),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제21조(기사제목)로 5점 만점에 2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다. 언론학자들이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 심의규정은 제20조로 5점 만점에 1.5점을 주었다. 그 다음은 제1조(사생활 보호), 제3조(범죄사건 보도), 제10조(보도윤리), 제10조의2(차별금지), 제14조(자살보도), 제15조(마약 및 약물 보도), 제16조(폭력모사), 제17조(충격·혐오감),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21조(기사제목)로 5점 만점에 2점대의 점수를 주었다.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심의규정은 제1조(사생활 보호)와 제10조(보도윤리),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금지), 제21조(기사제목)였다.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심의규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영역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우선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언론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언론인과 일반인은 개인적 법익 침해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5점 만점에 2.7~2.8점)고 본 반면, 관련 언론학자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5점 만점에 3.4점)고 보았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3.0점을 주었다. 사회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 관계자를 제외한 세 집단 모두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언론인(2.4점)이 일반인과 언론학자(2.7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했다.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인, 일반인, 언론학자 모두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시정권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 심의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만 모니터 단계에서 국가적 법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정권고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시정권고 결정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서만 아주 보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 법익 침해관련 시정권고 규정은 현실적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정권고 심의규정 중요도 평가에서는 개인적 법익 침해관련 심의규정의 중요도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사회적 법익 침해관련 규정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네 집단 모두 시정권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은 5점 만점에 4.8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다. 언론인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의 제도라 하더라도 일단 시정권고를 받으면 기사를 작성할 때 주의하

게 되므로 권고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없으면, 가이드라인 비슷하게라도 지키려는 기자나 언론사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특히 성폭력이나 범죄 관련 보도와 같은 선정적인 보도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신생 언론사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시정권고제도가 최악의 보도를 막거나 시정하는데는 일부 기여하더라도 권고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차악의 보도가 무차별 양상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학자도 오히려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제도가 언론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보편적 법익 침해를 피해 당사자의 제소 없이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일반인, 언론인, 언론학자 모두 시정권고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라는 성격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제도적 장점인 동시에 한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심의기준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의견과 규제가 너무 많고 나열식이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현실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물론 심의기준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언론인도 시정권고 심의규정이 취재 현장에서 참고하기에 다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취재윤리강령 등 다른 강령이나 준칙의 수준을 넘어선 기준들도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아쉬점으로 지적했다. 즉 필요한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나머지는 합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시정권고 심의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좀 더 세부적이고 다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언론학자는 일반인이나 언론인과 달리 다른 법체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시정권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무엇보다 재정비된 언론중재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다른 여러 분야의 다양한 보도기준들, 가령 '자살예방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등의 기준을 거의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권보도준칙'에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각 부문별로 언론의 취재보도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시정권고 심의규정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적인 권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의규정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심의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예외 조항에 제시되는 '공익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정이 모호할수록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3

언론 관련 기구들의 심의규정 현황 및 비교분석

가. 언론 관련 심의규정 현황과 특징

1) 개요

이 장에서는 언론 관련 심의규정 현황과 특징에 대해 다룬다. 유사한 심의규정 현황을 파악하고 특징을 도출한다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언론 관련 심의제도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터넷신문윤리위')가 있다.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규제 기구들이다. 타율규제로는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가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쇄매체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조해왔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과 같은 통신 영역에서의 규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법정기구로서 방송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기자협회의 경우 직접 심의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국내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규율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기자협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보도준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내 언론 관련 심의규정을 살펴보는 데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이다.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는 점

에서 관련 업계에서 어떻게 규정들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등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 기자협회,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별로 언론관련 심의규정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언론관련 기구

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규정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설립한 국내 대표적인 언론 자율기구이다. 신문윤리위의 규제대상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준수를 서약한 일간신문사와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신문 소설·만화 등이다.

신문윤리위에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 소설·만화 심의기준,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독자 불만 처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윤리위 설립 이전인 1957년 제정되었다. 현 강령은 1957년 제정된 신문윤리강령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기자협회가 1996년 전면개정하여 공동으로 채택한 것이다. 2009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 부분개정하기도 했다. 신문광고실천요강은 1976년 신문윤리위와 한국신문협회가 채택했고 1996년, 2021년 두 차례 개정했다.

신문윤리위의 제재 수단은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이 있다. 또한 신문윤리위의 규정에는 ‘과징금’, ‘자격정지’, ‘제명’ 등과 같은 엄격한 수준의 제재조치도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심의 제재는 ‘주의’, ‘경고’와 같은 가벼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류규하·정영주, 2016).

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2012년 12월 설립한 기구로 인터넷신문 기사, 광고 심의를 맡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심의규정 등이 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2011년 제정했고 2014년, 2015년, 2017년 개정과 2019년 전면개정을 했다. 기사 심의규정은 2014년 제정되었으며 5차례 부분개정(2015, 2017, 2021, 2023, 2024년)과 함께 전면개정(2019

년)을 했다. 광고 윤리강령은 2021년 제정, 2023년 전면개정을 했으며 광고 심의규정은 2014년 제정, 전부개정(2016, 2018, 2021년)과 부분개정(2023년)을 거쳤다. 2024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도 마련했다. 참여사는 2025년 9월 기준 867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심의수수료 납부여부 등에 따라 정서약사와 준서약사로 구분한다.¹⁶⁾ 다만 서약사라면 모두 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준수하기로 인터넷 언론사를 의미한다.

기사 심의절차는 우선 서약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중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의는 월 2회 개최된다. 심의회의 결과 심의결정문 통보 및 자율규제 준수 권고가 이루어지면 서약사는 결정문 수령 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는 기각, 권고, 주의, 경고 등이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원회 자율규약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자율심의·규제 운영 규정 제13조).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심의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권한도 가지지만 무엇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권과 방송법에 따른 제재 처분 권한 등을 통하여 방송매체의 방송의 자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박진우, 2024).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사후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정보통신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규정하는 사항의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16)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inec.or.kr/oath/participation>

라) 기자협회의 관련 규정들

한국기자협회는 직접적인 기사심의를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언론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지켜야 하는 전반적인 언론윤리현장과 윤리강령뿐 아니라 개별 지침을 통해 혐오표현 방지, 감염병 보도, 국가안보 위기 시 군 관련 보도,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보도, 자살보도,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보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를 강조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카카오(다음), 네이버(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가 주축이 되어 2009년 3월 발족되었다. 주요 사업목적은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회원 등 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정관 제4조). 기구는 이사회 아래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종합신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결정은 정책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정회원 소속 각 1인의 위원과 회원 소속이 아닌 정책위원장 및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언론기구별 심의규정 현황

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언론의 독립, 보도와 평론,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언론인의 품위로 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요강은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 16조항을 담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진실성, 신뢰성,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요강은 허위과장 금지, 광고주표시, 자료인용 근거제시, 추천보증의 진실성 등 19조항이다.

[표 18] 신문윤리 실천요강

| 조항 | 구체적 항목 |
|-----------------------|---|
| 언론의자유·책임·독립 (제1조) |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③ 사회적 책임 ④ 차별과 편견 금지 ⑤ 사회적 약자 보호 |
| 취재준칙 (제2조) | ① 신분 사칭·위장 금지, 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③ 재난 및 사고 취재,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
| 보도준칙 (제3조)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 공정보도, ③ 반론의 기회,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 보도자료 검증, ⑥ 선정보도 금지, ⑦ 재난보도의 신중, ⑧ 자살보도의 주의, ⑨ 피의사실 보도, ⑩ 표준어 사용 |
| 사법보도준칙 (제4조) | 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
|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5조) | ① 취재원 보호, ②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③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
| 보도유예 시한 (제6조) | ① 보도유예 시한 연장 금지, ② 보도유예 시한의 효력 상실 |
|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제7조) |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
|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제8조) | 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③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 ④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
| 평론의 원칙 (제9조) | ① 사실의 정론성 ② 평론의 자유 |
| 편집지침 (제10조) | ① 제목의 원칙, ② 편집 변경 금지, ③ 기고문 변경 금지, ④ 기사 정정, ⑤ 관련사진 게재, ⑥ 사진 및 영상 조작 금지, ⑦ 기사와 광고의 구분, ⑧ 이용자의 권리 보호, ⑨ 부당한 재전송 금지 |
| 명예와 신용존중 (제11조) | ①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② 사자의 명예 존중 |
| 사생활 보호 (제12조) | ① 사생활 침해 금지, 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
|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제13조) |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④ 유괴·납치 보도제한 협조 |
|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제14조) | ①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제한, ② 주식·부동산 등의 부당 거래 금지 |
| 언론인의 품위 (제15조) | ① 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③ 광고·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
| 공익의 정의 (제16조) | ① 국가 안전 등 ② 공중 안녕 ③ 범죄의 폭로 ④ 공중의 오도 방지 |

(2) 신문광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에는 진실성, 신뢰성,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총 4조항으로 되어있다. 실천요강에는 비과학적 광고 및 사행심 광고금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수호를 위한 혐오감 광

고, 범죄행위 미화 광고, 공공질서 저해 광고 및 국가적 상징에 대한 모독 표현 금지, 관계 법규 위반 광고 금지, 과장 및 허위광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표 19]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 조항 | 내용 |
|------------------------|---|
| 허위, 과장 금지 (제1조) |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
| 광고주 표시 (제2조) |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자료인용 근거 제시 (제3조) |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 추천, 보증의 진실성 (제4조) |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
| 미신, 비과학 금지 (제5조) |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
| 투기, 사행심 조장 금지 (제6조) |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 비교, 비방 등 주의 (제7조) |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 위법행위 금지 (제8조) |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제9조) |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제10조) |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저작권 준수 (제11조) |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선정, 폭력 표현 금지 (제12조) |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제13조) |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
|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 (제14조) |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 바른 언어 사용 (제15조) |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제16조) | 신문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 애국가,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
| 국가 기밀 게재 금지 (제17조) | 신문광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제18조) |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
| 가독성 저해 금지 (제19조) | 신문광고는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1)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과 심의규정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총 10조항으로 마련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인격권의 보호,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저작권보호, 이해상충, 부당계재 또는 전송금지, 기사와 광고의 분리,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 참여이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취지 및 이념에 따라 자율심의의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심의기준을 정해둔 것이다. 먼저 심의규정 제2조에서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인, 이용자와 같이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¹⁷⁾ 본격적인 심의기준은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반보도원칙(제1절), 권리보호(제2절), 이해상충(제3절), 이용자 참여 및 피해구제(제4절)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 조항 | 내용 |
|----------------------|--|
| 보도의 정확성 (제3조) | ① 사실의 전달 ②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취재원이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명시, 정직한 인용 ③ 사실과 의견의 구분 |
|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제4조) | ① 균형유지 ② 반론권 보장 |
| 선정보도의 지양 (제5조) | ① 선정성의 지양 ② 비속어의 지양 |
| 제목의 원칙 (제6조) | 제목은 핵심내용 대표 |
| 여론조사의 보도 (제7조) | ① 조사의 인용 ② 예외 ③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
| 통계조사의 보도 (제8조) | 통계조사 인용보도 시 의무사항 |
| 사진 등의 사용 (제9조) | ① 보도사진과 영상 ② 자료사진 등의 사용 |
| 인격권의 보호 (제10조) | ① 명예훼손의 금지 ②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③ 예외 ④ 초상권의 보호: 사진 등의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⑤ 사생활 보호 ⑥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 신원보호 |
| 차별적 표현금지 (제11조) |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금지 |

17)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조항 | 내용 |
|-----------------------------------|---|
|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제12조) | ① 출처의 명시 ②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③ 표절의 금지 ④ 이미지 등의 저작권 보호 |
| 범죄보도 (제13조) | ① 피해자 보호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공개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⑤ 성폭력 범죄보도 |
| 자살보도 (제13조1) | 자살보도 시 준수사항 |
| 재난보도 및 감염병보도 (제14조) | ① 인권보호 ② 예단금지 ③ 자극적 묘사 지양 ④ 피해수습 방해금지 |
| 언론인의 이해상충 (제15조) | ① 사적이익 추구 금지 ② 주식 등 거래의 제한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④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⑤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⑥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
| 부당계재 및 전송 금지 (제16조) | ① 기사의 부당계재 금지 ②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
| 기사와 광고의 분리 (제17조) |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② 광고 목적의 제한 ③ 협찬 명시 |
| 이용자 보호 (제17조1) | 의료, 부동산, 주식, 식품 등 기사 관련 내용 |
| 이용자 참여 (제18조) |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③ 다양한 정보 접근의 보장 |
| 이용자 피해구제 (제19조) | ① 피해자 의견 청취 ② 신속한 오보 수정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기사의 출처 명시 (제20조) | 생성형인공지능기술(AI) 등 자동화된 기사 작성의 경우 명시 |

* 굵은 선 구분 : 일반보도원칙(제1절), 권리보호(제2절), 이해상충(제3절), 이용자 참여 및 피해구제(제4절)

(2)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과 심의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에는 품위 및 신뢰제고, 이용자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광고와 기사 구분,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법령준수, 권리보호 등이 마련되어 있다. 기사 심의규정과 동일하게 광고 심의규정도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에 따른 자율심의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심의규정 제2조에서는 인터넷신문광고, 광고지면, 랜딩페이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⁸⁾ 심의기준은 심의규정 제2장에서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품위 및 신뢰제고(제1절), 이용자보호(제2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18) 제2조 (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을 말한다.
3.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이용자가 광고물에 대해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한다.

(제3절),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제4절), 광고와 기사구분(제5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제6절), 법령준수(제7절), 권리보호(제8절)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 조항 | 내용 |
|---------------------------------|--|
|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준수 (제4조) | 공중도덕 준수, 사회윤리 적합 광고표현 |
| 저속한 표현의 제한 (제5조) | 욕설, 비속어 등 주의 |
| 음란 표현의 금지 및 선정적 표현의 제한 (제6조) | 신체, 성행위 등 음란·선정적 표현 유의 |
|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제7조) | 공포심이나 불쾌한 유발하는 표현 금지 |
| 부당한 표현의 금지 (제8조) | 허위·과장 표현, 타사·타제품 비교 표현 |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제9조) | 낚시성 광고 표현 |
|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제11조) | 과도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 및 변경을 제한하는 등 |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제12조) | 광고 의무표시, 금지표현 등 |
| 인권 및 생명존중 (제13조) | 생명경시, 자살 표현 등 금지 |
| 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 (제14조)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
| 유관법령의 준수 (제15조) |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제16조) | 담배, 마약류, 불법의약품, 사행행위, 성매매 등 법령에 따른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제17조) |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초상권 |

* 굵은 선 : 품위 및 신뢰제고(제1절), 이용자보호(제2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제3절),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제4절), 광고와 기사구분(제5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제6절), 법령준수(제7절), 권리보호(제8절) 구분.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이하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을 위한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기준, 제3장 심의절차, 제4장 보칙으로 총 4장 7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일반기준에는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 금지, 재난보도, 윤리적 기준, 소재 및 표현, 어린이·청소년 보호, 광고효과 규제, 방송언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 등 관련된 조항들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칙(이하 '정보통신심의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에 근거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심의기준, 제3장 심의절차, 제4장 보칙으로 총 4장 2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심의기준은 제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제 평화질서 위반(제5조), 헌정질서 위반(제6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7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 보호(제8조의2), 광고·선전 등의 제한(제9조)이다.

[표 22]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 조항 | 내용 |
|-----------------------------|---|
| 공정성 (제9조~제13조) | 공정성,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
| 객관성 (제14조~제18조) | 객관성, 출처명시, 통계 및 여론조사, 오보정정, 보도형식의 표현 |
| 권리침해 금지 (제19조~제23조) | 사생활 보호,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명예훼손 금지, 인권 보호,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공개금지, 범죄사건 보도 등 |
| 재난등에 관한 방송 (제24조의2~4) |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피해자의 안정 등,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
| 윤리적 수준 (제25조~제34조) | 윤리성, 생명의 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사회통합, 양성평등, 문화의 다양성 존중, 신앙의 자유 존중, 법령의 준수, 표절금지 |
|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제42조의2) | 성표현, 폭력묘사, 가학적·피학적 묘사, 충격·혐오감, 범죄 및 악물묘사, 자살묘사, 자연·연출, 성기, 성병 등의 표현, 비과학적 내용, 의료행위 등,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
|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제45조의2)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
| 광고효과 (제46조~제50조) | 광고효과, 방송광고와의 구별, 안내·고지 자막, 중계방송 등, 간접광고, 가상광고, 시상품, 상품판매 |
| 방송언어 (제51조~제52조) | 방송언어, 외국어 |
| 기타 (제53조~제55조의2) |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유료정보서비스, 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방송사고 |

[표 23] 정보통신심의회에 관한 규칙

| 조항 | 내용 |
|---------------------------|--|
| 국제평화 질서위반 등 (제5조) | ①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② 외국의 국가·국장 등을 모독 ③ 그 밖에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 |
| 헌정질서 위반 등 (제6조)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려 ②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 ③ 국가기밀 누설 ④ 국가보안법 금지 행위 ⑤ 역사적 사실왜곡 정보 |
|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7조) | ① 범죄 목적 정보 ② 범죄의 구체적 묘사 ③ 범죄 미화 또는 정당화 ④ 그 밖에 위법행위 조장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8조) | 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②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 ③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 정보 ④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⑤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 |
| 아동·청소년의 보호 (제8조의2)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법령 불이행으로 영리적 목적 ②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개·광고 ④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협박, 학대 정보 |
| 광고·선전 등의 제한 |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위배되는 정보의 매개·광고·선전 등에 대한 시정요구 |

라)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규정들

(1) 언론윤리현장,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윤리현장은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총 9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진실추구, ②투명보도/설명책임, ③인권존중/피해최소화, ④공정보도, ⑤독립보도 ⑥공론장 제공, ⑦다양성존중/차별반대, ⑧품위, ⑨디지털기술 확장이다. 이 현장은 개인과 단체, 조직 등 모든 언론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21년 1월 19일에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 원칙까지 포함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은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기자들이 보도활동을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윤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①언론자유 수호, ②공정보도, ③품위유지, ④정당한 정보수집, ⑤정보의 올바른 사용, ⑥사생활 보호, ⑦취재원 보호, ⑧오보 정정, ⑨차별 및 갈등 조장 금지, ⑩광고·판매 활동의 분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다. 기자는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정보도는 기자가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

하고 균형 있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품위유지는 기자 개인의 사익 추구를 경계하고 직업적 윤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정보수집과 활용에 관한 윤리도 담고 있다. 기자는 불법적 방법이나 기만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수집한 정보는 오직 보도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 존중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오보를 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이 의무화되며,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는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광고나 상업적 이해와 보도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 윤리강령의 특징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 전체가 공공의 책임을 진다는 집단적 윤리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의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전환한 규범으로,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안내한다. 실천요강의 핵심 내용은 언론자유, 취재와 보도 기준, 품위유지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취재와 보도에 관한 기준으로 기자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기사작성은 금지된다. 또한 위계나 협박, 강압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는 윤리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표 24] 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구분 | 주요내용 | |
|--------|---|---|
| 언론윤리헌장 | ① 진실추구, ② 투명보도/설명책임, ③ 인권존중/피해최소화, ④ 공정보도, ⑤ 독립보도 ⑥ 공론장 제공, ⑦ 다양성존중/차별반대, ⑧ 품위, ⑨ 디지털기술 확장 | |
| 기자윤리강령 | ① 언론자유 수호, ② 공정보도, ③ 품위유지, ④ 정당한 정보수집, ⑤ 정보의 올바른 사용, ⑥ 사생활 보호, ⑦ 취재원 보호, ⑧ 오보 정정, ⑨ 차별 및 갈등 조장 금지, ⑩ 광고·판매활동의 분리 | |
| 실천요강 | 언론자유 | 내외부 간섭 불복, 언론자유 침해시 고발/시정, 정보접근권/비판논평 자유 보장 |
| | 취재와 보도 기준 | 공정보도, 명예손상, 사생활침해, 취재원 보호, 정정보도, 갈등차별 보도 제한 |
| | 품위유지 | 금품/특혜/향응 금지, 저급한 언행 금지 등 |

(2) 인권보도준칙

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2011년 제정하고 2014년 한 차례 개정했다. 언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전문 아래 총강을 비롯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9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인권,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25] 기자협회·국가인권위 인권보도준칙의 구성

| 구분 | 주요 내용 |
|------------------|---|
| 민주주의와 인권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훼손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 주의한다 |
| 인격권 |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부당 침해 하지 않는다 범죄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장애인 인권 | 장애인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 무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 성평등 |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 노인인권 |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
|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 성적 소수자 인권 |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 |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

(3) 자살보도 윤리강령/실천요강과 자살예방 보도준칙

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전반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원칙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자살예방에 언론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보도 시 지켜야 할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기자협회와 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공

중)로 자살보도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자살보도 자제 ②영웅시 혹은 미화 제한, ③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제한, ④자살동기 단편적/단정적 판단 제한, ⑤흥미 유발 및 속보/특종 경쟁 제한, ⑥자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살보도 실천요강으로 ‘피할 정보’와 ‘포함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2013년 제정되었으며, 2018년, 2024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 언론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하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4원칙 아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줌으로써 관련보도 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표 26] 자살보도 윤리강령/실천요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구분 | 내용 | |
|---------------------|---|---|
| 윤리강령 | ① 자살보도 자제 ② 영웅시 혹은 미화 금지 ③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금지 ④ 자살동기 단편적/단정적 판단 금지 ⑤ 흥미 유발 및 속보/특종 경쟁 수단화 금지 ⑥ 자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금지 | |
| 실천요강 | 피할 정보 |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작은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삼기 |
| | 포함 정보 | △ 자살률의 최근 경향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 자살의 신화(잘못된 상식) △ 자살 징후들 소개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

(4)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공동 제정했다. 이 기준에서는 ①혐오·공포 조장(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흥기테러' 등) ②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③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사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할 것,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특히 신중할 것,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27]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내용

| 구분 | 내용 |
|--|--|
| 1.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신질환은 고향·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나.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 |
| 2.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가.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흥기테러' 등)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
| 3. 기사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 가. 편견 강화 |
| 4.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정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 다.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 (‘또’, ‘연이은’, 등) |
| 5.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 가.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 |

(5)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1.09.23.)의 세부 기준으로 2012년 12월 12일 제정되었다. 총강에서는 7원칙을 담고 있는데,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왔음을 인식하게 하며(올바른 인

식갓기),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할 것,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그보다 구체적인 실천요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10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 식별정보 금지 ②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제한, ③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 유발 표현의 제한, ④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등 수사 상황의 과도한 보도 제한, ⑤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 ⑥성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보도 금지, ⑦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하에 보도, ⑧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 고려, ⑨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 신중), ⑩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 적극 보도.

(6)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18년 제정했으며 2022년 4월 14일 개정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I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시(원칙), II 취재시 유의사항, III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유의사항이다. 각 부문별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8]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 구분 | 내용 |
|----------------------------|---|
| I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 01 올바른 인식갓기 |
| | 02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주세요. |
| | 03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 | 04 잘못된 보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해 주세요. |
| |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도해 주세요. |
| II 취재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 |
| | 0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 III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02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 구분 | 내용 |
|--------------------|--|
| Ⅲ 기사작성 및 보도 시 유의사항 | 0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
| | 04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 05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 0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 07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한다. |
| | 08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삽화, 영상 등을 사용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 09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인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 10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7)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이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언론이 아동학대 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제정했다. 전문 아래 ①아동의 권익과 인권, ②2차 피해 예방, ③사실 기반 보도, ④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이므로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으므로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피해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상담 기록 등을 보도할 수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아동,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CCTV 영상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 등은 2차 피해 및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한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지양한다.

사실 기반 보도를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않아야 하며,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상 보도 시 화면과 인터뷰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진실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악성 신고·제보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금전적 합의, 망신 주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내용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예,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표 29]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 구분 | 내용 |
|------------|---|
| 전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헌법 근거 |
| 아동의 권익과 인권 |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 부모의 아동 살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폐지,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 인터뷰방식 피해아동 동의 |
| 2차피해 예방 |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심자의 2차 피해,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 사건명에 피해아동 이름, 학대행위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 |
| 사실기반 보도 | 결론 판단이나 추측하는 단어, 선정적 단어, 의도적 편집, 악성 신고·제보 |
| 아동학대 예방권고문 |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제시 |

(8) 국가안보 위기사 군 취재·보도 기준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외부 세력 침입으로 군사 작전이 전개되는 등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언론과 군이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원활한 협조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2012년 9월 24일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동 제정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군의 취재보도 지원 및 정보공개, 제3장 언론의 취재보도 준수사항, 제4장 전·사상자 보도 및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과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실천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군은 비상상황 발생시 '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브리핑'을 한다. ②군은 현장취재가 승인된 취재보도진의 신변안전을 위해 최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③군은 비상상황 조치의 일환으로 필요시 현장보도본부를 설치하여 브리핑 및 취재활동을 지원한다. ④언론은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작전계획, 기밀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ground rules)을 준수한다. ⑤언론은 현장취재나 브리핑이 있을 때 군 당국이 정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⑥언론은 작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

로 하며, 공동취재단은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한다. ⑦언론은 작전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표 30]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실천수칙

| 구분 | 실천수칙 |
|----|------------------------------|
| 군 |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브리핑 |
| | 취재보도진 안전조치 마련 |
| | 현장보도본부 설치 |
| 언론 | 작전사항, 작전계획, 기밀사항 등 취재기본규칙 준수 |
| | 현장취재/브리핑 시 군 기본절차 준수 |
| | 공동취재단 구성 원칙 |
| | 전사/순직/부상자 인권 존중 |

(9)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신문윤리위가 함께 제정했다. 이 기준은 우선 재난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강조한다. 또한 재난보도에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

재난보도준칙은 제1장 목적과 적용, 제2장 취재와 보도, 제3장 언론사의 의무,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취재와 보도에서는 일반준칙, 피해자의 인권보호, 취재진의 안전확보, 현장취재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표 31] 재난보도준칙

| 구분 | 내용 |
|--------|---|
| 취재와 보도 | 일반준칙 정확한 보도(제3조), 인명구조와 수습 우선(제4조), 피해의 최소화(제5조), 예방 정보 제공(제6조), 비윤리적 취재 금지(제7조), 통제지역 취재(제8조), 현장 데스크 운영(제9조),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제10조), 공적 정보의 취급(제11조), 취재원에 대한 검증(제12조), 유언비어 방지(제13조),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제14조), 선정적 보도 지양(제15조), 감정적 표현 자제(제16조), 정정과 반론 보도(제17조) |
| | 피해자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제18조), 신상공개 주의(제19조), 피해자 인터뷰(제20조), 미성년자 취재(제21조), 피해자 대표와의 접촉(제22조), 과거 자료 사용 자제(제23조), 안전 조치 강구(제24조), 안전 장비 준비(제25조), 재난 법규의 숙지(제26조), 충분한 취재지원(제27조) |

| 구분 | 내용 | |
|---------|--|---|
| 취재와 보도 | 취재진 안전확보 | 안전 조치 강구(제24조), 안전 장비 준비(제25조), 재난 법규의 숙지(제26조), 충분한 취재지원(제27조) |
| | 현장취재협의체 운영 | 구성(제28조), 권한(제29조), 의견 개진(제30조), 대표 취재(제31조), 초기 취재 지원(제32조), 현장 제재(제33조) |
| 언론사의 의무 | 지원 준비와 교육(제34조), 교육 참여 독려(제35조), 사후 모니터링(제36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제37조), 언론사별 준칙 제정(제38조),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제39조),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제40조), 자율 심의(제41조), 사후 조치(제42조) | |

(10) 감염병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2020년 4월 28일 제정하였다. 감염병 발생시 정확 신속한 정보를 통해 감염병 퇴치와 피해확산을 막는 데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문과 함께 ①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②신중 감염병 보도, ③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④감염병 연구결과 보도, ⑤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⑥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⑦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의 7분야 기본원칙과 2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감염병보도준칙 : 주의해야할 표현

| 구분 | 예시 |
|---------------------------------------|--|
| 기사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그 외 권고 사항으로 각 언론사는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할 것과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11)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으로 2016년 12월 8일 시행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무분별한 여론조사와 보도행태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준칙은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 5장 2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은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원칙으로 여론조사의 한계, 과학성, 공정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여론조사의 기획, 제4장은 취재와 보도, 제5장은 언론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여론조사를 기획해서 보도하는 과정부터 언론사의 역할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33]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 구성 | 조항 |
|---------------------|--|
| 목적과 적용 범위(제1장)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
|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제2장) | 제3조(여론조사의 한계) 제4조(과학성) 제5조(공정성) |
| 여론조사의 기획(제3장) | 제6조(조사기관의 선정) 제7조(표본의 대표성 확보) 제8조(금지되는 조사행위) 제9조(무리한 속보 경쟁 자제) 제10조(품질의 제고) 제11조(여론조사의 감리) |
| 취재와 보도 (제4장) | 제12조(대상 여론조사) 제13조(공표 보도해야 할 사항) 제14조(인용의 제한) 제15조(인용시 표기 사항)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 제18조(항목 무응답의 고려) 제19조(주관적 표현 자제) 제20조(인포그래픽 제작 주의) 제21조(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 제22조(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
| 언론사의 역할 (제5장) | 제24조(지원 준비와 교육) 제25조(교육 참여 독려) 제26조(언론사별 준칙 제정) 제27조(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제28조(심의) |

(12)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

한국기자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12월 20일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 기준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언론과 개인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마약류 범죄 예

방 동참을 권유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마약류 관련 범죄보도는 모방범죄나 호기심 자극 등 파급력이 있으므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전문, 사건보도 권고기준 원칙, 마약류 범죄 예방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보도 권고기준 원칙은 첫째 언론 보도가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둘째 선정적·자극적이거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 자제, 셋째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문제 해결 중심 보도, 넷째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이다. 각 원칙마다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3)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직능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여 2020년 1월 16일 선언했다. 이 선언 전문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모욕까지 혐오표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미디어 종사자들이 반대 선언을 천명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선언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고 제시했다.

[표 34]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 구분 | 내용 |
|--|--|
| 1. 우리는 평소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 개념과 해악 ■ 혐오표현에는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 |
| 2. 우리는 가부장제, 레드콤플렉스, 지역주의와 같이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질서 유지수단으로 악용돼 온 혐오 표현 |
| 3.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불평등 심화로 확산된 혐오표현 |

| 구분 | 내용 |
|--|---|
| 4. 우리는 주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5. 우리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종교인 등 유명인의 혐오표현은 더 위험 ■ 대부분의 '막말'은 혐오표현 ■ 허위조작정보로 증폭되는 혐오표현 |
| 6. 우리는 경제적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과 불황·재난의 책임전가 |
| 7.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연구 등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사실 부정과 왜곡도 혐오표현 |

마)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규정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강령, 이용자 가이드라인, 정책규정, 인물정보서비스 가이드라인, 어학사전 서비스정책,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챗봇윤리 가이드라인, 청소년보호를 위한 검색어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국내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 범위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언론과 관련이 있는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2023년 제정되었으며 총 1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제2조 제1항),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제9조), 적용의 제외(제10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제11조), 이의제기 등(제12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언론기구별 심의제도 운영과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지향하는 점이 같지만 기구 성격이나 매체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파악된다. 분석결과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심의규정의 차이점이다. 신문윤리위나 인터넷신문윤리위 중심의 자율규제기구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요강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사들로 구성된 기구인 만큼 스스로 보도 준칙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자율규제 규정들은 다소 선언

적이고 최소한의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타율규제 형식이자 법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는 강제력을 지닌 만큼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매우 상세하고 조항별 금지되는 표현을 열거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방송심의 규정의 경우 매우 방대한 분량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능단체인 기자협회 역시 매우 다양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송통신심의위 규정에 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지침 위주로 구성된 것이 차이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의 행동변화가 우리 언론 환경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이 실제 기자 개개인에게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둘째, 매체별 심의규정의 차이점이다. 특히 이번 분석대상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광고가 포함되었다. 매체 특성상 방송관련 심의규정이 가장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전통적으로 방송매체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은 다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범위도 확장되어 있다. 반면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들에게 행정지도뿐 아니라 법정 제재가 가능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지 나열식 심의기준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방송심의 규정 역시 모든 조항에서 완벽하게 명확성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여전히 선언적, 추상적 조항이 혼재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정보통신심의규정은 법에서 제한하는 불법콘텐츠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되 불법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하되 유해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에 비하면 훨씬 단순한 구조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신문윤리위)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인터넷신문윤리위)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었다. 다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이 상대적으로 최근 쟁점을 반영하고 정비된 측면은 있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법정기구이지만 강제력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정기구의 심의기준이라는 점에서 자율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타율규제로 보기도 어렵다. 규제대상은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매체뿐 아니라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제기관의 성격(타율/자율)이나 매체(신문/방송/인터넷언론)별 상이한 특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법정기구로서 법적 금지사항 위주로 최소한의 제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지, 언론사의 윤리적 실천사항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개정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언론관련 심의규정 비교분석

1) 개요

이 장에서는 언론관련 국내 심의규정들을 조항별로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조항별 개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전체적인 규정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조항별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심의규정들의 조항별 비교분석을 한다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보완하여 개정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규정 비교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은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 언론중재위 4기관의 심의규정이다. 신문윤리위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국내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언론 관련 심의규정 중 하나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신문윤리요강과 유사하지만 인터넷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최근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규정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은 타율규제를 대표하는 규정으로 비교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앞선 규정들과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포함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앞선 4기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기자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가이드라인들을 추가하여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기자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보도준칙 등은 심의규정은 아니지만 비교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향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조항별 비교분석은 정형화된 틀로 행해지지는 않으나 대체로 각 심의규정의 조항별 공통점, 차이점,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특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아울러 조항별 비교분석표를 가급적 제시함으로써 독이성(Readability)을 높이고자 했다.

[표 35] 주요 언론기구의 심의규정

| 구분 | 기관 | 관련 규정 |
|------|------------|--|
| 자율기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 |
|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과 기사심의규정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과 광고심의규정 |
| | 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정책규정/협오표현 가이드라인 |
| 공적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칙 |
| | 언론중재위원회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직능단체 | 한국기자협회 | 언론윤리현장,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예방 보도준칙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 국가안보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평화통일과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언론인트라우마가이드북1.0 협오표현반대미디어실천선언 |

2) 심의기준 비교분석 : 개인적 법익

가) 사생활 조항

- (동의없는 사생활 공개금지외 예외) 사생활의 경우 언론이 허락없이(동의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외' '공인의 경우' '공익을 위해' 등 단서를 붙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기구별 차이점) 신문윤리위가 '절제를 잃지 않도록'이라고 하여 자율적 행위를 강조했다면 인터넷신문윤리위의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규정도 금지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당사자 동의없이)사적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규정도 사생활 침해를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자율규제 기구들이 행위에 초점을 맞춰 '유의한다'는 식의 권고라면 방송통신심의위는 금지되는 정보를 간결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초상권 분리)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모두 사생활과 별개로 초상권을 분리해서 추가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초상 사용에서 동의를 일반원칙으로 제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온라인 게시물에서 사진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의 초상 이용도 다루고 있다. 또 신문윤리위는 소유주나 관리자 승인 없이 개인정보의 무단 검색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에도 '초상권 침해'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 또는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규정에도 초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이라고 하여 별도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비교적 간결하게 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초상, 성명, 음성 등을 포함하여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예외적 사항으로 '당사자 동의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제시하고 있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는 공표도 통신비밀법 조항을 근거로 금지하고 있다. 다른 규정에서 공공장소, 온라인 게시물 등 개별 상황별 조항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이점도 있으나 공통된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언론중재위 방식도 장점이 있다. 다만 초상권의 경우 그 중요성이나 다른 기구들의 조항을 감안한다면 사생활과 별도로 개별 조항으로 다룰 것인지는 향후 검토할 만하다.

[표 36] 사생활 관련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12조 (사생활 보호) ① 사생활 침해 금지 ② 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③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0조 (인격권 보호) 4. 초상권의 보호 ① 사진 등의 촬영 ②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③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5. 사생활 보호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19조 (사생활 보호)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② 초상권 ③ 인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

| 기구 | 조항 |
|---------|---|
| 방송통신심의위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 |
| 언론중재위 |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 ②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 |

나) 범죄사건 보도: 피의자, 피해자 신원공개

- (피의자 중심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은 대개 범죄보도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규정들은 대체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 원칙을 선언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다루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범죄사건 보도 조항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관련 내용들이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가해자 공개금지(제22조), 범죄사건의 피해자 보호 조항(제21조의2)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 (차이점) 신문윤리위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소 선언적이라면 인터넷신문윤리위는 피해자 비공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와 무관한 가족 신원 비공개 원칙 등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이다 보니 ‘표현’이나 ‘묘사’와 관련된 조항이 눈에 띄었다.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 촬영한 장면’이나 ‘형 집행종료나 시효 만료된 범죄사건에서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신원공개 예외) 피의자(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문윤리위는 신원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도 금지 위주로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신원공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등 법률을 근

거로 당사자 동의없는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 모두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원정보도 보호하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의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당사자 동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방송심의규정은 가해자, 피해자, 가족들을 넘어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신문윤리위는 미성년자 피의자(18세 이하)의 이름과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범죄사건 보도 조항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제10조 인격권 보호 조항에서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2조). 정리하자면 이들 규정들은 미성년자 피의자인 경우만 다루는 경우와 피의자, 가해자, 가족 중 미성년자라면 모두 다루는 경우로 나뉜다. 미성년자 피의자인 경우 신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경우, 신원공개를 금지하더라도 보호자 동의 시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 (그 외 심의사항) 범죄보도에서는 신원공개 여부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니더라도 범죄보도에서는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도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할 것,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의 범죄사건 보도 조항인 제3조는 피의자(제1항)와 피해자(제2항)를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법으로 신원공개가 허용된 경우를 구체적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다만 다른 규정들에 비해서는 범죄보도에서 그 가족이나 미성년자, 신고자/제보자 등과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단지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국한해서 신원 공개를 금지한 것도 특징이다. 특정강력범죄사건뿐 아니라 크고 작은 범죄일지라도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피해자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37] 범죄사건 보도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3조 (범죄보도) ① 피해자 보호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공개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④ 범죄등과 관련한 보도 ⑤ 성폭력 범죄보도 제10조 (인격권 보호) 6. (미성년자 보호)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② 범죄 발생의 원인과 피해자 ③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 인적사항 ④ 공공의 이익 등 예외 ⑤ 공익신고자 등 신고자 인적사항 제22조 (공개금지) ① 가해자의 인적사항(청소년인 경우) ②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 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 ① 확정판결 전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 ② 형의 집행종료나 시효만으로 범죄사건 ③ 피고인/피의자 근접촬영 ④ 범죄행위의 과장 또는 정당화 ⑤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 |
| 언론중재위 |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 공표금지 ③ 고소고발된 사건 및 구체적 내용 보도 금지 |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보호 원칙)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히 방송통신심의위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때는 예외로 공개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어린이·청소년은 제외한다). 아울러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다루지 않도록 한다.
- (가해자 중심의 보도 금지) 가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 (선정적 보도 금지) 선정적 보도로는 흥미 위주의 사건 재연 등을 포함해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기구별 차이점) 신문윤리위는 성범죄 등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는

신상정보 공개금지, 무관한 사생활 보도 금지, 가해자 중심의 보도, 선정적 보도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상을 피해자로 국한하는 경우(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와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 주변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신문윤리위)로 나뉘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신상공개, 선정적 보도, 단정적 보도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근거로 동의 없는 신상공개를 금지한다. 선정적 보도에는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 다른 규정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가해자 중심의 보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정적 보도의 경우 가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한 측면이 있고 단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다고보다는 일반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8]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3조 (범죄보도) 5. 성폭력 범죄보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금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금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금지, 흥미위주 사건 재연과 선정 보도 금지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의3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② 무관한 피해자 사적 정보 금지 ③ 선정적, 자극적 금지, 가해자의 책임 ④ 가해자 말과 행동 부각 |
| 언론중재위 |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 특정 금지 ② 피해상태, 무관한 사생활, 범행수법 등 ③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 보도 |

라) 아동·청소년의 보호

- (연령별 용어)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의 용어가 기구별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구별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거나(신문윤리위),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처리하기도 한다(인터넷신문윤리위). 어린이는 13세 미만,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 (아동·청소년 보호의 의미) 아동·청소년 보호는 출연자에 대한 보호와 시청자에 대한 보호로 나뉜다. 출연자에 대한 보호 문제는 다시 취재 과정과 보도 과정으로 구분한다. 취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도 과정에서는 신원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시청자 보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 (신원공개 차이점) 보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청소년의 신원공개 보호이다. 신원공개 보호 문제는 일반적 상황과 범죄보도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범죄사건에서 어린이·청소년 인터뷰시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범죄와 연루된 경우 신문윤리위/인터넷신문윤리위는 신원공개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청소년이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적인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 언론은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규정은 성표현과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제6절)를 별도로 마련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방송 등 관련된 내용을 더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정보통신심의규정에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성적 유희 대상 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보(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대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의2).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3조항으로 구성된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당사자 신원공개 금지(소년법 제68조),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공개 금지(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원공개 금지(중대범죄신상정보법)이다. 다른 규정들에 비해서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률 외의 일반적인 사건·사고 보도의 경우 적용할 기준은 미비하다. 아울러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신원공개에 있어 보호자 동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9]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④ 유괴·납치 보도제한 협조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0조 (인격권의 보호) 6.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 신원보호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2조 (정의) 3. “어린이” 13세 미만 4. “청소년” 19세 미만 제22조 (공개금지) 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공개금지. ②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청소년인 경우 보호자 동의 예외). 제35조 (성표현) ③ 성표현 금지.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5.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유희의 대상 묘사장면 제6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 (정서함양), 제44조 (시청자 보호), 제45조 (출연자 인권 보호), 제45조의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방송) |
|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의2 (아동·청소년 보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 2.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 묘사하는 정보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청소년 학대 정보 |
| 언론중재위 |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공표 금지(소년법) ②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 공표 금지(아동·청소년성보호법) ③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공개 금지(중대범죄신상공개법) |

마) 아동학대 사건 보도

- (신원공개 금지) 신문윤리위나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되지 않도록 신원공개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특별히 가족 유형에 대해서도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학대내용 보도)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심의규정)는 아동학대 내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기자협회) 기자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에서는 보호 대상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로 확대하고 있다. 학대행위 의심자의 특징이 피해아동의 특징이나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학대 장면의 묘사,

가족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 사건명에 피해아동 이름, 학대행위 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 등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양한 주체의 신상정보 비공개, 선정적 보도, 사생활 침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가족유형에 대한 편견조장이나 아동학대내용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제외되어 있다.

[표 40] 아동학대 사건 보도 조항

| 기구 | 조항 |
|---------|---|
| 방송통신심의위 | <p>방송심의규정 제21조의4 (어린이학대 사건 보도 등)</p> <p>① 방송은 어린이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12.28.]</p> |
| 방송통신심의위 | <p>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의2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p> <p>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p> |
| 언론중재위 | <p>제6조의2 (아동학대 사건 보도)</p> <p>① 언론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p> <p>② 언론은 아동학대 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언론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본조신설 2021.11.24.]</p> |

[표 41] 기자협회의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 구분 | 내용 |
|------------|---|
| 전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헌법 근거 |
| 아동의 권익과 인권 |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 부모의 아동 살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폐지,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 인터뷰방식 피해아동 동의 |
| 2차피해 예방 |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자의 2차 피해,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 사건명에 피해아동 이름, 학대행위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 |
| 사실기반 보도 | 결론 판단이나 추측하는 단어, 선정적 단어, 의도적 편집, 악성 신고·제보 |
| 아동학대 예방권고문 |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제시 |

3) 심의기준 비교분석 : 사회적 법익

가) 차별금지

- (상이한 접근) 기구별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차별/편견금지, 사회통합 등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즉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보다는 차별이나 편견을 해서는 아니된다거나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와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차별, 편견, 갈등의 조장을 금지하거나(방송심의규정),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정보통신심의규정). 이러한 규정들은 혐오표현 금지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혐오와 모욕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 등 금지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반면 기자협회와 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혐오표현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목적과 정의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은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이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이다.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을 말한다.
- (특정속성의 범위)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가르는 기준을 특정 속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정속성의 범위가 규정마다 다르다. 신문윤리위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로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방송심의규정)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정보통신심의규

정)으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2원칙을 강조한다. ①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세부사항(특정 속성)을 부각해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우선 편견적 표현, 경멸적 표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특히 금지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특정 속성의 경우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이 제시되었는데 다른 규정들에 비해 민족, 성적지향, 직업 등이 제외되어 있다.

[표 42] 차별금지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 금지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1조 (차별적 표현금지) 1. 특정 집단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2. 세부 사항 자극적 묘사 |
| 방송통신심의위 | 제29조 (사회통합) 차별·편견·갈등을 조장 |
| |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편견 조장 내용 |
| 언론중재위 | 제10조의2 (차별금지) ①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 ② 세부사항 과도하게 보도 |

[표 43] 기자협회와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 정의

| 구분 | 내용 |
|------------|--|
| 기자협회 |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나)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와 폭력묘사/충격·혐오감¹⁹⁾

-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차이) 음란이나 폭력적인 범죄묘사에 대해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문윤리위는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만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정보통신심의규정)는 금지되는 음란이나 폭력적인 표현을 열거 형태로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폭력묘사)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과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 신체 훼손 묘사’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동물 살상 장면’ ‘범죄 또는 사건·사고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상세한 묘사’ 등이 있다(제37조). 아울러 폭력·살인 등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범죄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조). 제36조(폭력묘사),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도 있으나 언론 보도 보다는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를 고려한 조항들이다.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는 폭력성·잔혹성·혐오성에 대해 가목부터 사목까지(7가지) 제시하고 있다.²⁰⁾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묘사) 제1항은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범죄보도 이외에도 언론이 가학적·피학적 내용, 폭력 장면,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거나(제16조 폭력묘사 등)

19)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에서는 음란·포악·잔인을 함께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폭력 위주로 다루고 음란과 관련해서는 다음 ‘제13조 성관련 보도’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0)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사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학한 내용 <개정 2014. 1. 9.>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충격·혐오감). 이러한 기준들은 자율규제들에 비해서는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정보통신심의규정)에 비해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4]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3조 (보도준칙) ⑥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선정보도 금지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36조 (폭력묘사) ① 과도한 폭력묘사 금지 ②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폭력묘사 ③ 삭제 ④ 폭력을 조장, 미화·정당화 금지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37조 (충격·혐오감)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1. 침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 (범죄 및 악물묘사) ① 범죄내용의 상세한 묘사 |
|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 언론중재위 | 제12조 (범죄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폭력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각주 참조

다) 성관련 보도

- (성표현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35조(성표현) 제3항에서는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성기노출,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 장면,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유희의 대상 묘사 등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가목부터 아목까지(8가지) 제시하고 있다.²¹⁾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성관련 보도에서 심의기준은 선정적 묘사, 음란내용 보도, 부도덕한 남녀관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이 보다 열거적 형태로 음란내용에 대해 제시한다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포괄적으로 ‘노골적 성행위묘사’와 ‘변태적 성행위 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45] 성관련 보도조항

| 기구 | 조항 |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35조(성표현) ①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 ② 성과 관련된 내용 선정적 묘사 ③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 1.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 장면 3. 성기 노출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혹의 대상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1.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 언론중재위 | 제13조 (성관련 보도) ① 선정적 묘사 ②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③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 합리화 |

* 각주 참조

2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자살보도

- (자살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대부분 규정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자살보도 자제(유명인 포함), 자살 미화나 정당화 금지, 자살방법의 구체적 보도 금지, 제목 금지, 사생활 보호 등이 주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자살보도의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위는 제13조 범죄보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자살보도(제13조의1) 조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규정도 제38조의2(자살묘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자살방법과 원인) 공통되게 자살방법과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자살 원인과 방법 등’을, 인터넷신문윤리위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은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자살방법과 원인에 있어 장소, 수단, 동기 등이 추가로 제시되는 형태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자살보도와 제목) 기사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살과 의미하는 표현으로는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인터넷신문윤리위)이 제시되었다.
- (자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사용에 유의하도록 하거나(인터넷신문윤리위),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
- (자살 미화나 정당화)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방송통신심의위는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위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외로 적용한다.
- (기자협회 자살보도/자살예방 관련 기준) 기자협회는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①자살보도 자제 ②영웅시 혹은 미화 제한, ③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제한, ④ 자살동기 단편적/단정적 판단 제한, ⑤흥미 유발 및 속보/특종 경쟁 제한, ⑥자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살보도 실천요강으로 ‘피할 정보’와 ‘포함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

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4원칙 아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줌으로써 관련 보도 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중략) 그 대신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①자살보도에서 금지사항, ②자살동기 보도 관련, ③자살 미화(삶의 고통 해결방법) 금지, ④예외사항(공공의 정당한 관심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금지 사항은 다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 자살방법(장소 등) 묘사, 사용된 약명이나 치사량 등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나 기자회견이 제목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다른 규정들에 비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6] 자살보도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3조 보도준칙 ⑧ 자살보도의 주의 : 자살보도 신중,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 구체적 묘사, 표제에 '자살' 표현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13조의1 (자살보도) -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보도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유의 -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 -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 -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심의규정 제38조의2 (자살묘사) ① 자살의 수단·방법·장소의 구체적 묘사 등 ② 자살 미화·정당화 ③ 자살 동기 단정하는 표현 ④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⑤ 제1항 및 제4항 공공의 이익의 경우 예외 |
| 언론중재위 | 제14조 (자살보도) ① 언론은 자살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 47] 기자회견 자살보도 윤리강령/실천요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구분 | 내용 | |
|---------------|---|---|
| 윤리강령 | ① 자살보도 자제 ② 영웅시 혹은 미화 금지 ③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금지 ④ 자살동기 단편적/단정적 판단 금지 ⑤ 흥미 유발 및 속보/특종 경쟁 수단화 금지 ⑥ 자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금지 | |
| 실천요강 | 피할 정보 |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삼기 |
| | 포함 정보 | △ 자살률의 최근 경향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사례 △ 자살의 신화 (잘못된 상식) △ 자살 징후들 소개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마) 마약 및 약물보도

-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신문윤리위에서는 마약(약물)보도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신문윤리위도 범죄보도 조항에서 금지사항 중 하나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는 '범죄 및 약물묘사'를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 (범죄 및 약물묘사)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약물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묘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약물의 사용방법, 구매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의 사용과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방범죄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자협회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 마약류 사건 보도가 모방범죄나 호기심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약물의 명칭, 구입경로, 은폐방법, 수사기법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무관한 정보를 공개해서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다. 연예인 사건 보도 역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약류 사건 보도의 유의사항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규정들에 비해 마약류에 집중하고 있으나 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간단하다. 또한 마약류 외의 범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약물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다. 따라서 마약류 약물에 대해 보완할 조항은 없는지, 마약류 이외의 약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8] 마약 및 약물보도 조항

| 기구 | 조항 |
|----------|---|
| 인터넷신문윤리위 | 4.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
| 방송통신심의위 |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②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묘사 |
| 언론중재위 |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 보도 ②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 묘사 |

[표 49] 기자협회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 원칙 | 권고기준 |
|----------------------------|--|
| 언론 보도가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구체적인 유통과정 및 구매 방법 등 관련 범죄의 상세한 묘사는 모방 또는 범죄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합니다. ① 명칭 및 은어, 접근경로, 결제방식 및 전달과정, 특정성분 치사량 등 묘사 ② 총격·협오감 범죄행위, 범죄형태, 은폐방법, 수사기법 등 ③ 모방 범죄 유발 유의 ④ 마약류 투약에 대해 호기심 |
| 선정적·자극적이거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 자제 | 마약류 범죄 보도와 관련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묘사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① 사진·영상 등 시각 자료 최소화 ② 사진 등으로 사용방법 시연 등 직접적·자극적 보도 ③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 사건의 심각성 왜곡 ④ 주변인의 사생활 존중, 유명인의 마약류 투약 보도 ⑤ 독자와 시청자, 특히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 |

| 원칙 | 권고기준 |
|-------------------------|--|
|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문제 해결 중심 보도 | <p>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독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고, 중독 회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p> <p>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마약류 투약 폐해나 고통 ③ 마약류 약물중독이 치유, 회복되기 힘들다는 부정적 보도 지양 ④ 마약류 범죄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p> |
|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 | <p>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당사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건이 추측·과장되지 않도록 합니다.</p> <p>① 직접 인용 전달하는 보도는 지양 ②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 ③ 유명인 등 사건 당사자 이슈 경우 ④ 사건 본질과 무관한 영상·사진 ⑤ 단정적인 표현 또는 근거 없이 보도 ⑥ 국가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p> |
| 마약류범죄 예방권고문 | 마약류 범죄 예방 권고문 제시 |

바) 여론조사 보도

-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기관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신문윤리위는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인터넷신문윤리위만 다루고 있었다. 여론조사 보도 시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할 사항,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차범위 내 결과 보도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방송심의규정)도 이와 유사하나 영상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추가적인 항목들을 더 제시하고 있다.
- **(여론조사 의무공표 사항)** 여론조사 보도 시 공표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이 제시되었다(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도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 **(예외적 적용)** 여론조사 보도 시 공표해야 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만 밝혀도 된다(인터넷신문윤리위/방송통신심의위). 나아가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적인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 밝혀도 된다(방송통신심의위).
- **(그 외 준수사항)**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서열화·우열화 하지 않는다(인터넷신문윤리위). 그래프, 그림, 표 등 도표에서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공표해야 하는 사항과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인용 시 예외적용에 관해 정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 내용상 차이는 없다. 오차범위 서열화 금지 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준수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표 50] 여론조사 보도 조항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
| 인터넷신문윤리위 | 제7조 (여론조사의 보도) 1. (조사의 인용)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 내용 등 2.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 인용 시 3.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
| 방송통신심의위 |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① 여론조사 결과 방송할 때 고지사항. 예외적용. ②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 ③ 오차범위 서열화 금지 ④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 이용 ⑤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 ⑥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등 확인 고지 ⑦ 선거 관련 여론조사 |
| 언론중재위 | 제19조 (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

4) 심의기준 비교분석 : 국가적 법익

가) 국가적 법익 :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누설금지

-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국가적 법익을 위한 기준은 자율규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방송통신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적 법익 보호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가 손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법령상 국가기밀의 누설 정보를 제한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에서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존립을 해하

는 정보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③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④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⑤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이다.

- (공익에 대한 정의)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국가안정 등, 공중안녕, 범죄의 폭로, 공중의 오도 방지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인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리인지는 일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인지 더 보장된다는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규정이 국가보안법 상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심의규정의 ‘헌법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등은 5·18 특별법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심의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표 51] 국가적 법익 : 국가안전보장, 국가기밀 누설금지

| 기구 | 조항 |
|---------|---|
| 신문윤리위 | 제16조 (공익의 정의) ① 국가 안전 등 ② 공중 안녕 ③ 범죄의 폭로 ④ 공중의 오도 방지 |
| 방송통신심의위 |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조 (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 위배나 국가존립을 해하는 정보 유통 금지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
| 언론중재위 | 제22조 (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98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

5) 소결

이 장에서는 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윤리위, 방송통신심의위, 언론중재위의 언론관련 심의규정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현행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자율규제 기구의 윤리적 원칙과 방송통신심의위의 구조 사이에서 절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간결성과 명료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조항별 구체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언론인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반대로 타율규제는 법적 명확성이 높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권고 기준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규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의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넘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형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규범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개인적 법익 보호 영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사생활, 초상권, 피해자 보호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하되, 각 조항의 세부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 개정 시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 범죄, 가족, 제보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기준, 신원공개 제한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법률과 실무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셋째,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차별금지, 폭력 및 성적 묘사와 같은 영역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제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자협회나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기준처럼 성별, 성적지향,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 ‘특정 속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폭력·잔인한 장면이나 성적 표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도윤리와 실무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의 현행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기자협회나 방송통신심의위의 실무형 세부지침에 비해 적용성이 떨어진다. 자살보도, 마약류 사건보도, 아동학대 보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서는 구체

적 사례 중심의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기준'을 부속서 형태로 마련해, 각 항목을 '금지-예외-권고'의 3단계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과 언론사 모두가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판단기준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단순한 윤리적 지침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론 규범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원칙 중심의 명확성과 실무 중심의 구체성을 동시에 갖춘 기준으로 개정될 때,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실효적 심의제도가 완성될 것이다.

4 상위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 정합성

가. 개인적 법익

시정권고 심의기준 중 개인적 법익에 마련된 조항들은 대체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인적 법익 중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항들은 제5조(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 제6조의2(아동학대 사건 보도) 제2항에서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 제3항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언론의 윤리규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항별로 상위법과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생활보호와 명예훼손

언론중재법 제5조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에서는 인격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언론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시 언론중재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속성 원칙을 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에서 인격권이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이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함으로써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과 함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인 IPTV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이 포괄적으로 인격권 전반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하고 피해구제의 신속성 원칙을 정한 만큼 사생활 비밀의 자유, 명예훼손과 같은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근거가 된다.

사생활이나 통신 비밀의 자유의 경우 헌법에서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의 경우 당사자 동의뿐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경우 보도할 수 있으나 통신 비밀의 경우에는 동의 없는 사적 통신내용의 공표는 금지된다. 사적 통화나 통신내용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표 52] 사생활과 통신비밀

| 헌법 | 통신비밀보호법 | 언론중재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 | 제5조 ①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 ② 예외 | 제1조 (사생활 침해 등) 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예외: 당사자 동의, 공익성 |
| 제18조 통신 비밀 | 제16조 ① 벌칙 | - 피해자 동의 - 공익성, 진실성 | ② 사적 통신 동의없이 공표 금지 |

명예훼손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4항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일반 명예훼손), 제309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조항을 고려하건대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형법에서 일반 명예훼손(제307조)과 분리하여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제309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에 특화된 기준임에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방할 목적' 등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법원이 명예훼손 판단에서 '비방할 목적'을 적극적으로 심리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진실성과 공익성)는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제307조 제1항)에 적용하고 있다(제310조).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사자의 명예훼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허위사실을 넘어 '과장이나 왜곡'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포함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심의기준으로서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 과장이나 왜곡과 같은 다소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심의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 53] 명예훼손

| 헌법 | 형법 | 언론중재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21조 ④ 명예나 권리 침해 금지, 피해 배상청구 | 제307조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5조 ①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 ② 예외 - 피해자 동의 - 공익성, 진실성 | 제2조 (명예훼손금지) ① 허위사실 공표, 과장/ 왜곡 명예훼손 |
|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 ② 사실 공표 명예훼손 |
| | 제310조 위법성 조각 | | ③ 사자 명예훼손 ④ 공익성, 진실성 |

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피해자 신원공개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는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서도 피고인의 무죄추정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고,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피의자도 포함된다. 이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피고인과 피의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2006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적사항 등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공판 청구 전에 피의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126조). 다만 처벌의 대상이 수사기관이나 범죄수사 종사자들로 국한하여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수사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되거나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15일 제정되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이하 특정강력범죄법)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5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두 법률의 해당조항은 2023년 10월 24일자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제4조, 제5조).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2조 제3

호~제6호까지의 죄)²²⁾,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다. 또한 신상정보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로 정하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인 경우, ②공적 인물로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형사사법 집행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인 경우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다소 명확하다. 다만 공적 인물로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지금은 삭제된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피해자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에서는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 그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신고자/고발자/법정대리인 동의 시 예외로 한다(사망 시 법정대리인 동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고발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피해자만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제3항에서는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편람>(언론중재위원회, 2024)에서는 이 조항은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 근거로 밝히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마련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포괄성, 모호성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유'라는 요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고소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고발된 사건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매우 포괄적 금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언론현장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켜질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처벌대상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으로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언론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표 54] 제3조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 피해자 신상공개

| 헌법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특정강력범죄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 제4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기준 -미성년자 제외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①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누구인지 공표금지 예외: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적용, 공적인물 등, 형사사법 집행의 긴급 필요시 |
| | |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신고자 신상정보 공개 금지 예외: 명백한 동의시 | ②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 공표금지 예외: 피해자 동의 |
|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 | | ③ 고소고발된 사건 및 구체적 내용 보도 금지 |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시정권고 심의기준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피해

자보다는 가해자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동 조항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권침해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책임을 돌리는 보도행태 등에 대한 주의의무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55]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성폭력처벌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② 피해자 특정 인적사항이나 사진 공개금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당사자 동의없이 피해자 특정 내용 공표금지 ② 피해상태, 무관한 사생활, 범행수법 선정적 보도 금지 ③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 보도 금지 |

4) 아동·청소년의 보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개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정희철, 2024)²³⁾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인 소년이 누구인지 보도를 금지하는 소년법 제68조는 소년의 성장발달권에 기초한 소년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적정절차의 보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재범의 방지를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본다(김혁, 2017).

소년법이 그 대상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모두 나열하는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한정된 것이 특징이다.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범죄소

23) 정희철(2024)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은 소년법의 대상소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문언은 다의성과 불명확성이 제거된 가치 중립적이고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년, 촉탁소년, 우범소년이어서 보도금지 대상에 형사사건의 범죄소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무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준으로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인지, ‘당사자란 어느 범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도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피해자로 국한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대상자와 ‘피해자’로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아동 피해자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그가 누구인지 공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미성년자로 포괄적으로 정한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특정 법률에서 정한 법적 연령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표 56] 소년 보호사건 당사자 보도금지

| 소년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68조 (보도 금지) ① 보호사건이나 형사 사건, 당사자 짐작할 수 있는 보도 금지 ②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 |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공표 금지 |
| | 제31조(비밀누설금지) ③ 피해 아동·청소년 특정 공개 금지 (출판, 방송, 정보통신망) ④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②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 누구인지 공표 금지 |
| | | 제4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기준 -미성년자 제외 제5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③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공개 금지 |

5) 아동학대 사건 보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직원, 신문이나 방송, 교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공표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사건 관련인인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금지 대상으로 아동보호사건에서 관련인은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으로 아동학대처벌법과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동일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매체를 출판물과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뉴스통신,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상위법의 근거는 없으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는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제2항),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제3항)도 마련되어 있다.

[표 57] 아동학대 사건보도(제6조의2)

| 아동학대처벌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보호사건에서 관련인 특정 금지 - 신문 등 출판물, 방송매체 대상 ※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제6조의2 ① 아동학대 사건 관련인 특정 내용 공표금지 ※ 언론중재법 상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 |
| | ②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 보도 금지 |
| | ③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자세히 보도 금지 |

6) 가정폭력사건 보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는 비밀엄수 조항이다. 특히 제2항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족 관련 사건들을 특별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이혼, 결혼, 친자확인,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속, 성년후견인 지정 등을 다룬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에서 보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 사건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러한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7조 제2항에서도 가사소송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보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가사소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 일정하게 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그러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표 58] 가정폭력사건 보도

| 가정폭력처벌법 | 가사소송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②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 특정 금지 신문 등 출판물, 방송 대상 | | 제7조 (가정폭력사건 보도) ①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 특정 금지 ※ 언론중재법 상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 |
| | 제10조 (보도 금지) 가사소송 사건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금지 신문, 잡지, 그밖에 출판물과 방송 | ② 가사소송 사건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표 금지 ※ 언론중재법 상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 |

7) 신고자 등 보호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는 공익신고자, 부패방지 신고자, 범죄신고자 등을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언론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 제8조(인적사항의 공개금지) 근거로 하고 있다.

다만 세 법률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사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법은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공표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신고자법에는 생략되어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공익신고자, 부패방지 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공통되게 당사자 동의가 있는 때에 보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59] 신고자 등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 범죄신고자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인적사항/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보도 금지, 동의한 때 예외 |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인적사항/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보도 금지, 동의한 때 예외 |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① 인적사항/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보도 금지 | 제8조(신고자 등 보호) ① 신고자 공표 금지 - 공익신고자 - 부패신고자 - 특정범죄 신고자 ② 신고자 명시적 동의 시 예외 |
| | | |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침해) ① 누구인지 공표 금지: 정신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법률 공표 금지사항 ② 공적 관심 사항이나 명시적 동의 경우 예외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자, 북한이탈주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언론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 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나. 사회적 법익

1) 기사와 광고의 구분

사회적 법익 조항 중 법적 근거가 제시된 경우는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뿐이다(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편람>(2024) 참조). 이 조항은 신문 등의 신문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6조 3항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를 법적 근거로 한다. 다만 신문법에서는 제재대상을 신문, 인터넷신문과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외된다. 언론중재법 상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기 때문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의 언론에 대한 정의와 별개로 제5조 제1항 ‘언론 등에 의한 피해 구제의 원칙’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하고 있다(언론중재법에서는 이를 “언론 등”이라고 한다). 시정권고 심의대상을 ‘언론’에 국한할 것인지 ‘언론 등’이라고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신문법에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의 책임 주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 언론중재법 상 피해구제의 원칙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표 60]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신문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③ 기사 광고 명확하게 구분 -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 |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와 광고 명확하게 구분 ※ 언론중재법 상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 |

2) 성관련 보도

제13조(성관련 보도)의 제2항은 음란물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제1호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형법 제24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음란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금지를 정했다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2항에서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으로 금지 대상을 정하고 이를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과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표 61] 성관련 보도

|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반포, 판매, 임대, 전시/상영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배포, 판매, 임대, 전시 | 제13조 (성관련 보도) ② 성적 흥분 유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 금지 성행위 노골적 묘사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구체적 묘사 |

3)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제1항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동 조항이 사회적 법익에 배치된 점을 미루어 국민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중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제18조 제2항에서는 언론중재(조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절차상 지극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중재(조정) 절차상 지득한 정보나 참여자 발언 내용까지 전면금지한다면 법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왜곡 금지는 보도의 객관성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 절차상 지득한 정보나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공개금지를 결정한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제19조 제8항에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에 있어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언론중재위의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이를 언론에게 지득한 정보에 대해 보도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조항에서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언론중재위가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에게만 공개금지를 전면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동 조항이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금지하는 취지라면 언론중재나 조정 관련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지득한 정보나 발언 내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나 조정 절차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금지하는 것이 균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표 62]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 헌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18조 (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① 재판에 부당한 영향 주는 기사/논평 금지 ②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의 결과 왜곡, 절차상 지득한 정보/참여자의 발언내용 등 공개 금지 |

다. 국가적 법익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침해 금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제21조 제1항).²⁴⁾ 그러나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 및 안전,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향유할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정당화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 국가적 법익을 위해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고 형식적, 실질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보도해서는 아니되는 내용이 법률에 근거해 제한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제한된다는 것인지, 제한되는 기준은 어떤 근거인지 등이 매우 불분명하다.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선언적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기준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국가기밀 보도 금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3조는 국가기밀이나 외교상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24)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5)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기본권을 헌법이 정하는 범구법의 형식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고,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제한의 한계에 해당하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을 충족시킬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정종섭, 2007, 301쪽).

형법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하나의 유형으로 처벌하고 있고(제98조 제2항),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제113조 제1항).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98조 행위(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4조).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군사기밀법 상 군사기밀은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한다(군사기밀법 제2조 제1호).

국가기밀이란 형식적 비밀과 실질적 비밀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비밀이란 공문서 중 소위 비밀의 표시가 되어 있는 문서를 비밀이라고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공문서에 기밀 또는 비밀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문서로 취급됨이 마땅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 비밀은 비밀표시가 붙어 있든 없든 그 문서 내용의 성질로 보아 실질적으로 비밀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만이 비밀이라고 규정된다는 주장이다(김동철, 1987).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이란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형식적 비밀제도를 취하고 있다.²⁶⁾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군사기밀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 초기에는 국가기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국가기밀의 명확한 개념은 표현되지 않았고 위법행위의 유형을 확장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어 왔다고 한다. 특히 국가기밀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로 구분되어 표현되었고, 국가기밀을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을 정의하면 “국가안전보장상 외적으로 비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기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최광의(最廣義)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진홍, 2000; 김재현, 2017; 홍승표, 2024 재인용).

형법 제98조의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과 별도로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정하고 있다. “국가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거나 확인되지 않음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26)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정보자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김일수·서보학, 2004; 국회법제실, 2007 재인용).

따라서 형법 상 군사기밀(제98조), 외교상 기밀(제113조), 국가보안법 상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제4조),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제2조, 제12조)을 포괄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기밀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군사기밀과 외교상 기밀 등 다양한 기밀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군사기밀보호법상 형식적 기밀뿐 아니라 실질적 기밀사항까지 포함한 광의적 의미로 국가기밀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63] 법률별 국가기밀 대상

| 형법 | 국가보안법 | 군사기밀보호법 | 시정권고심의기준 |
|-----------------------------|-----------------|---------|-------------------------|
| 제98조(군사기밀) 제113조(외교상 기밀) |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 | 군사기밀 |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 |

학계에서는 군사기밀의 누설 원인을 크게 개인적 차원의 누설(개인적 이해관계 및 사적 이익추구, 개인적 친분, 업무상 과실), 언론·국회에 의한 누설, 적의 해킹에 의한 누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언론기관은 특종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나타난다.²⁷⁾ 다른 분야의 누설도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지만 언론의 군사기밀 보도도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차원에서 언론 보도가 해악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을 받는다(서정순, 2020). 군사기밀의 침해는 단 한번이라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외국 정부나 외국기업 특히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반국가단체 등에게 전달될 경우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이장욱, 2023).

이와 반대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도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기밀보호 법률에서 국가기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거나(배정근, 2009), 군대의 관료주의가 비밀 고수와 정보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접근을 차단해 왔다는 비판이다(손태규, 2007). 이러한 관점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방공보규정 등의 모호한 조항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 1994년 3월 24일‘청천강까지 진격...북 정권 궤멸’이라는 제하에 우리의 작전계획이 적나라하게 보도된 바 있으며(중앙일보, 1994. 03. 24일자 4면) 2018년 3월의‘국방부, 新작전계획 마련... 기존‘작계5015’보다 공세적,‘평양 집중된 지휘부 초기 궤멸’제하의 조선일보 보도는 대한민국의 전략계획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작전계획의 문제점과 북한군의 초기 공격 양상과 능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표 64] 국가안전보장

| 헌법 | 형법 | 국가보안법 | 군사기밀보호법 | 시정권고 심의기준 |
|---|---|--|----------------------------|---|
| 제37조 ② 국민 기본권 제한 요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 | | 제22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내용 보도 금지 |
| | 제98조 (간첩) 군사기밀 적국누설 제113조 (외교상 기밀의 누설) 외교상 기밀 누설 |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처벌 2. 형법 제98조 행위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 가목)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나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12조 (누설) 군사기밀 누설 처벌 | 제23조 (국가기밀 누설금지)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 누설내용 보도금지 |

라. 소결

이 장에서는 각 조항별 상위법 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합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고 심의매체의 범위 문제이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매체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1항은 “언론 등”이라고 하여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인 언론중재법과 일관되게 시정권고 대상매체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명예훼손 조항을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 기준은 관련 법률과 체계가 맞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일반 명예훼손(제307조)과 분리하여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제309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에 특화된 기준임에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방할 목적’ 등은 제외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명예훼손 판단에서 ‘비방할 목적’을 적극적으로 심리하

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진실성과 공익성)는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제307조 제1항)에 적용하고 있다(제310조). 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의 사자의 명예 훼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법체계와 잘 맞지 않는다. 아울러 심의기준에서 허위사실을 넘어 ‘과장이나 왜곡’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포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모호한 기준이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신상정보공개법에서 신상정보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로 한정하고 있으며,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사람 입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강력범죄처벌법 제8조, 소년법 제68조),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중략)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성폭력처벌법 제24조)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정의가 실무에서 활용하기에 모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상위법을 고려할 때 용어 통일의 문제이다. 물론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용어, ‘당사자, 피해자, 관련인’ 등 용어는 적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게 청소년에 아동이 포함된다거나 청소년이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법률 용어로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는 각각 정의가 달라진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도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죄사건 피의자와 피고인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있더라도 미성년자는 예외인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제3조). 심의기준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들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성범죄사건 등 모든 범죄사건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범죄사건에서 미성년자 공개금지선 언론 보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일반 범죄사건 보도 조항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에서는 신상공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고발자)도 보호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피해자만 금지하고 있어 신고자(고발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제3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대상 청소년’ ‘피해 청소년’이라고 하여 아동을 제외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서 미성년자는 예외이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법률에서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심의기준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의자/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이미 중대범죄처벌법에서 이미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없다. 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범죄의 경우는 국내 법원이 판례로 제시하는 공적 인물이나 국민의 관심 사안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형사사법 집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일곱째, 상위법에서 존재하나 실제 심의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신문, 잡지, 그밖에 출판물과 방송에서 특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7조 2항에서 가사소송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연예인들의 열애설 결혼설 등을 국민의 정당한 관심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 실제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유명인의 이혼이나 상속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법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근거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에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구체적 내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언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덟째, 국가적 법익 관련 심의기준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 심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원리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은 형식적 기밀을 의미하고 형법과 국가보안법 상 군사기밀, 국가기밀, 외교상 기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5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방향

본 연구는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준의 현행 운영 실태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 유관기구의 심의규정 및 상위법 체계와의 적합성을 비교·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범위에는 ①기존 연구 검토, ②언론 유관기구 심의규정 비교, ③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 점검, ④시정권고 심의현황 분석, ⑤심층인터뷰를 통한 현장 평가가 포함되었다.

가. 주요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기구 성격과 매체 특성에 따라 심의가 다르게 설계됨을 확인하였다. 자율규제는 선언적 최소기준(신문·인터넷신문윤리위)과 현장 지침 중심(기자협회)이었으며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최소기준은 명확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기준이 방대할수록 복잡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타율규제인 방심위 강제력에 맞게 상세형, 열거형 기준을 두고, 방송은 공적 책무를 이유로 규제 강도와 범위가 크지만 일부 추상적인 규정 역시 공존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는 불법 중심의 단순 구조에 유해 요소를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는 법정기구이되 비강제적이라 자율과 타율의 경계에 놓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정권고 대상 매체 범위와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형법 체계(특히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요건)에 맞지 않거나, ‘과장, 왜곡’처럼 법적 근거가 취약한 요소도 있었다. 신상정보의 범위도 일관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등 용어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 또한 미성년자 비공개는 상위법상 예

외나 보호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미 폐지된 요건(예, '사회적 주목 범죄'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실 적용이 어려운 조항(가사사건 익명 보도, 피의사실 보도 제한 등)도 발견되었고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 등 포괄적 금지 규정이나 '국가기밀'처럼 모호한 개념도 있었다.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대상들이다.

시정권고 실제 적용에서는 소수의 매체가 시정권고를 경험하되, 뉴스통신과 일간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터넷신문은 매체 수가 많아 전체 비중을 주도하지만 개별 매체 차원의 발생률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권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역일간지가 중앙일간지보다 권고가 더 잦은 패턴이 이어졌다. 침해유형 측면에서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개인 법익 중심에서 사회 법익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였다. 개인 법익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꾸준히 핵심 이슈로 남았고, 사회 법익에서는 기사형 광고와 자살보도가 상위 쟁점으로 고착화되며, 차별금지 관련 심의도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관련 위반은 선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비선거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선거 전담 심의기구의 법정 규제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시사한다.

동일 법익 반복 측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사례가 줄어드는 추세가 관찰되어 시정권고의 억제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복 침해는 사회 법익보다 개인 법익, 그중에서도 사생활 영역에서 두드러졌으며, 반복 매체는 독립 인터넷언론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플랫폼 환경에서의 보도 관행과 수익구조, 심의체계의 중복여부가 시정권고의 효과성과 설계 방향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한 필요성과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형성되고 있지만, 현장 적용성과 명확성에서 개선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언론인들은 보도윤리와 추상적 개념과 사후적 영향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준수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의성이 핵심인 보도의 특성과 충돌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항별 예외 요건과 해석의 범위가 모호해 실무 혼선을 낳는다는 인식도 강했다. 일반 시민과 언론학자 역시 전반적 준수 수준을 낮게 평가했으며, 특히 기사형 광고 구분, 기사 제목, 보도윤리 영역에서의 미흡함을 문제로 꼽았다. 영역별로는 개인적 법익 규정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보되, 사회적 법익 규정은 기준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국가적 법익 규정은 실제 적용이 드물어 현실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비강제적 권고라도 최소한의 억제 효과와 자율개선 유인효과가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강제력 부재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되었다.

나.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 방향

시정권고제도가 도입할 당시만 해도 논란도 많았고 위헌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현재 시정권고 심의제도에 이르렀다.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합의하는 바가 크다. 언론 현장에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도 발견되었다.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향후 언론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고 심의제도가 안정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걸맞는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시정권고제도는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강제력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강제력이 부재하기에 합헌적이고 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강제력이 부재하면 심의기준의 기준과 범위는 오히려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 강제력 부재의 한계보다는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권고제도의 목적과 심의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⁸⁾ 시정권고제도의 목적과 원칙 수립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중복규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방법이자 심의기준의 개별 조항 논의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준 개선에 있어 언론중재법, 형법, 개별 특별법(중대범죄진상공개법, 특정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 관련법, 재난·감염병 법제 등)과의 체계 정합성을 전면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아동/청소년/미성년자, 피해자/당사자/관련인 등)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고, 이미 상위법에서 삭제나 개정된 기준은 신속히 반영하여 중복이나 모순을 제거한다. 이로써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독자적 규범’이 아니라 ‘상위법 하에 적용규범’으로 기능하도록 체계를 정렬하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규정의 구체화와 예외사항의 요건화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준 개선을 위해 선언적, 포괄적 문구(‘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국가안전보장’ 등)

28) 시정권고제도의 목적과 원칙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언론중재법 체계 하에서 목적과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제 심의에서는 개인적 법익에서 사회적 법익으로 심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심층인터뷰 답변에서는 개인적 법익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를 가능한 한 구체적 판단요소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선언적 포괄적 조항들은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인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점도 규정의 추상성, 모호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 정당한 관심사와 같은 예외는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요건화하거나 판례, 권고사례, 부적합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면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심 법적 금지(코어)'와 '보완 실천 가이드(가이드라인)'의 이원구조로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행기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현장지침은 사례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자/편집자와 심의 실무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셋째, 심의기준에서 취약집단, 인권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1989년 마련되었고 2005년 전면 개정되었다. 그 외 부분 개정도 있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범죄사건 관련자, 혐오표현 대상자, 취약집단 등의 인격권 보호 조항들이 미비하다. 따라서 피해자, 신고자 보호의 원칙을 범죄보도 전반으로 확장하고(가해·피해 당사자, 가족·친인척, 제보자·신고자·증인 등),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공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혐오 표현 조항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 보도', '노인 보도', '정신건강 보도'를 신설해 차별, 낙인, 선정화를 막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자극적인 언론환경 구조에서 취약집단의 2차 피해를 줄이고, 국내외 인권기준과 보도준칙을 실질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인격권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을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해구제의 사전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현장용 지침으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분석에서 동일법익 반복사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해 시정권고의 학습억제 효과가 확인되었다. 심층인터뷰 결과 역시 권고의 비강제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자발적 개선을 이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현행 규정의 추상적 문구와 예외 판단의 모호성은 현장 적용에 혼선을 낳고 있어, 제재보다 사전 안내와 자기 점검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 도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가 피해구제 및 예방 중심의 원칙을 토대로 다른 심의 기구들도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할 수준으로 역량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시정권고 제도는 개별 언론에 대한 단순 사후 통지가 아니라 뉴스룸과 자율기구 모두가 공유하는 사전 예방형 보도지침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수(2022).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체계 적합성과 해석론에 대한 일고찰 : 행위 규제형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3(4)
- 김정민(2023).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언론의 자살보도. 언론중재, 169, 16-29.
- 김재영(2021). 소비자의 분쟁 유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기사형 광고의 설득 영향 : 언론중재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대상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31(2), 99-118.
- 김중호(2019). 통제규범으로서 헌법해석의 체계적합성 요청에 대한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 7(1), 153-189.
- 김중호(2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에 나타난 체계적합성 헌법해석의 방법. <법학 연구>, 20(3), 187-220.
- 김주용(2023). 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행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22(1), 143-202.
- 김창숙(2021). 언론중재위원회 40년 성과와 제언. <언론중재>, 2021년 봄호, 36-37.
- 박기묵(2023). 사전적 뉴스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6), 260-270.
- 성기준(2018). 시정권고 결정사례를 통해 본 미투 보도실태. <언론중재>, 147, 4-19.
- 손영준(2019).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92, 77-105.
- 양재규(2022). 슬기로운 시정권고 활용법: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와 시정권고제도. <언론중재>, 164호, 32-61.
- 윤성욱 · 김택환 · 전학선 · 최은경(2017). <해외 언론 자율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윤성욱 · 이승선 · 송중현 · 이영희(2020). <인터넷광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윤성욱 외(2020). <방송 제작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연구 >.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윤성옥·박성순(2022). <출연동물보호 관리 실태 및 제작·촬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서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나연(2024) 대부분 매체에서 뉴스 이용률 감소 언론·언론인에 대한 평가도 하락, <신문과 방송>, 638호, 언론진흥재단
- 이민규(2023). 시정권고제도의 운용 성과와 전망: 2022년 시정권고 분석. <언론중재>, 166, 60-71.
- 이승선(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 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 언론중재위원회(2024). <2023년 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2024).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진흥재단(2023). <언론수용자 조사 2023>
- 음선필(2021).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 <입법학연구>. 18(2). 45-72.
- 음선필(2022).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3(2).
- 정희성·류석창·김창숙·김정민(2012).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제도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언론중재>, 124, 70-91.
- 조소영(202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7(2), 1-63.
- 조소영(2022). 개별 언론사 언론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21(3). 49-92.
- 허종렬(2021).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33(1). 87-111.
- 미디어오늘(2023. 06. 15.), 뉴스 전반적 신뢰 '28%'... 46개국 중 최하위 수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55>.

별첨1 심층인터뷰 질문지

☞ 심층인터뷰 질문지와 함께 시정권고제도를 설명하는 내용과 심의기준별 시정권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참고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심층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책임을 맡은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심미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2025년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선하고자 연구를 진행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해 (언론인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재 활동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정권고제도 개선을 위해 귀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정권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은 시정권고제도 개선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시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등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미선(010-3258-9839, mesun63@naver.com)

☞ 일반인+언론학자+내부직원

이름:

성별:

연령:

☞ 언론인

- 언론사 유형: ① 중앙언론사 (신문사+인터넷) ② 뉴스통신사
③ 인터넷언론사 (서울 수도권 소재) ④ 지역언론사 (지역소재)
- 언론사 규모(취재기자 수를 중심으로): ① 10명미만 ② 29~10명 사이
③ 50~30명사이 ④ 99~51명사이
⑤ 100명이상
- 언론사 근무기간: ① 4년미만 ② 9~5년사이 ③ 19~10년 ④ 20년이상

☞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개인적 법익 침해 금지조항과 사회적 법익 침해 금지조항 그리고 국가적 법익 금지조항으로 구분됨. 각각의 조항별로 두 차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대해 아래 네 문항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심의기준별로 4개의 문항에 대해 ①에서 ⑤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문1~문4까지는 예시입니다. 가이드라인별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인만 평가)

문1. 귀하가 보시기에 아래 시정권고 심의기준 언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가요? 귀하가 보시기에 이 심의기준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 5점 척도로 답해주세요. (5점 척도)

- | | | |
|----------------|-----------------|---------|
| ①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 ②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 ④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 | ⑤ 매우 이해하기 쉽다. | |

(언론인만 평가)

문2. 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뉴스 기사 작성시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요? 귀하의 생각을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5점 척도)

- | | | |
|----------------|-----------------|---------|
| ① 매우 준수하기 어렵다. | ② 준수하기 어려운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 ④ 준수하기 쉬운 편이다. | ⑤ 준수하기 매우 쉽다. | |

(모든 집단 공통)

문3. 언론사들은 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하의 생각을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5점 척도)

- | | | |
|-------------------|--------------------|---------|
| 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 ②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 ④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 | ⑤ 매우 잘 지키고 있다. | |

(모든 집단 공통)

문4. 이 조항이 시정권고 가이드라인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5점 척도)

- | | | |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중요한 편이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개인적 법익 침해 금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의 초상, 성명, 사생활, 개인 간 통신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나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로 보아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이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2조(명예훼손 금지)

-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이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사사건의 당사자(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보도는 '익명보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초상이나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경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초상 및 성명 등을 공개한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나 인터넷 댓글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5조(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 ① 언론은 청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동·청소년이 당사자인 범행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초상 등 신원을 공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6조의2(아동학대 사건 보도)

- ① 언론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은 아동학대 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학대행위 또는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할 경우 해당 아동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 수 있게 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잘 지킨다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제7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잘 지킨다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

제8조(신고자 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2. 부패행위신고자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이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이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사회적 법익 침해 금지

제10조(보도윤리)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2018.12.19.>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이조항은)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0조의2(차별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제11조(재난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제12조(범죄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의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제13조(성관련 보도)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거나 이를 제목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한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제14조(자살보도)

- ① 언론은 자살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

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는 자살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서 보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할 경우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6조(폭력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상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 ①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언론은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절차상 지극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 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보도는 독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단,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기사형광고의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의료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연락처·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제21조(기사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문의 내용을 왜곡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 | | | | |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 | | | | 잘 지킨다 | | | | |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 중요하다 | | | | | |

■ 국가적 법익침해 금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이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 | | | | 이해하기 쉽다 | | | | | (이조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 | | | | 준수하기 쉽다 | | | | |
| 문1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언론은 이조항을) | | | | | | | | | | (이조항은) | | | | | | | | | |
| 잘 지키지 않는다 | | | | | 잘 지킨다 | | | | | 중요하지 않다 | | | | | 중요하다 | | | | |
| 문3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일반인만)

문. 시정권고제도가 우리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전혀 필요없다.
- ②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 ③ 어느정도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⑤ 잘 모르겠다.

(공통)

문.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 및 법익 침해를 줄이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문. 기존 심의기준이 실제 사례 판단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부족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가령 지나치게 모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통)

문. 시정권고제도 및 심의기준과 관련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위 심의기준외에 추가했으면 하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론인만)

문.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으면 사내에서는 어떤 절차로 공유되나요? 회사에서는 자사에 내려진 시정권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가령 시정권고 결정문을 보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었는지 평소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가령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였고,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낀 것은 어떤 경우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 문항은 시정권고를 받은 분들, 그리고 본인은 시정권고문을 받지 않았지만 회사측에서 보인 입장을 간단히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인만)

문. 시정권고 수용 여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언론사 내부에서 시정권고 결정문이 도착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론인만)

문. 그외 시정권고 심의기준과 관련해 실무자로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